

결과보고서

2021년도 디자인기업 공정거래 실태조사

2022. 09.



이용자를 위하여

- 본 보고서는 디자인전문회사(사업체)를 대상으로 디자인 프로젝트 수행 관련 공정거래 실태를 조사한 표본 조사(1,000 표본)한 결과입니다.
- 표본 규모 30개 미만 층은 대표성이 부족하므로 해석에 유의해야 합니다.
- 2021년 종합 디자인은 부록1 설문지의 문2(주 생산 및 서비스 품목)에서 '⑦. ①~⑥ 중 3개 분야 이상'을 선택한 업체입니다.
- 통계 수치는 반올림을 원칙으로 하여 합계 및 본문 내용 등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통계표에 사용된 부호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조사 대상자가 없음
 - [0.0] 조사 결과값이 0이거나 0의 근삿값인 경우
- 본 보고서와 통계집은 (사)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www.ko-dia.org)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협회에 전화(02-6954-2312)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요약 및 결론 / xi

제 I 장 조사 개요

1.1 조사 목적 및 내용	3
1.2 응답자 특성	4
1.3 주요 용어 설명	5

제 II 장 국내 피해 현황 전체

2.1 국내 피해 현황	9
2.2 작년과 비교 : 국내 피해 현황	13
2.3 국내 피해 대응 방안	17

제 III 장 유형별 피해 사례 현황

3.1 불공정거래 피해 유형	23
3.2 지식재산권 관련 피해 유형	58
3.3 기타 피해 유형	72

제 IV 장 해외 피해 현황

4.1 해외 피해 현황	79
4.2 세부 사례별 피해 경험률	81
4.3 총 피해 건수와 금액	82
4.4 대응 방안	82

제 V 장 기타

5.1 디자인용역표준계약서	85
5.2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	91

부록 : 설문지 / 97

표 차례

【표 2-1】 디자인전문회사 피해사례 유형별 피해 경험률	11
【표 2-2】 피해 용역 건수와 금액	12
【표 2-3】 사업체 특성별 국내 피해 경험률 비교	13
【표 2-4】 피해업체 사업체 특성별 분포	14
【표 2-5】 최근 2년 국내 피해 용역 건수와 피해 금액	16
【표 2-6】 사업체 특성별 국내 피해 대처 방안	17
【표 2-7】 국내 피해 발생 시 가장 필요한 지원	18
【표 2-8】 피해 경험 여부별 피해 예방을 위한 국가기관의 역할	19
【표 2-9】 불공정거래를 줄이기 위한 필요사항 (자유 의견)	20
【표 3-1】 불공정거래 피해 사례 경험률	23
【표 3-2】 구두계약 진행, 완료 후 계약서 미비로 인한 피해 경험률	25
【표 3-3】 계약서 작성 시, 발주처에게 과도하게 유리한 조항 요구 피해 경험률	28
【표 3-4】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 지연 또는 미지급 피해 경험률	31
【표 3-5】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일방적 해지 피해 경험률	34
【표 3-6】 중도 해지 시, 소요비용 불인정 피해 경험률	37
【표 3-7】 제안서 제출 후, 프로젝트 무산에 대한 일방적 통보 피해 경험률	40
【표 3-8】 시안 경쟁 PT 참가에 대한 리젝트 피 미지급 피해 경험률	43
【표 3-9】 계약 후, 무리한 디자인 방향변경 및 수정 요구 피해 경험률	46
【표 3-10】 계약과 관계없는 별도 개발 요구 피해 경험률	49
【표 3-11】 결과물 납품 후, 합리적 근거 없는 추가 요구 피해 경험률	52
【표 3-12】 계약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 불인정 피해 경험률	55
【표 3-13】 지식재산권 관련 피해 사례 경험률	58
【표 3-14】 책임한도 벗어난 지식재산권 저촉 문제로 배상 요구 피해 경험률	60
【표 3-15】 경쟁 PT 제출 시안 본인 사용 허락 없이 무단 도용 피해 경험률	63
【표 3-16】 계약 조항 외 모든 지식재산권 양도 강요 피해 경험률	66
【표 3-17】 디자인 시안 무단 도용 제작 또는 판매 피해 경험률	69
【표 3-18】 기타 피해 사례 경험률	72
【표 3-19】 기타 피해 경험률	73
【표 4-1】 해외 용역 사례별 피해 경험률	81
【표 4-2】 해외 피해용역 건수와 피해 금액	82
【표 5-1】 사업체 특성별 디자인용역표준계약서 인지 여부	85
【표 5-2】 사업체 특성별 디자인용역표준계약서 사용 정도(전체 기준)	86
【표 5-3】 사업체 특성별 디자인용역표준계약서 사용 정도(인지 업체 기준)	87
【표 5-4】 디자인용역표준계약서 사용 종류	88
【표 5-5】 사업체 특성별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 인지 여부	91
【표 5-6】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 미사용 이유	93

그림 차례

【그림 2-1】 디자인개발 국내 용역 중 피해 경험률 추이	9
【그림 2-2】 주 생산 및 서비스 품목별 국내 피해 경험률	9
【그림 2-3】 종사자 규모별 국내 피해 경험률	10
【그림 2-4】 매출액 규모별 국내 피해 경험률	10
【그림 2-5】 국내 디자인 피해 경험 종류	15
【그림 2-6】 국내 디자인 피해 분쟁 대상	15
【그림 2-7】 국내 디자인 피해 하청 유형	16
【그림 2-8】 국내 프로젝트 피해 대처 방안	17
【그림 2-9】 국내 피해 발생 시, 피해 감수 이유	18
【그림 2-10】 피해 예방을 위한 국가기관의 역할	19
【그림 3-1】 불공정거래 피해 분쟁 대상	24
【그림 3-2】 불공정거래 피해 하청 유형	24
【그림 3-3】 구두계약 진행, 완료 후 계약서 미비로 인한 피해 경험 횟수	26
【그림 3-4】 구두계약 진행, 완료 후 계약서 미비로 인한 피해 비용	26
【그림 3-5】 구두계약 진행, 완료 후 계약서 미비로 인한 피해 분쟁 대상	27
【그림 3-6】 구두계약 진행, 완료 후 계약서 미비로 인한 피해 하청 유형	27
【그림 3-7】 계약서 작성 시, 발주처에게 과도하게 유리한 조항 요구 피해 경험 횟수	29
【그림 3-8】 계약서 작성 시, 발주처에게 과도하게 유리한 조항 요구 피해 비용	29
【그림 3-9】 계약서 작성 시, 발주처에게 과도하게 유리한 조항 요구 피해 분쟁 대상	30
【그림 3-10】 계약서 작성 시, 발주처에게 과도하게 유리한 조항 요구 피해 하청 유형	30
【그림 3-11】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 지연 또는 미지급 피해 경험 횟수	32
【그림 3-12】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 지연 또는 미지급 피해 비용	32
【그림 3-13】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 지연 또는 미지급 피해 분쟁 대상	33
【그림 3-14】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 지연 또는 미지급 피해 하청 유형	33
【그림 3-15】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일방적 해지 피해 경험 횟수	35
【그림 3-16】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일방적 해지 피해 비용	35
【그림 3-17】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일방적 해지 피해 분쟁 대상	36
【그림 3-18】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일방적 해지 피해 하청 유형	36
【그림 3-19】 중도 해지 시, 소요비용 불인정 피해 경험 횟수	38
【그림 3-20】 중도 해지 시, 소요비용 불인정 피해 비용	38
【그림 3-21】 중도 해지 시, 소요비용 불인정 피해 분쟁 대상	39
【그림 3-22】 중도 해지 시, 소요비용 불인정 피해 하청 유형	39
【그림 3-23】 제안서 제출 후, 프로젝트 무산에 대한 일방적 통보 피해 경험 횟수	41
【그림 3-24】 제안서 제출 후, 프로젝트 무산에 대한 일방적 통보 피해 비용	41
【그림 3-25】 제안서 제출 후, 프로젝트 무산에 대한 일방적 통보 피해 분쟁 대상	42
【그림 3-26】 제안서 제출 후, 프로젝트 무산에 대한 일방적 통보 피해 하청 유형	42
【그림 3-27】 시안 경쟁 PT 참가에 대한 리젝트 피 미지급 피해 경험 횟수	44
【그림 3-28】 시안 경쟁 PT 참가에 대한 리젝트 피 미지급 피해 비용	44
【그림 3-29】 시안 경쟁 PT 참가에 대한 리젝트 피 미지급 피해 분쟁 대상	45

【그림 3-30】 시안 경쟁 PT 참가에 대한 리젝트 피 미지급 피해 하청 유형	45
【그림 3-31】 계약 후, 무리한 디자인 방향변경 및 수정 요구 피해 경험 횟수	47
【그림 3-32】 계약 후, 무리한 디자인 방향변경 및 수정 요구 피해 비용	47
【그림 3-33】 계약 후, 무리한 디자인 방향변경 및 수정 요구 피해 분쟁 대상	48
【그림 3-34】 계약 후, 무리한 디자인 방향변경 및 수정 요구 피해 하청 유형	48
【그림 3-35】 계약과 관계없는 별도 개발 요구 피해 경험 횟수	50
【그림 3-36】 계약과 관계없는 별도 개발 요구 피해 비용	50
【그림 3-37】 계약과 관계없는 별도 개발 요구 피해 분쟁 대상	51
【그림 3-38】 계약과 관계없는 별도 개발 요구 피해 하청 유형	51
【그림 3-39】 결과물 납품 후, 합리적 근거 없는 추가 요구 피해 경험 횟수	53
【그림 3-40】 결과물 납품 후, 합리적 근거 없는 추가 요구 피해 비용	53
【그림 3-41】 결과물 납품 후, 합리적 근거 없는 추가 요구 피해 분쟁 대상	54
【그림 3-42】 결과물 납품 후, 합리적 근거 없는 추가 요구 피해 하청 유형	54
【그림 3-43】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 불인정 피해 경험 횟수	56
【그림 3-44】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 불인정 피해 비용	56
【그림 3-45】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 불인정 피해 분쟁 대상	57
【그림 3-46】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 불인정 피해 하청 유형	57
【그림 3-47】 지식재산권 피해 분쟁 대상	59
【그림 3-48】 지식재산권 피해 하청 유형	59
【그림 3-49】 책임한도 벗어난 지식재산권 저촉 문제로 배상 요구 피해 경험 횟수	61
【그림 3-50】 책임한도 벗어난 지식재산권 저촉 문제로 배상 요구 피해 비용	61
【그림 3-51】 책임한도 벗어난 지식재산권 저촉 문제로 배상 요구 피해 분쟁 대상	62
【그림 3-52】 책임한도 벗어난 지식재산권 저촉 문제로 배상 요구 피해 하청 유형	62
【그림 3-53】 경쟁 PT 제출 시안 본인 사용 허락 없이 무단 도용 피해 경험 횟수	64
【그림 3-54】 경쟁 PT 제출 시안 본인 사용 허락 없이 무단 도용 피해 비용	64
【그림 3-55】 경쟁 PT 제출 시안 본인 사용 허락 없이 무단 도용 피해 분쟁 대상	65
【그림 3-56】 경쟁 PT 제출 시안 본인 사용 허락 없이 무단 도용 피해 하청 유형	65
【그림 3-57】 계약 조항 외 모든 지식재산권 양도 강요 피해 경험 횟수	67
【그림 3-58】 계약 조항 외 모든 지식재산권 양도 강요 피해 비용	67
【그림 3-59】 계약 조항 외 모든 지식재산권 양도 강요 피해 분쟁 대상	68
【그림 3-60】 계약 조항 외 모든 지식재산권 양도 강요 피해 하청 유형	68
【그림 3-61】 디자인 시안 무단 도용 제작 또는 판매 피해 경험 횟수	70
【그림 3-62】 디자인 시안 무단 도용 제작 또는 판매 피해 비용	70
【그림 3-63】 디자인 시안 무단 도용 제작 또는 판매 피해 분쟁 대상	71
【그림 3-64】 디자인 시안 무단 도용 제작 또는 판매 피해 하청 유형	71
【그림 3-65】 기타 피해 경험 횟수	74
【그림 3-66】 기타 피해 비용	74
【그림 3-67】 기타 피해 분쟁 대상	75
【그림 3-68】 기타 피해 하청 유형	75

【그림 4-1】 해외 비즈니스 수행 및 피해 경험 여부	79
【그림 4-2】 해외 디자인용역 수행 피해용역 건수	79
【그림 4-3】 해외 용역 피해 경험 국가	80
【그림 4-4】 해외 용역 피해 발생 시 대응 방안	82
【그림 5-1】 디자인용역표준계약서 인지 여부	85
【그림 5-2】 디자인용역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86
【그림 5-3】 디자인용역표준계약서 사용 대상	88
【그림 5-4】 디자인용역표준계약서 사용 평균 금액	89
【그림 5-5】 디자인용역표준계약서 미사용 이유	89
【그림 5-6】 디자인용역표준계약서 추가되어야 할 디자인 분야	90
【그림 5-7】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 인지 여부	91
【그림 5-8】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 인지 경로	92
【그림 5-9】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 활용 정도	92
【그림 5-10】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 미사용 이유	93
【그림 5-11】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 사용 대상	94

요약 및 결론

- 2021년 디자인전문회사가 국내에서 경험한 공정거래 관련 피해율은 22.7%이며, 피해 경험 사업체는 평균 7건의 용역에서 평균 6.5종류의 피해를 겪음
 - 2020년(17.7%) 대비 피해 경험률은 5.0%p 상승함
 - 평균 피해 용역 건수는 감소했으나, 평균 피해 용역 금액은 증가하여 사업체별 피해 규모는 커짐
 - 해외 비즈니스 수행 업체의 공정거래 관련 피해 경험률은 5.2%(77개 해외 진출 업체 중 4개 업체)로 평균 5.5건의 피해를 경험하며, 주 피해 경험 국가는 중국으로 나타남

[디자인 공정거래 실태조사 주요 결과]

구분		2020년도	2021년도
국내	피해 경험률	17.7%	22.7%
	피해 용역 건수	평균 8.5건	평균 7.0건
	피해 종류	평균 6.5종	평균 6.5종
	피해 용역 금액	평균 87,277,740원	평균 96,711,322원
해외	피해 경험률	8.6%	5.2%
	피해 용역 건수	평균 2.2건	평균 5.5건
	주 피해 경험국	중국	중국

- 국내 피해사례 유형별로는 불공정거래 관련 피해가 22.3%, 지식재산권 관련 피해가 10.9%, 기타 피해가 1.3%로 나타남
 - 불공정거래 피해 세부 사례에서는 '무리한 디자인 방향 변경 및 수정'(15.7%), 지식재산권 관련 피해 세부 사례에서는 '경쟁 입찰에 참여하여 제출 시안 무단 도용'(6.2%) 피해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특히 '무리한 디자인 방향 변경 및 수정' 피해는 2020년(13.4%)에 이어 2년간 피해 경험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 이에 대한 우선적 개선이 필요함

- 공정거래 관련 피해의 주요 분쟁 대상은 주로 '중소기업'과 '정부, 지자체, 공공 기관'이며, 피해 발생 시 '전문가/전문기관에 의뢰'(65.2%, 1+2순위 기준)하여 대처하는 비율이 높으나, 피해를 감수(54.7%, 1+2순위 기준)하는 사업체 비율도 높음
 - 피해 감수하는 이유로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클라이언트와의 관계를 고려해서' 감수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사업체의 규모가 작을수록 피해 감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파트너 간 관계보다는 사업체의 전문성과 공정한 입찰 규정에 따라 사업체를 선발하는 인식 개선이 필요하며, 당사자 간 대면 없이 전문적이고 이성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해결 대행 기관의 지원이 필요함

-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을 위한 의견으로는 '지원 정책'(66.4%)과 '디자인 용역표준 계약서 및 대가기준 활용 확대'(56.9%)과 관련된 의견이 많았으며, 지원 정책의 세부 의견으로는 '대응 절차, 방법 등 법률서비스 지원'(41.2%)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타남
 - 소규모 사업체는 피해 경험 시 직접적인 대응이 어려우므로 표준화된 기준을 통해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며, 피해 발생 시 법률적 부분을 자문/검토할 수 있는 전문인력에 대한 지원도 필요함

- 2021년 해외 비즈니스 수행 업체 가운데 5.2%는 공정거래 관련 피해를 경험했으며, 피해 유형별로는 '불공정거래 관련' 피해 0.3%, 지식재산권 관련 피해 0.2%로 나타남
 - 주 피해 경험 국가는 중국이며, 타 국(독일, 미국) 대비 피해 경험 횟수가 높음
 - 대부분 피해 대응방법(1+2순위 기준)이 '피해 감수'(75.0%)로 나타나, 해외라는 특수성(언어, 문화 등)을 고려하여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전문기관의 지원이 필요함

- 공정거래 관련 피해를 경험한 사업체는 피해 예방을 위해 국가기관의 역할(1+2순위 기준)로 '디자인 용역표준계약서 및 대가기준 활용 확대'(61.2%)와 '디자인 가치 및 기준에 대한 인식 확산 교육과 캠페인(59.0%)'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국내 피해 미경험 업체는 '대응 절차 등 법률서비스 지원'(70.8%)과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는 반면, 국내 피해 경험 업체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 방안이 더 필요하다고 응답함

- 전체 사업체 중 절반 이상인 60.3%가 디자인용역표준계약서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표준계약서 인지 업체의 79.6%가 디자인용역표준계약서를 사용함
 - 디자인용역표준계약서 미사용 사업체(20.4%)는 발주처의 요구와 표준계약서 사용의 번거로움을 이유로 사용하지 않음
 - 디자인용역표준계약서 사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표준계약서 양식의 접근성 증대 및 작성 방법에 대한 홍보를 통해 이용률을 높이고, 발주처에서도 디자인 관련 용역 진행 시 용역표준계약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발주기관 대상 디자인용역표준계약서 활용 교육을 실시할 필요 있음
-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 인지 사업체는 전체 사업체의 41.3%로 전년 대비 3.7%p 증가했으며, 최근 3년간 증가 추이를 보임. 대가기준 인지 사업체의 72.6%는 '한국디자인진흥원/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를 통해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을 알게 됨
- 인지 사업체 가운데 대가기준을 일부 사용하고 있는 사업체는 72.4%이며, 대가기준 미사용 업체는 '대가를 산정하기에 현실적이지 않다'(53.1%, 1+2순위 기준)는 이유로 사용하지 않음
 - 또한 종사자 규모가 작은 사업체는 '시스템 사용의 어려움'에 대한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대가기준 시스템의 간편화 또는 활용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 대가기준에 대한 인지율이 상승하고 있으나, 여전히 50% 미만으로 인지율 향상을 위한 지속적 홍보가 필요함. 인지자의 대부분이 '한국디자인진흥원/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를 통해 알게 되므로 '한국디자인진흥원/한국디자인산업 연합회'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캠페인이 필요함

제 I 장

조사 개요

1.1 조사 목적 및 내용

□ 조사 목적

- 본 조사는 디자인전문회사가 국내·외 디자인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발생하는 공정거래 실태(불공정거래, 지식재산권 분쟁사례 등) 파악을 목적으로 함
- 조사 결과는 향후 피해 예방 및 해결방안 모색, 디자인기업의 수요에 맞춘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됨

□ 조사 설계

구분	내용
모 집 단	▪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신고·등록한 디자인전문회사(사업체)
조 사 대 상	▪ 디자인전문회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
조 사 방 법	▪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및 전화, 이메일 조사
조 사 기 준 시 점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조 사 기 간	▪ 2022년 7월 25일 ~ 8월 29일
표 본 크 기	▪ 1,000표본(국내피해업체 227표본, 해외피해업체 4표본)
조 사 항 목 *	▪ 디자인전문회사 소재 파악 ▪ 국내 피해사례 현황 ▪ 피해 대응 현황 ▪ 해외 진출 피해사례 현황 ▪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인지, 활용)

* 2021 디자인 공정거래 실태조사는 2020 디자인 공정거래 실태조사 문항과 동일하게 진행됨

1.2 응답자 특성 1)

구분		사례 수	비율(%)
전체		(1,000)	100.0
주요 생산 및 서비스 품목	제품 디자인	(201)	20.1
	시각 디자인	(375)	37.5
	환경 디자인	(238)	23.8
	패키지 디자인	(24)	2.4
	멀티미디어 디자인	(77)	7.7
	서비스 디자인	(31)	3.1
	종합 디자인*	(17)	1.7
	기타 디자인	(37)	3.7
종사자 규모	5명 이하	(472)	47.2
	6~10명	(276)	27.6
	11~20명	(158)	15.8
	21명 이상	(94)	9.4
매출액	3억 원 미만	(342)	34.2
	3억 원~10억 원 미만	(344)	34.4
	10억 원	(314)	31.4
권역	서울/인천/경기	(509)	50.9
	부산/대구/울산/경상	(240)	24.0
	광주/전라/제주	(133)	13.3
	대전/세종/충청/강원	(118)	11.8

* 종합 디자인은 부록1 설문지에서 문2(주 생산 및 서비스 품목)에서 '⑦. ①~⑥중 3개 분야 이상'을 선택한 업체

1) 사례 수 30개 미만 층(집단)은 해석에 유의해야 함

1.3 주요 용어 설명

□ 불공정거래

● 불공정거래는 다음의 세 가지 행위가 해당함

- ① 일방적으로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 ② 터무니없이 싸게 팔거나 혹은 비싸게 구입하여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
- ③ 지위의 우월함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 되도록 거래조건을 변경하는 행위

□ 지식재산권

● 지식재산권은 특허·상표·디자인 등의 산업재산권과 문학·음악·미술 작품 등에 관한 저작권의 총칭으로 저작권법, 컴퓨터 프로그램법,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등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음

□ 디자인전문회사 피해

● '디자인전문회사'가 디자인 관련 용역을 수행함에 고객사 혹은 협력 '디자인전문회사', '디자인지원기관'과의 계약, 디자인개발 과정, 지식재산권 등 용역의 전반적 과정에서 경험하는 피해를 총칭하며, 피해 유형은 크게 '불공정거래', '지식재산권', '기타'로 구분되며, 세부 사례는 총 16개임

피해 유형		세부 사례
1. 불공정 거래 피해	1.1 계약	1) 구두계약 진행, 완료 후 계약서 미비로 인한 피해
		2) 계약서 작성 시, 발주처에게 과도하게 유리한 조항 요구
		3)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받지 못함
		4)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일방적 해지
		5) 계약 중도 해지 시 소요된 비용(개발비, 인건비 등) 불인정
	1.2 제안, 시안 PT	6) 제안서 제출 후 프로젝트 무산에 대한 일방적 통보
		7) 시안 경쟁PT 참가에 대한 리젝트 피(reject fee) 미지급
		8) 계약 후 무리한 디자인 방향 변경 및 수정 작업 요구
	1.3 디자인개발 과정	9) 계약 내용과 상관없는 개발 요구
		10) 결과물 납품 후, 합리적 근거 없는 추가 요구
		11)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 불인정
12) 계약 내용을 벗어난 지식재산권 저촉 문제로 배상 요구		
2. 지식재산권 관련 피해	13) 경쟁 입찰에 참여하여 제출 시안을 허락 없이 무단 도용	
	14) 계약 조항 외에 모든 지식재산권 양도를 요구	
	15) 허락 없이 디자인 시안 무단으로 도용 제작 또는 판매된 경험	
3. 기타	16) 기타	

제표장

국내 피해 현황 전체

2.1 국내 피해 현황

- 2021년 디자인개발 국내 용역 진행 시, 디자인전문회사가 불공정 및 지식재산권 관련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22.7%로 나타났으며, 2020년 대비 5.0% 상승함

【그림 2-1】 디자인개발 국내 용역 중 피해 경험률 추이

(base: 연도별 전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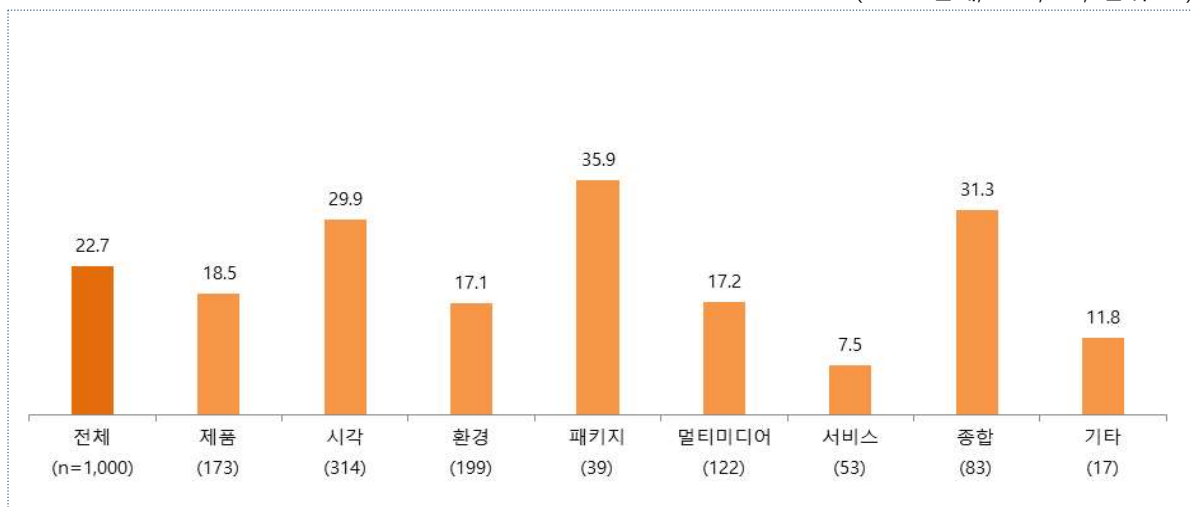


□ 응답 업체 특성별 피해 경험률

- 2021년 주 생산 및 서비스별 피해 경험률을 보면, '패키지디자인'(35.9%)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서비스디자인'(7.5%)은 피해 경험률이 다른 디자인 대비 낮게 나타남

【그림 2-2】 주 생산 및 서비스 품목별 국내 피해 경험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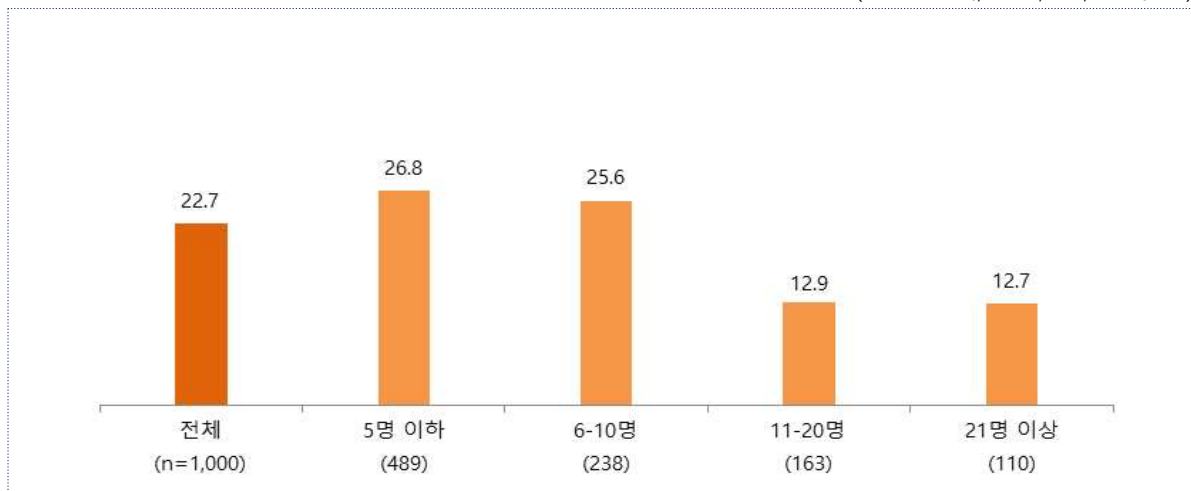
(base: 전체, n=1,000, 단위: %)



- 종사자 규모별로 보면 종사자 수 규모가 10명 이하인 디자인전문회사의 피해 경험률이 25% 이상으로 높았으며, 규모가 작을수록 피해 경험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그림 2-3】 종사자 규모별 국내 피해 경험률

(base: 전체, n=1,000, 단위: %)



- 매출액 규모별로 보면 '5억 원~10억 원 미만'(32.4%)의 피해 경험률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5천만 원~1억 원 미만'(30.0%) 순으로 높게 나타남
- 10억 원 미만 매출액 규모의 디자인전문회사 피해 경험률이 10억 원 이상 규모 대비 높게 나타남

【그림 2-4】 매출액 규모별 국내 피해 경험률

(base: 전체, n=1,000, 단위: %)



□ 세부 피해사례 경험률

- 유형별 피해 경험률은 '불공정거래 피해'가 22.3%이고, '지식재산권 관련 피해'가 10.9%로 나타남
- 세부 사례별로는 '계약 후 무리한 디자인 방향 변경 및 수정 작업 요구'(15.7%)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계약 내용과 상관없는 개발 요구'(14.3%)가 높게 나타남

【표 2-1】 디자인전문회사 피해사례 유형별 피해 경험률

(base: 전체, n=1,000, 단위: %, 중복 응답)

유형	세부 사례	피해 경험률	
전체		22.7	
1. 불공정 거래 피해	1.1 계약 관련	1) 구두계약 진행, 완료 후 계약서 미비로 인한 피해	9.9
		2) 계약서 작성 시, 발주처에게 과도하게 유리한 조항 요구	9.8
		3)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받지 못함	12.9
		4)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일방적 해지	7.7
		5) 계약 중도 해지 시 소요된 비용(개발비, 인건비 등) 불인정	10.1
	계약 관련 불공정거래 소계		18.9
	1.2 제안 및 시안 PT 관련	6) 제안서 제출 후 프로젝트 무산에 대한 일방적 통보	12.9
		7) 시안 경쟁 PT 참가에 대한 리젝트 피 (reject fee) 미지급	11.6
	제안 및 시안PT 불공정거래 소계		16.3
	1.3 디자인 개발 과정 관련	8) 계약 후 무리한 디자인 방향변경 및 수정작업 요구	15.7
		9) 계약 내용과 상관없는 개발 요구	14.3
10) 결과물 납품 후, 합리적 근거 없는 추가 요구		10.1	
11) 계약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 불인정		11.0	
디자인개발 과정 불공정거래 소계		19.2	
불공정거래 관련 소계		22.3	
2. 지식재산권 관련 피해	12) 계약 내용을 벗어난 지식재산권 저촉 문제로 배상 요구	2.2	
	13) 경쟁 입찰에 참여하여 제출 시안을 허락 없이 무단 도용	6.2	
	14) 계약 조항 외에 모든 지식재산권 양도를 요구	6.0	
	15) 허락 없이 디자인 시안 무단으로 도용 제작 또는 판매된 경험	5.2	
	지식재산권 관련 피해 소계		10.9
3. 기타	16) 기타	1.3	

□ 피해 용역 건수와 금액

- 2021년 국내 피해업체의 피해용역 건수는 평균 7건이며, 피해용역 건수(평균)가 상대적으로 많은 집단의 주요 생산 및 서비스 품목은 '서비스디자인'(28.5 건), 권역은 '광주/전라/제주'(8.3 건)으로 나타남
- 국내 용역에 대한 피해 금액²⁾은 평균 9,671만 원이며,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신고한 10,901개 디자인전문회사를 바탕으로 추정³⁾한 디자인전문회사 전체의 피해 규모는 약 2,393억 원 수준으로 추정³⁾됨

【표 2-2】 피해용역 건수와 금액

(base: 국내피해업체, n=227, 단위: 건, 만원)

구분	사례 수	피해용역 건수 (평균)	피해 금액 ⁴⁾ (만원)		
			평균	합계	
전체	(227)	7.0	9,671	2,195,347	
주요 생산 및 서비스 품목	제품	(32)	5.2	6,671	213,482
	시각	(94)	6.7	7,006	658,543
	환경	(34)	7.5	16,468	559,903
	패키지	(14)	5.4	3,987	55,812
	멀티미디어	(21)	6.0	8,491	178,307
	서비스	(4)	28.5	22,125	88,500
	종합	(26)	8.3	16,492	428,800
	기타	(2)	5.0	6,000	12,000
종사자 규모	5명 이하	(131)	6.7	6,370	834,477
	6~10명	(61)	7.4	11,004	671,269
	11~20명	(21)	8.1	18,629	391,201
	21명 이상	(14)	6.4	21,314	298,400
매출액	3억 원 미만	(87)	6.1	3,619	314,846
	3억 원~10억 원 미만	(93)	7.5	9,763	907,997
	10억 원 이상	(47)	7.8	20,692	972,504
권역	서울/인천/경기	(142)	7.1	10,872	1,543,776
	부산/대구/울산/경상	(40)	7.1	7,692	307,664
	광주/전라/제주	(19)	8.3	11,763	223,505
	대전/세종/충청/강원	(26)	5.6	4,631	120,402

2) 표본(227 표본)이 작아 업체별 편차가 크므로 피해 금액 해석에는 주의해야 함

3) 피해용역 추정금액은 '(모집단 규모/표집된 업체수)×피해 금액 합계'로 산출함

4) 국내 평균 피해 금액은 응답 업체 중 '국내 피해 금액을 응답한 표본의 피해 금액 총합/피해 금액 응답 기업 수'로 산출.

2.2 작년과 비교 : 국내 피해 현황

□ 사업체 특성별 경험률

- 최근 2개년(2020년, 2021년) 피해 경험률을 비교하면, '패키지디자인' 분야의 피해 경험률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종사자 규모별로 10명 이하의 소규모 디자인전문회사의 피해 경험률이 더 높아졌으며, 권역별로는 '서울/인천/경기' 소재 디자인전문회사의 피해 경험률이 높게 나타남

【표 2-3】 사업체 특성별 국내 피해 경험률 비교

(base: 전체, n=1,000, 단위 : %)

구분		2020년도		2021년도	
		사례 수	경험률(%)	사례 수	경험률(%)
전체		(1,000)	17.7	(1,000)	22.7
주요 생산 및 서비스 품목	제품	(201)	11.4	(173)	18.5
	시각	(375)	20.5	(314)	29.9
	환경	(238)	16.8	(199)	17.1
	패키지	(24)	41.7	(39)	35.9
	멀티미디어	(77)	13.0	(122)	17.2
	서비스	(31)	12.9	(53)	7.5
	종합(생활상품)	(17)	23.5	(83)	31.3
	기타	(37)	24.3	(17)	11.8
종사자 규모	5명 이하	(472)	21.2	(489)	26.8
	6~10명	(276)	15.6	(238)	25.6
	11~20명	(158)	17.7	(163)	12.9
	21명 이상	(94)	6.4	(110)	12.7
매출액	3억 원 미만	(342)	16.7	(357)	24.4
	3억 원~10억 원 미만	(344)	23.5	(304)	30.6
	10억 원 이상	(314)	12.4	(339)	13.9
권역	서울/인천/경기	(509)	20.4	(528)	26.9
	부산/대구/울산/경상	(240)	14.2	(211)	19.0
	광주/전라/제주	(133)	15.0	(133)	14.3
	대전/세종/충청/강원	(118)	16.1	(128)	20.3

□ 피해 사업체 특성 비교

- 2020년과 2021년 피해 사업체의 주요 생산 및 서비스 품목을 보면 모두 '시각 디자인'과 '환경디자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종사자 규모가 10인 이하인 소규모 업체의 피해 경험률이 80% 이상으로 매우 높았으며, 2021년에는 비율이 더 커짐(2020년 80.8% → 2021년 84.6%)
- 매출액 분포로는 '3억 원 ~ 10억 원 미만'의 피해 경험률이 가장 높으나, 2021년에는 '3억 원 미만' 업체의 피해 경험률이 5% 이상 높아짐

【표 2-4】 피해업체 사업체 특성별 분포

(base: 국내피해업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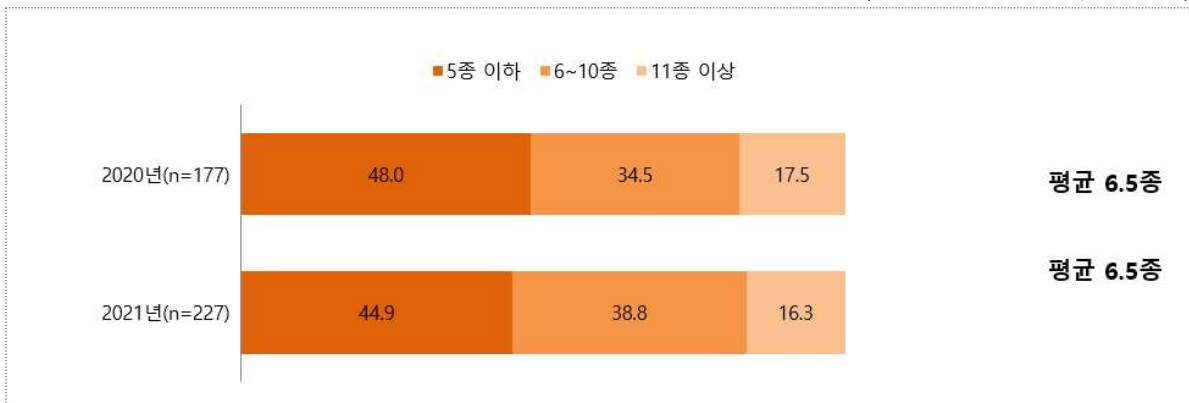
구분		2020년도	2021년도
사례수		(177)	(227)
주요 생산 및 서비스 품목	제품	13.0	14.1
	시각	43.5	41.4
	환경	22.6	15.0
	패키지	5.6	6.2
	멀티미디어	5.6	9.3
	서비스	2.3	1.8
	종합	2.3	11.5
	기타	5.1	0.9
종사자 규모	5명 이하	56.5	57.7
	6~10명	24.3	26.9
	11~20명	15.8	9.3
	21명 이상	3.4	6.2
매출액	3억 원 미만	32.2	38.3
	3억 원~10억 원 미만	45.8	41.0
	10억 원 이상	22.0	20.7
권역	서울/인천/경기	58.8	62.6
	부산/대구/울산/경상	19.2	17.6
	광주/전라/제주	11.3	8.4
	대전/세종/충청/강원	10.7	11.5

□ 피해 경험 종류

- 2021년 디자인전문회사의 피해 경험 종류는 평균 6.5종으로 2020년과 동일함
- 2020년과 비교하여 '5종 이하'의 피해 경험 비율은 감소한 반면, '6-10종' 피해 경험 비율은 증가하여 디자인전문회사가 여러 단계에서 피해를 겪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2-5】 국내 디자인 피해 경험 종류

(base: 국내피해업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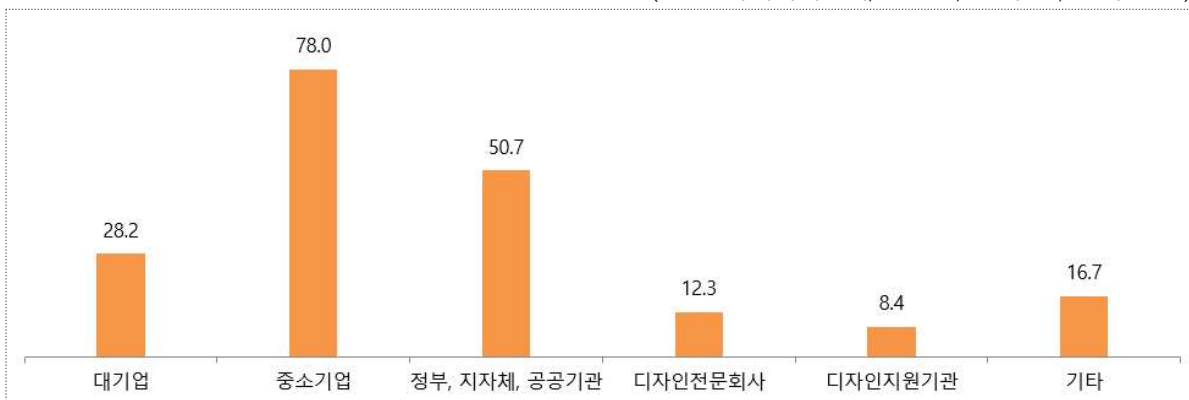


□ 분쟁 대상

- 주요분쟁 대상은 '중소기업'(78.0%)과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50.7%)임

【그림 2-6】 국내 디자인 피해 분쟁 대상

(base: 국내피해업체, n=227, 단위: %, 중복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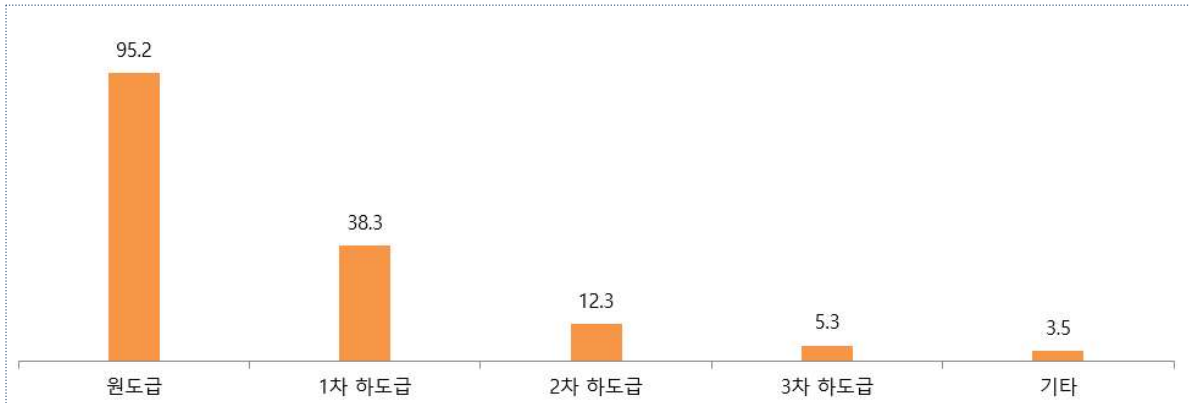


□ 하청 유형

- 하청 유형은 '원도급'(95.2%)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1차 하도급'(38.3%)이 높게 나타남

【그림 2-7】 국내 디자인 피해 하청 유형

(base: 국내피해업체, n=227, 단위: %, 중복 응답)



□ 피해 건수 및 금액

- 2020년 대비 피해용역 건수는 7.0건으로 수치상 1.5건 낮아졌으나, 피해용역 금액은 9,671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0.8% 증가함
- 피해용역 건수는 낮아졌으나, 피해 금액은 높아져 디자인전문회사가 겪는 피해의 정도가 커진 것으로 보여짐

【표 2-5】 최근 2년 국내 피해 용역 건수와 피해 금액

(base: 국내피해업체)

구분		2020년도	2021년도
사례 수		(177)	(227)
피해용역 건수	평균	8.5건	7.0건
	중양값	35,000,000원	50,000,000원
피해용역 금액	평균	87,277,740원	96,711,322원
	중양값	35,000,000원	50,000,000원
	합계	15,448,160,000원	21,953,47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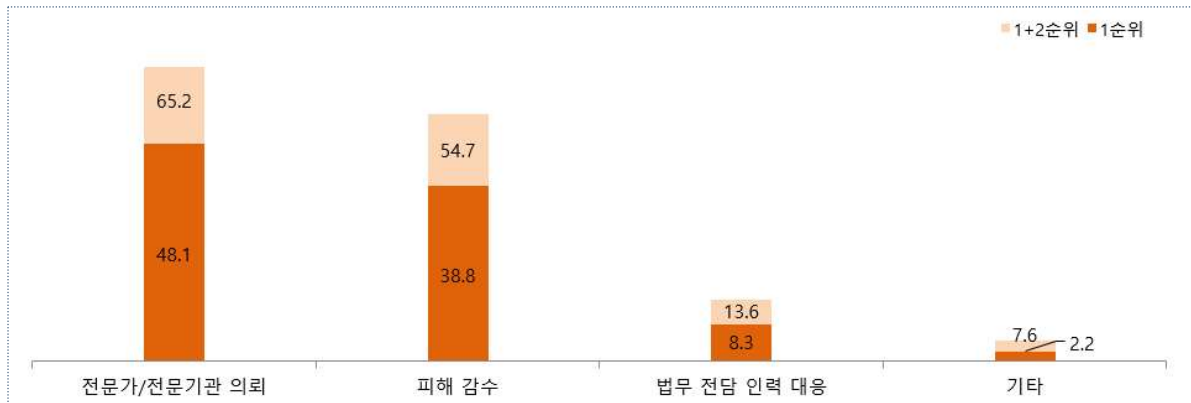
2.3 국내 피해 대응 방안

□ 대처 방안

- 디자인전문회사는 용역 진행 과정에서 피해를 경험할 때 주로 '전문가/전문기관에 의뢰'(65.2%)하거나 '피해를 감수'(54.7%)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사업체 특성별로 보면, 종사자 규모가 작을수록 '피해 감수' 비율이 높고, 종사자 규모가 크거나 매출액이 클수록 '기업 법무 전담 인력을 통한 대응'이 높게 나타남

【그림 2-8】 국내 프로젝트 피해 대처 방안

(base: 전체 n=1,000, 단위: %)



【표 2-6】 사업체 특성별 국내 피해 대처 방안

(base: 전체, n=1,000, 단위: %, 1+2순위)

구분	사례 수	전문가/ 전문기관 의뢰	피해 감수	기업법무 전담 인력 대응	기타	
전체	(1,000)	65.2	54.7	13.6	4.7	
종사자 규모	5명 이하	(489)	60.9	63.8	7.4	5.3
	6~10명	(238)	66.4	54.2	17.6	2.5
	11~20명	(163)	70.6	41.1	17.8	7.4
	21명 이상	(110)	73.6	35.5	26.4	2.7
매출액	3억 원 미만	(357)	62.7	61.6	7.0	5.6
	3억 원~10억 원 미만	(304)	62.5	60.5	12.5	3.9
	10억 원 이상	(339)	70.2	42.2	21.5	4.4
권역	서울/인천/경기	(528)	61.7	56.4	13.1	4.7
	부산/대구/울산/경상	(211)	72.0	46.9	15.6	1.9
	광주/전라/제주	(133)	71.4	55.6	15.0	6.8
	대전/세종/충청/강원	(128)	61.7	59.4	10.9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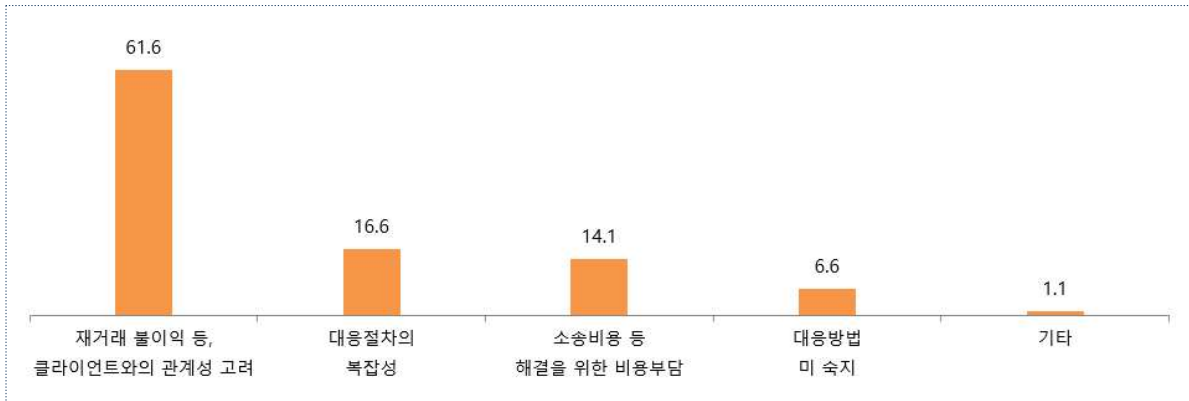
주) 없음/모름(3.2%) 제외

□ 피해 감수 이유

- 피해를 경험했을 때 피해를 감수하는 이유로는 '재거래 불이익 등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성 고려'(61.6%)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이 외에 '대응절차의 복잡성'(16.6%), '대응방법 미 숙지'(6.6%)와 같은 대응방법/절차에 대한 어려움이 23.2%임

【그림 2-9】 국내 피해 발생 시, 피해 감수 이유

(base: 국내피해감수업체, n=547, 단위: %)



□ 피해 발생 시 가장 필요한 지원

- 피해 발생 시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문제해결 대행 기관'(48.6%)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대응 절차, 방법 등에 대한 법률서비스 지원'(30.2%)이 높게 나타남. 전문기관/전문가를 통한 지원은 대응방법/절차의 어려움으로 피해를 감수하는 것과 연관됨
- 종사자 규모가 10명 이하 디자인전문회사는 '소송 등 비용 지원'의 비율이 다른 지원 유형 대비 높게 나타나, 비용부담으로 인해 피해를 감수하는 소규모 업체의 니즈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표 2-7】 국내 피해 발생 시 가장 필요한 지원

(base: 국내피해감수업체, n=547,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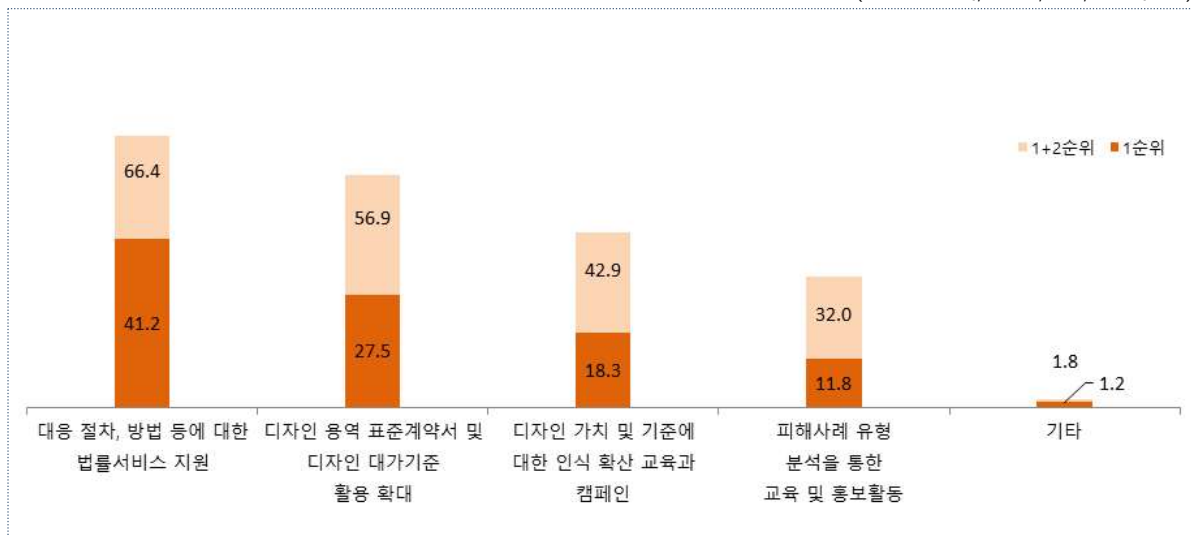
구분	사례 수	문제해결 대행 기관	법률서비스 지원	소송 등 비용 지원	기타	
전체	(547)	48.6	30.2	18.6	2.6	
종사자 규모	5명 이하	(312)	47.8	31.4	18.9	1.9
	6 ~ 10명	(129)	47.3	27.1	20.9	4.7
	11 ~ 20명	(67)	50.7	32.8	13.4	3.0
	21명 이상	(39)	56.4	25.6	17.9	0.0

□ 피해 예방을 위한 국가기관의 역할

- 피해 예방을 위한 국가기관 등의 역할(1+2순위 기준)로 '대응 절차, 방법 등에 대한 법률서비스 지원'(66.4%)과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및 디자인 대가기준 활용 확대'(56.9%)를 주로 기대함
- 국내 피해 경험업체는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및 디자인 대가기준 활용 확대'(61.2%)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디자인 가치 및 기준에 대한 인식이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그림 2-10】 피해 예방을 위한 국가기관의 역할

(base: 전체, n=1,000, 단위: %)



【표 2-8】 피해 경험 여부별 피해 예방을 위한 국가기관의 역할

(base: 전체, n=1,000, 단위: %, 1+2순위)

구분	사례 수	대응 절차 등 법률서비스 지원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및 기준 활용 확대	디자인 가치/ 기준의 인식 확산 교육 및 캠페인	피해 사례 유형 분석에 따른 교육/ 홍보활동	기타
전체	(1,000)	66.4	56.9	42.9	32.0	1.8
국내 피해 경험	(227)	51.5	61.2	59.0	22.9	5.3
경험 여부	(773)	70.8	55.6	38.2	34.7	0.8

□ 불공정거래를 줄이기 위한 필요사항 (자유 의견)

- 불공정거래를 줄이기 위해 '지원 정책'(22.2%)과 '교육/홍보/정보제공'(16.4%), '제도 개선/마련'(16.1%)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응답됨. 세부적으로는 '무료 법률 자문/상담, 대신 대응해주는 시스템, 중재 등 필요'(11.8%)와 '피해 예방, 피해 사례, 대응 방안 등 교육, 홍보(11.7%)'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이 나타남
- 불공정거래 피해 사례에서 '무리한 디자인 변경 및 수정'과 '계약과 상관없는 개발 요구'(15.7%)가 가장 많음. 피해 발생 시 클라이언트와의 관계로 인해 피해를 감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신 중재를 해줄 수 있는 전문인력 또는 시스템이 필요함

【표 2-9】 불공정거래를 줄이기 위한 필요사항 (자유 의견)

(base: 전체, n=1,000, %, 중복)

구분	세부 의견	비율(%)
지원 정책 (22.2%)	무료 법률 자문/상담, 대신 대응해주는 시스템, 중재 등 지원 필요	11.8
	디자인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 및 정책	7.6
	비용 지원, 지원금 확대 등	2.3
	정부차원 기업매칭, 연계서비스	0.5
교육/홍보/ 정보제공 (16.4%)	피해 예방, 피해 사례, 대응 방안 등 교육, 홍보	11.7
	디자인 가치, 전문성 등에 대한 교육, 홍보	3.3
	디자인 권리보호/저작권 등에 대한 교육	0.9
	노임단가, 대가기준에 대한 교육, 홍보	0.5
제도 개선/마련 (16.1%)	대가 기준의 현실화/상향	9.6
	디자인 용역에 대한 표준화된 양식, 단가 필요	4.4
	디자인 대가 기준/디자인 인력 등에 대한 법안 마련	1.2
	디자인 용역에 대한 표준화된 양식, 단가 필요	0.9
인식 개선 (12.8%)	발주기관의 디자인에 대한 인식 개선 필요	7.7
	갑을 의식 개선 필요	2.3
	디자인 관련 계약서 준수에 대한 인식 개선 필요	1.8
	건전한 경쟁문화 마련	1.0

주) 의견 없음/모름(28.4%) 제외

제10장

유형별 피해 사례 현황

3.1 불공정거래 피해 유형

□ 총괄

- 디자인 용역 진행 중 불공정거래 피해를 경험한 사업체는 22.3%임
- 세부 피해 사례별로는 '계약 후 무리한 디자인 방향변경 및 수정 작업 요구'가 15.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계약 내용과 상관없는 개발 요구'(14.3%)가 높게 나타남

【표 3-1】 불공정거래 피해 사례 경험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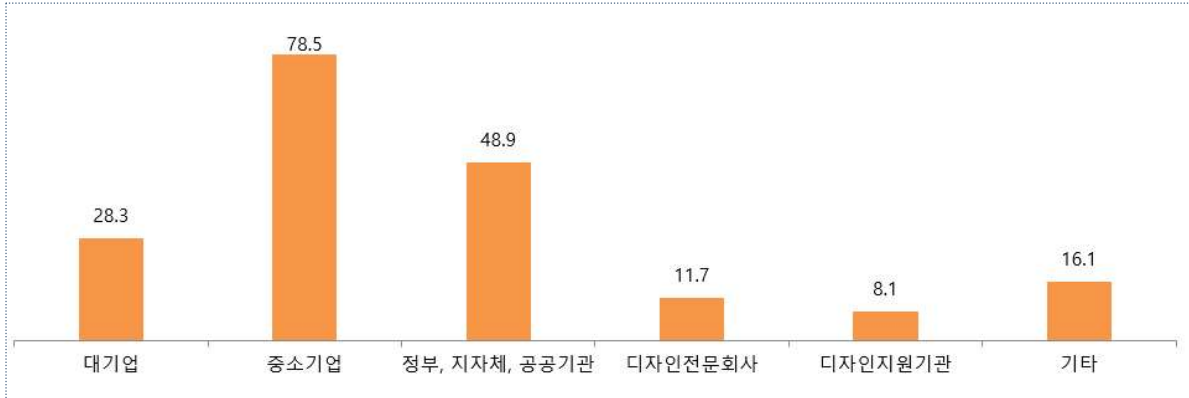
(base: 전체, n=1,000, 단위: %)

유형	세부 사례	경험률
불공정거래 피해 전체		22.3
계약 관련	구두계약 진행, 완료 후 계약서 미비로 인한 피해	9.9
	계약서 작성 시, 발주처에게 과도하게 유리한 조항 요구	9.8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받지 못한 경험	12.9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일방적 해지	7.7
	계약 중도 해지 시 소요된 비용(개발비, 인건비 등) 불인정	10.1
제안 및 시안 PT 관련	제안서 제출 후 프로젝트 무산에 대한 일방적 통보	12.9
	시안 경쟁 PT 참가에 대한 리젝트 피 (reject fee) 미지급	11.6
디자인 개발 과정 관련	계약 후 무리한 디자인 방향 변경 및 수정 작업 요구	15.7
	계약 내용과 상관없는 개발 요구	14.3
	결과물 납품 후, 합리적 근거 없는 추가 요구	10.1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 불인정	11.0

- 불공정거래 피해의 분쟁 대상은 주로 '중소기업'(78.5%)과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48.9%)으로 나타남

【그림 3-1】 불공정거래 피해 분쟁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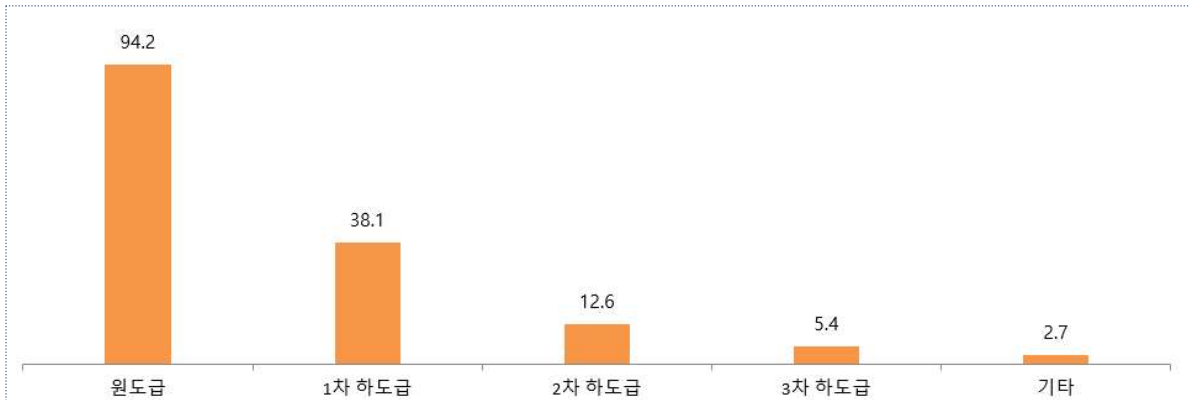
(base: 불공정거래 피해 경험 사업체, n=223, 단위: %, 중복 응답)



- 불공정거래 피해를 경험한 디자인전문회사의 하청 유형은 90% 이상이 '원도급'으로 나타남

【그림 3-2】 불공정거래 피해 하청 유형

(base: 불공정거래 피해 경험 사업체, n=223, 단위: %, 중복 응답)



□ 구두계약 진행, 완료 후 계약서 미비로 인한 피해

- 구두계약 진행, 완료 후 계약서 미비로 인한 피해를 경험한 사업체는 9.9%임
- 종사자 규모가 10인 이하의 작은 사업체일수록 피해 경험률이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서울/경기/인천'(11.4%)에 소재한 사업체의 피해 경험률이 타 권역 대비 높게 나타남

【표 3-2】 구두계약 진행, 완료 후 계약서 미비로 인한 피해 경험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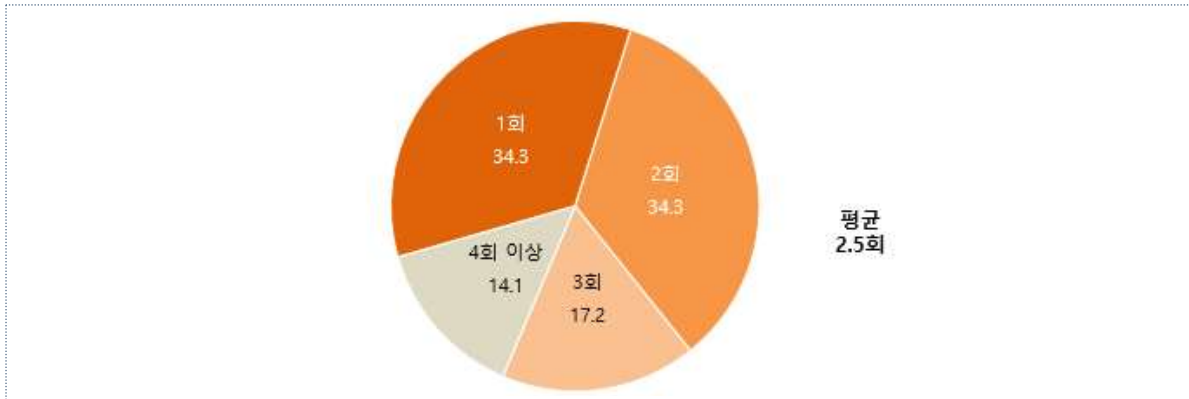
(base: 전체, n=1,000, 단위: %)

구분		사례 수	피해 경험 있다	피해 경험 없다
전체		(1,000)	9.9	90.1
주요 생산 및 서비스 품목	제품	(173)	5.2	94.8
	시각	(314)	13.4	86.6
	환경	(199)	10.6	89.4
	패키지	(39)	20.5	79.5
	멀티미디어	(122)	6.6	93.4
	서비스	(53)	0.0	100.0
	종합	(83)	13.3	86.7
	기타	(17)	0.0	100.0
종사자 규모	5명 이하	(489)	11.2	88.8
	6~10명	(238)	13.0	87.0
	11~20명	(163)	4.9	95.1
	21명 이상	(110)	4.5	95.5
매출액	3억 원 미만	(357)	10.9	89.1
	3억 원~10억 원 미만	(304)	13.5	86.5
	10억 원 이상	(339)	5.6	94.4
권역	서울/인천/경기	(528)	11.4	88.6
	부산/대구/울산/경상	(211)	8.5	91.5
	광주/전라/제주	(133)	7.5	92.5
	대전/세종/충청/강원	(128)	8.6	91.4

- 경험 횟수는 '1회'(34.3%), '2회'(34.3%)가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 경험 횟수는 2.5회임

【그림 3-3】 구두계약 진행, 완료 후 계약서 미비로 인한 피해 경험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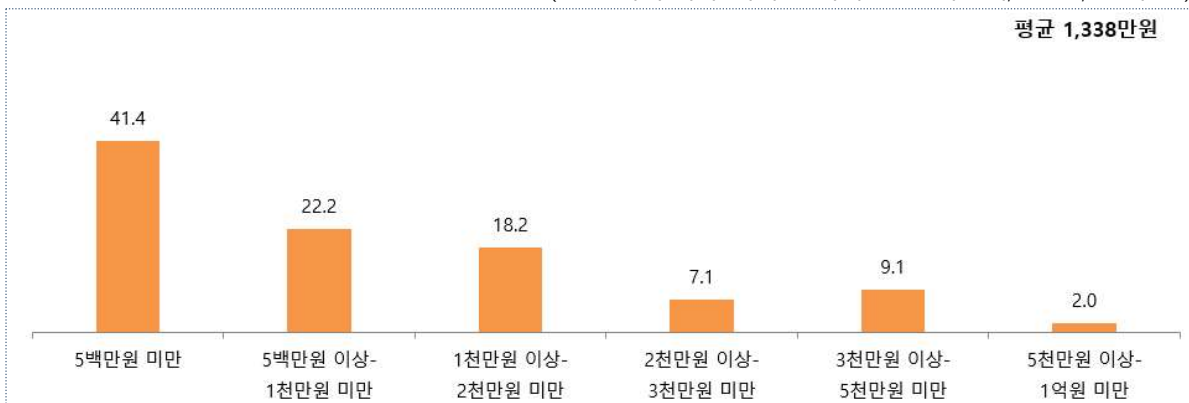
(base: 구두계약 미이행 피해 경험 사업체, n=99, 단위: %)



- 피해 비용은 '5백만 원 미만'(41.4%)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천만 원 미만의 피해 비용이 50% 이상으로 나타남 피해 비용이 클수록 피해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

【그림 3-4】 구두계약 진행, 완료 후 계약서 미비로 인한 피해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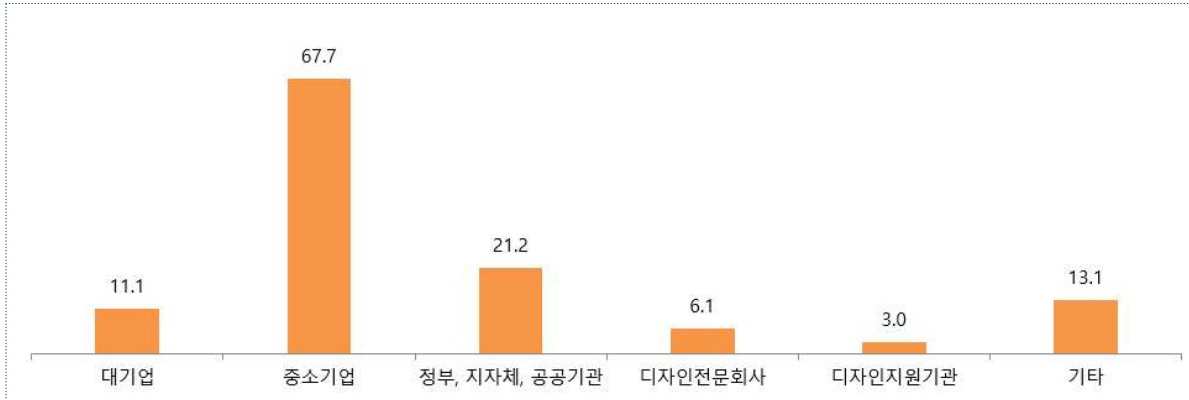
(base: 구두계약 미이행 피해 경험 사업체, n=99, 단위: %)



● 주요 분쟁 대상은 '중소기업'(67.7%)으로 나타남

【그림 3-5】 구두계약 진행, 완료 후 계약서 미비로 인한 피해 분쟁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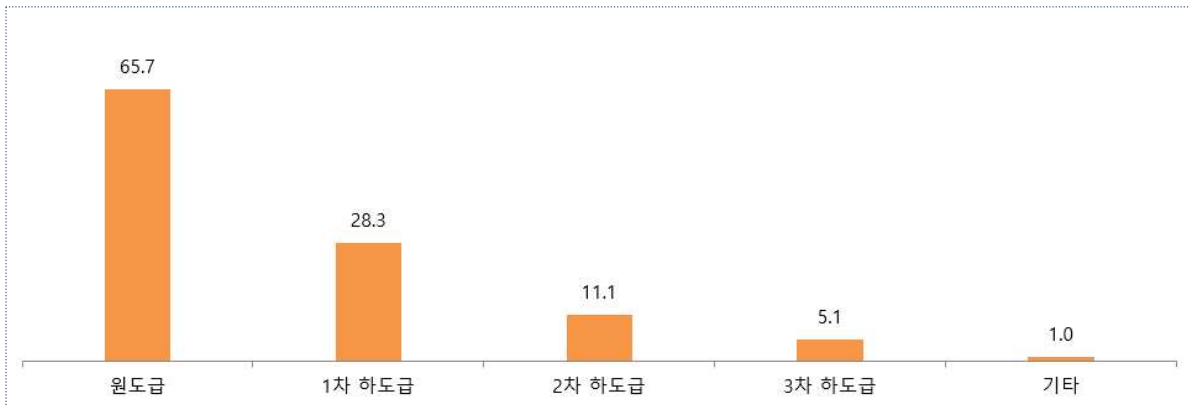
(base: 구두계약 미이행 피해 경험 사업체, n=99, 단위: %, 중복 응답)



● 하청 유형은 '원도급'(65.7%)로 가장 높고, '1차 하도급'(28.3%)이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3-6】 구두계약 진행, 완료 후 계약서 미비로 인한 피해 하청 유형

(base: 구두계약 미이행 피해 경험 사업체, n=99, 단위: %, 중복 응답)



□ 계약서 작성 시, 발주처에게 과도하게 유리한 조항 요구

- 계약서 작성 시, 발주처에게 과도하게 유리한 조항을 요구당한 경험이 있는 사업체는 9.8%로 나타남
- 종사자 규모가 작을수록 사업체의 피해 경험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매출액 규모가 '3억 원 ~ 10억 원 미만'(15.1%)인 사업체의 피해 경험률이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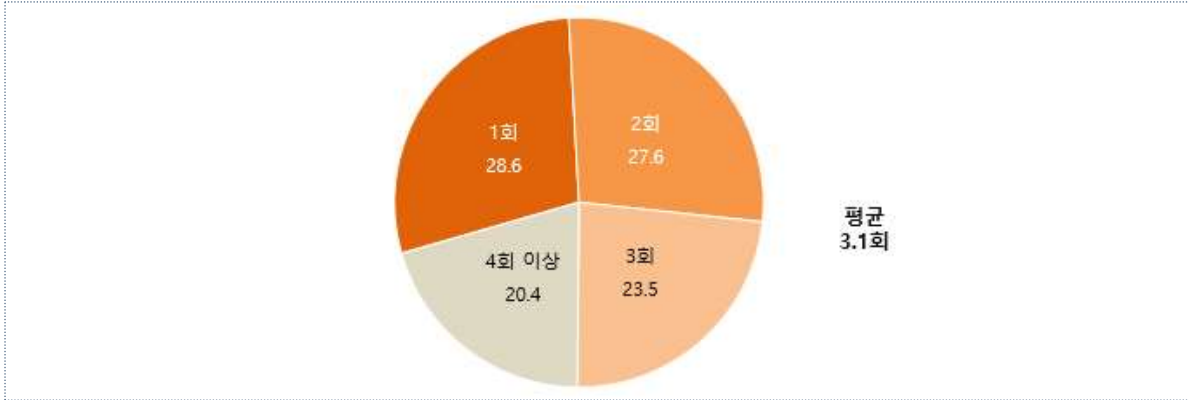
【표 3-3】 계약서 작성 시, 발주처에게 과도하게 유리한 조항 요구 피해 경험률

(base: 전체, n=1,000, 단위: %)

구분		사례 수	피해 경험 있다	피해 경험 없다
전체		(1,000)	9.8	90.2
주요 생산 및 서비스 품목	제품	(173)	7.5	92.5
	시각	(314)	11.1	88.9
	환경	(199)	8.5	91.5
	패키지	(39)	17.9	82.1
	멀티미디어	(122)	9.0	91.0
	서비스	(53)	1.9	98.1
	종합	(83)	15.7	84.3
	기타	(17)	5.9	94.1
종사자 규모	5명 이하	(489)	10.2	89.8
	6~10명	(238)	12.2	87.8
	11~20명	(163)	8.0	92.0
	21명 이상	(110)	5.5	94.5
매출액	3억 원 미만	(357)	7.8	92.2
	3억 원~10억 원 미만	(304)	15.1	84.9
	10억 원 이상	(339)	7.1	92.9
권역	서울/인천/경기	(528)	13.3	86.7
	부산/대구/울산/경상	(211)	5.7	94.3
	광주/전라/제주	(133)	6.8	93.2
	대전/세종/충청/강원	(128)	5.5	9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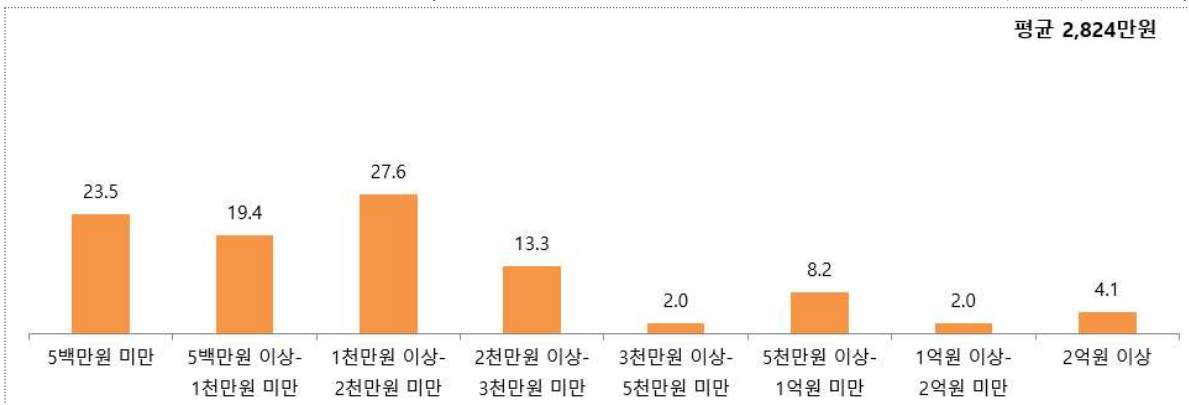
- 피해 경험 횟수는 평균 3.1회이며, 피해 경험 비율은 '1회'(28.6%)가 상대적으로 높으나 횟수별 비율은 비슷한 수준임

【그림 3-7】 계약서 작성 시, 발주처에게 과도하게 유리한 조항 요구 피해 경험 횟수
(base: 발주처에 유리한 조항 요구 피해 경험 사업체, n=98,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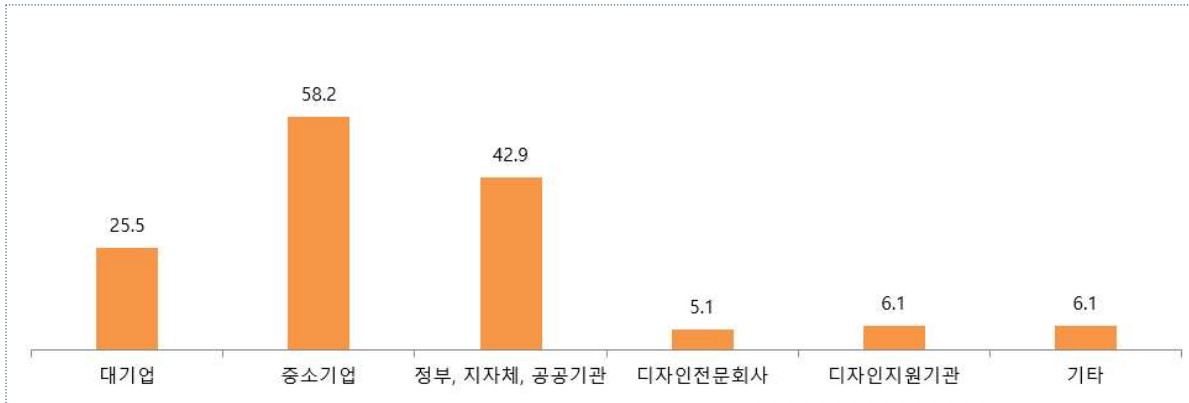
- 피해 비용은 '1천만 원 이상-2천만 원 미만'(27.6%)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5백만 원 미만'(23.5%)이 높게 나타남

【그림 3-8】 계약서 작성 시, 발주처에게 과도하게 유리한 조항 요구 피해 비용
(base: 발주처에 유리한 조항 요구 피해 경험 사업체, n=98,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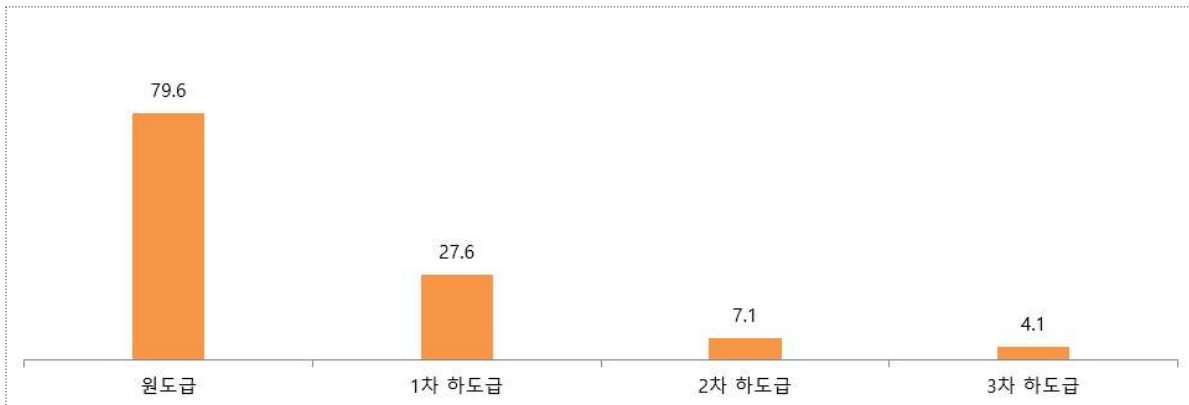
- 분쟁 대상은 '중소기업'(58.2%),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42.9%) 순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3-9】 계약서 작성 시, 발주처에게 과도하게 유리한 조항 요구 피해 분쟁 대상
(base: 발주처에 유리한 조항 요구 피해 경험 사업체, n=98, 단위: %, 중복 응답)



- 하청 유형은 '원도급'(79.6%)이 가장 높고, '1차 하도급'(27.6%)이 다음으로 높음

【그림 3-10】 계약서 작성 시, 발주처에게 과도하게 유리한 조항 요구 피해 하청 유형
(base: 발주처에 유리한 조항 요구 피해 경험 사업체, n=98, 단위: %, 중복 응답)



□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 지연 또는 미지급

-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 지연 지급 또는 미지급 피해를 경험한 사업체는 전체 사업체 중 12.9%로 나타남
- 종사자 규모가 작을수록 피해 경험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서울/인천/경기'(15.7%) 소재 사업체의 경험률이 타 권역 대비 높게 나타남

【표 3-4】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 지연 또는 미지급 피해 경험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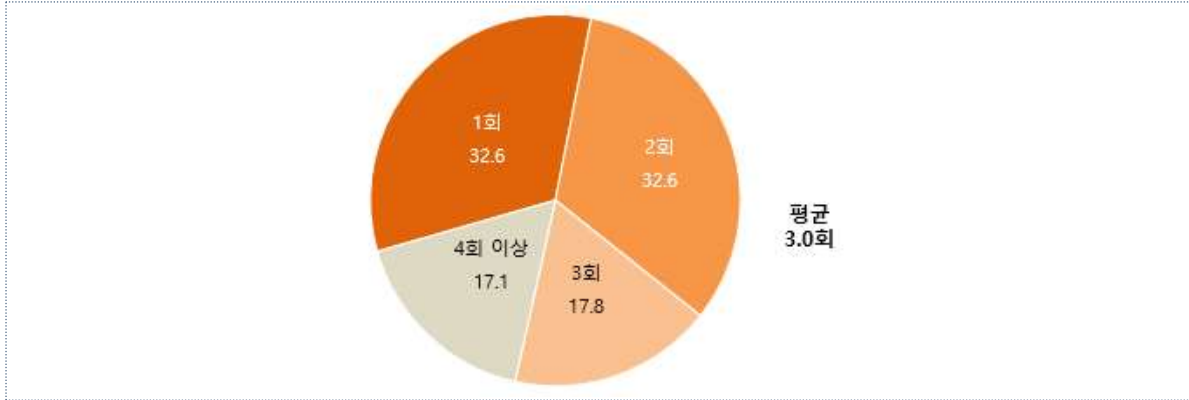
(base: 전체, n=1,000, 단위: %)

구분		사례 수	피해 경험 있다	피해 경험 없다
전체		(1,000)	12.9	87.1
주요 생산 및 서비스 품목	제품	(173)	12.7	87.3
	시각	(314)	16.6	83.4
	환경	(199)	9.0	91.0
	패키지	(39)	28.2	71.8
	멀티미디어	(122)	9.0	91.0
	서비스	(53)	0.0	100.0
	종합	(83)	15.7	84.3
	기타	(17)	11.8	88.2
종사자 규모	5명 이하	(489)	16.6	83.4
	6~10명	(238)	13.0	87.0
	11~20명	(163)	8.6	91.4
	21명 이상	(110)	2.7	97.3
매출액	3억 원 미만	(357)	14.6	85.4
	3억 원~10억 원 미만	(304)	18.1	81.9
	10억 원 이상	(339)	6.5	93.5
권역	서울/인천/경기	(528)	15.7	84.3
	부산/대구/울산/경상	(211)	10.4	89.6
	광주/전라/제주	(133)	9.0	91.0
	대전/세종/충청/강원	(128)	9.4	90.6

- 평균 3.0회의 피해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회 이하 피해 경험률은 65.2%로 절반 이상임

【그림 3-11】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 지연 또는 미지급 피해 경험 횟수

(base: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 지연 또는 미지급 피해 경험 사업체, n=129, 단위: %)



- 피해 비용은 '5백만 원 미만'(30.2%)이 가장 높았으며, 피해 비용이 높을수록 피해 경험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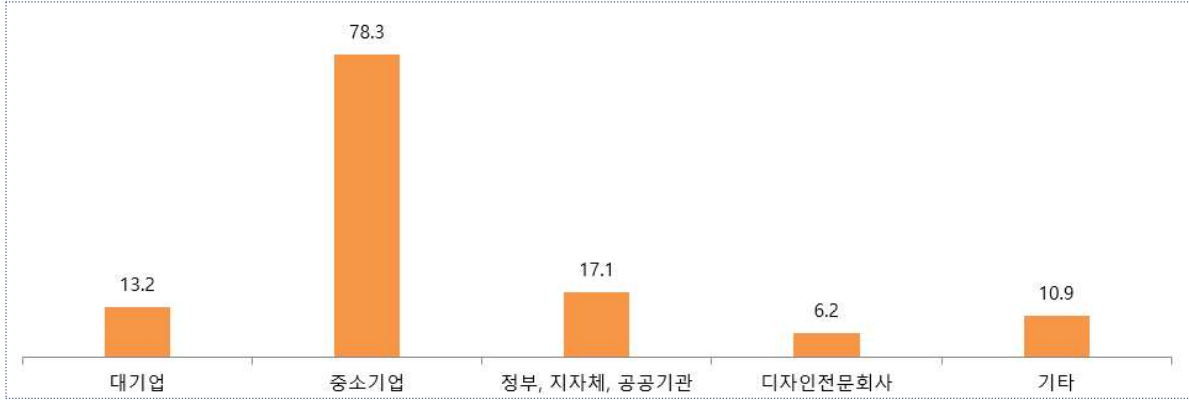
【그림 3-12】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 지연 또는 미지급 피해 비용

(base: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 지연 또는 미지급 피해 경험 사업체, n=129,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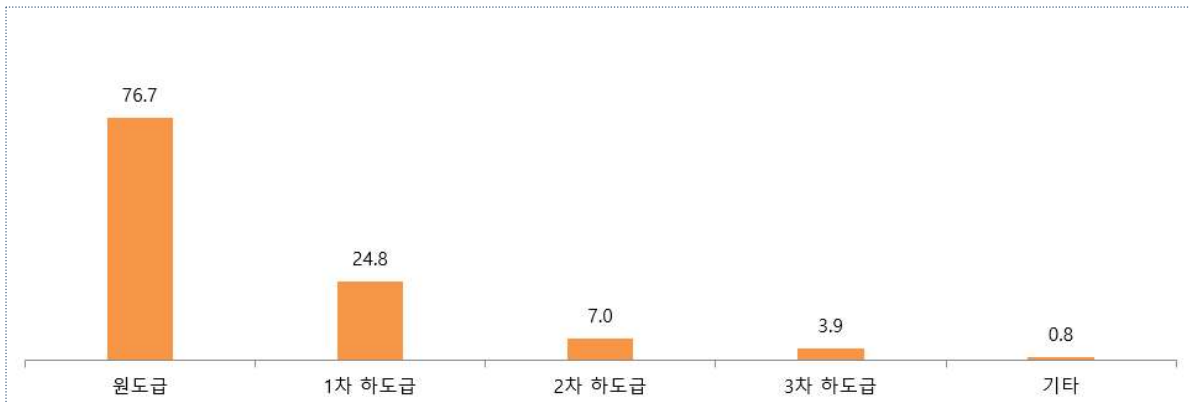
- 분쟁 대상으로 '중소기업'(78.3%)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17.1%)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그림 3-13】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 지연 또는 미지급 피해 분쟁 대상
(base: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 지연 또는 미지급 피해 경험 사업체, n=129, 단위: %, 중복 응답)



- 하청 유형은 '원도급'(76.7%)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1차 하도급'(24.8%)이 높게 나타남

【그림 3-14】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 지연 또는 미지급 피해 하청 유형
(base: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 지연 또는 미지급 피해 경험 사업체, n=129, 단위: %, 중복 응답)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일방적 해지

- 프로젝트 진행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피해를 경험한 사업체는 전체 사업체 중 7.7%로 나타남
- 종사자 규모가 10명 이하로 소규모이거나, '서울/인천/경기'(10.0%) 권역에 있는 사업체의 피해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3-5】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일방적 해지 피해 경험률

(base: 전체, n=1,000, 단위: %)

구분		사례 수	피해 경험 있다	피해 경험 없다
전체		(1,000)	7.7	92.3
주요 생산 및 서비스 품목	제품	(173)	5.2	94.8
	시각	(314)	12.1	87.9
	환경	(199)	5.5	94.5
	패키지	(39)	15.4	84.6
	멀티미디어	(122)	4.9	95.1
	서비스	(53)	0.0	100.0
	종합	(83)	8.4	91.6
	기타	(17)	0.0	100.0
종사자 규모	5명 이하	(489)	9.6	90.4
	6~10명	(238)	10.5	89.5
	11~20명	(163)	3.1	96.9
	21명 이상	(110)	0.0	100.0
매출액	3억 원 미만	(357)	9.2	90.8
	3억 원~10억 원 미만	(304)	10.5	89.5
	10억 원 이상	(339)	3.5	96.5
권역	서울/인천/경기	(528)	10.0	90.0
	부산/대구/울산/경상	(211)	5.2	94.8
	광주/전라/제주	(133)	4.5	95.5
	대전/세종/충청/강원	(128)	5.5	94.5

- 피해 경험 횟수는 평균 2.2회이며, 일방적 해지 피해를 '1회'(49.4%) 경험한 사업체가 가장 많음

【그림 3-15】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일방적 해지 피해 경험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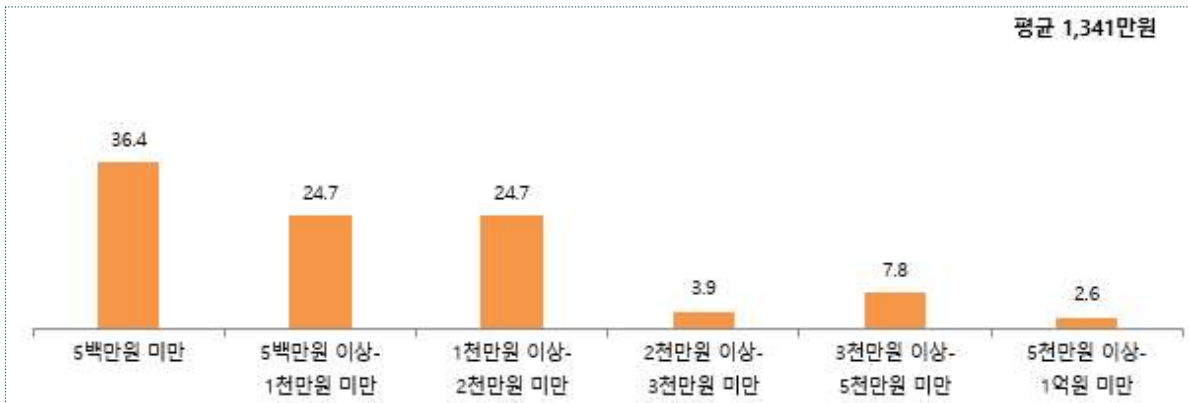
(base: 프로젝트 진행 중 일방적 계약해지 경험 사업체, n=77, 단위: %)



- 피해 비용은 '5백만 원 미만'(36.4%)이 가장 높고, 대부분 사업체의 피해 비용은 2천만 원 미만(85.7%)으로 나타남

【그림 3-16】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일방적 해지 피해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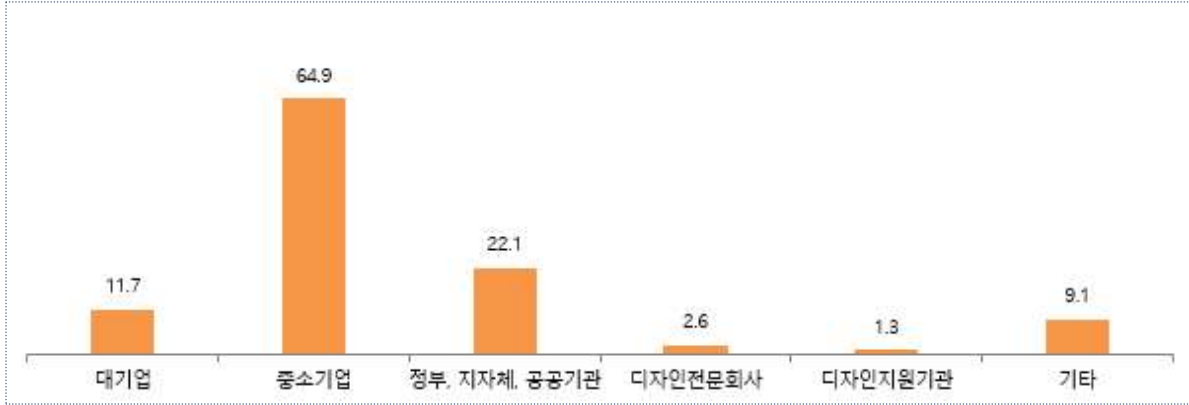
(base: 프로젝트 진행 중 일방적 계약해지 경험 사업체, n=77, 단위: %)



- 분쟁 대상으로 '중소기업'(64.9%)이 가장 많았으며,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22.1%), '대기업'(11.7%) 순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3-17】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일방적 해지 피해 분쟁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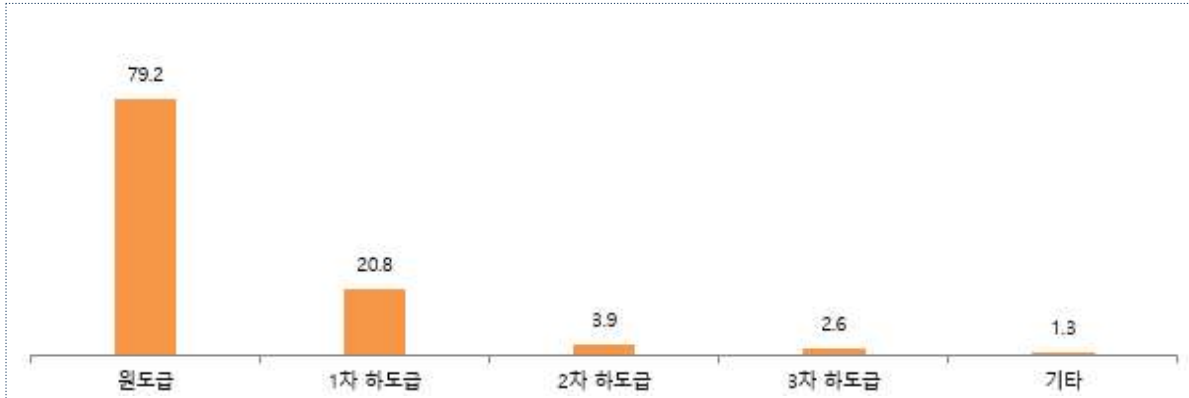
(base: 프로젝트 진행 중 일방적 계약해지 경험 사업체, n=77, 단위: %, 중복 응답)



- 하청 유형은 '원도급'이 79.2%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3-18】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일방적 해지 피해 하청 유형

(base: 프로젝트 진행 중 일방적 계약해지 경험 사업체, n=77, 단위: %, 중복 응답)



□ 중도 해지 시, 소요비용 불인정

- 중도 해지 시, 소요된 비용에 대해 일방적으로 불인정 된 피해를 경험한 사업체는 10.1%로 나타남
- 주요 생산 및 서비스 품목 중 '패키지'(20.5%)의 피해 경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종사자 규모가 10명 이하인 사업체 또는 소재지가 '서울/인천/경기' 권역인 사업체의 피해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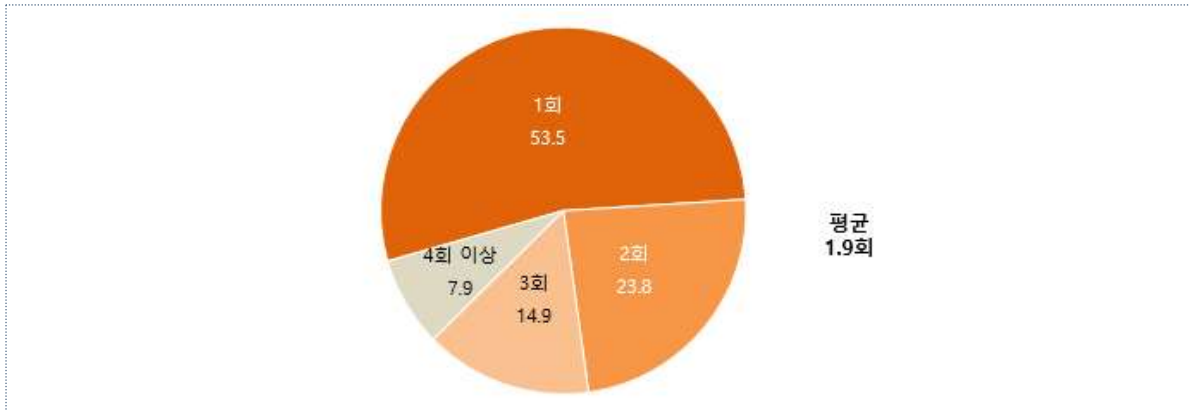
【표 3-6】 중도 해지 시, 소요비용 불인정 피해 경험률

(base: 전체, n=1,000, 단위: %)

구분		사례 수	피해 경험 있다	피해 경험 없다
전체		(1,000)	10.1	89.9
주요 생산 및 서비스 품목	제품	(173)	5.2	94.8
	시각	(314)	13.4	86.6
	환경	(199)	10.1	89.9
	패키지	(39)	20.5	79.5
	멀티미디어	(122)	5.7	94.3
	서비스	(53)	1.9	98.1
	종합	(83)	16.9	83.1
	기타	(17)	0.0	100.0
종사자 규모	5명 이하	(489)	12.5	87.5
	6~10명	(238)	11.8	88.2
	11~20명	(163)	4.3	95.7
	21명 이상	(110)	4.5	95.5
매출액	3억 원 미만	(357)	11.2	88.8
	3억 원~10억 원 미만	(304)	14.5	85.5
	10억 원 이상	(339)	5.0	95.0
권역	서울/인천/경기	(528)	12.3	87.7
	부산/대구/울산/경상	(211)	8.5	91.5
	광주/전라/제주	(133)	6.0	94.0
	대전/세종/충청/강원	(128)	7.8	92.2

- 중도 해지 시, 소요비용 불인정 피해를 경험 사업체는 평균 1.9회의 피해를 경험했으며, 피해 업체의 50% 이상이 '1회'의 피해를 경험함

【그림 3-19】 중도 해지 시, 소요비용 불인정 피해 경험 횟수
(base: 중도 해지 시 소요된 비용 불인정으로 인한 피해 경험 사업체, n=101,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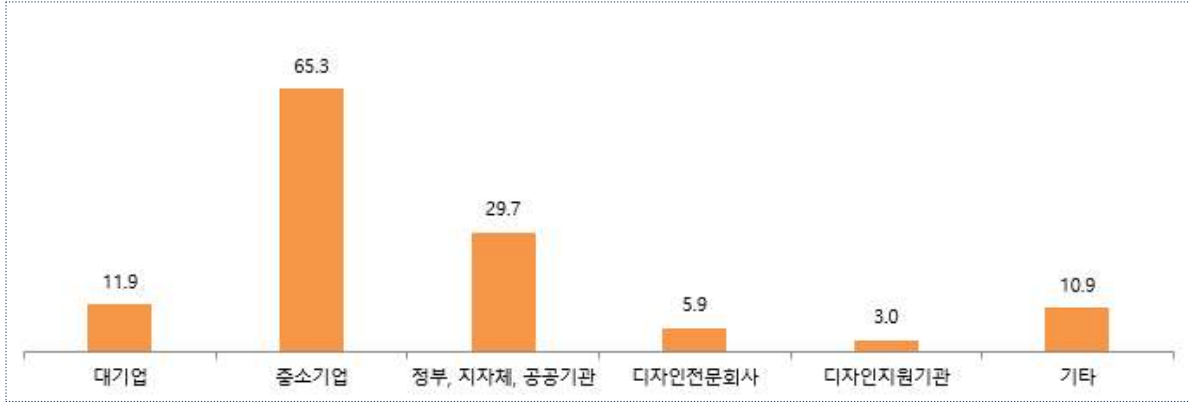
- 2천만 원 미만의 피해 비용 비율이 85% 이상이며, '5백만 원 미만'이 38.6%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3-20】 중도 해지 시, 소요비용 불인정 피해 비용
(base: 중도 해지 시 소요된 비용 불인정으로 인한 피해 경험 사업체, n=101,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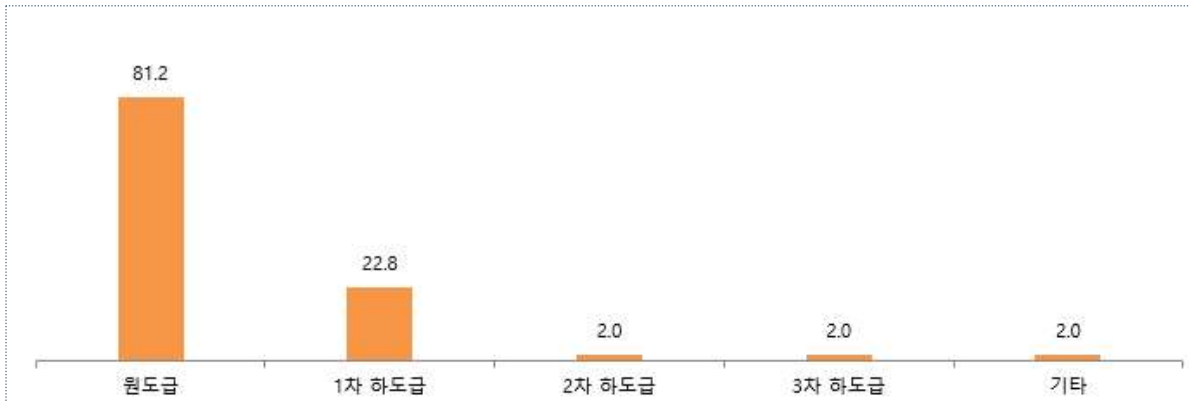
- 분쟁 대상의 절반 이상이 '중소기업'(65.3%)이며,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비율이 29.7% 높은 수준임

【그림 3-21】 중도 해지 시, 소요비용 불인정 피해 분쟁 대상
 (base: 중도 해지 시 소요된 비용 불인정으로 인한 피해 경험 사업체, n=101, 단위: %, 중복 응답)



- 하청 유형은 '원도급'이 81.2%로 가장 높고, '1차 하도급'(22.8%)이 다음으로 높음

【그림 3-22】 중도 해지 시, 소요비용 불인정 피해 하청 유형
 (base: 중도 해지 시 소요된 비용 불인정으로 인한 피해 경험 사업체, n=101, 단위: %, 중복 응답)



□ 제안서 제출 후, 프로젝트 무산에 대한 일방적 통보

- 제안서 제출 후, 프로젝트 무산에 대해 일방적으로 통보받은 경험이 있는 사업체는 12.9%임
- 매출액 규모가 '3억 원~10억 원 미만'(19.4%) 사업체의 피해 경험률이 높았으며, '서울/인천/경기'(16.1%)와 '부산/대구/울산/경상'(10.9%) 소재 사업체의 피해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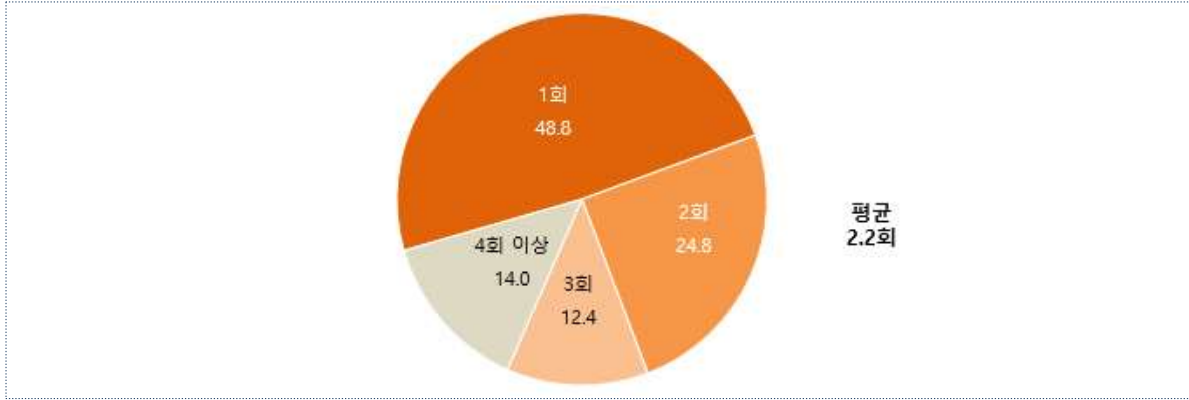
【표 3-7】 제안서 제출 후, 프로젝트 무산에 대한 일방적 통보 피해 경험률

(base: 전체, n=1,000, 단위: %)

구분		사례 수	피해 경험 있다	피해 경험 없다
전체		(1,000)	12.9	87.1
주요 생산 및 서비스 품목	제품	(173)	8.7	91.3
	시각	(314)	14.6	85.4
	환경	(199)	12.1	87.9
	패키지	(39)	23.1	76.9
	멀티미디어	(122)	9.0	91.0
	서비스	(53)	5.7	94.3
	종합	(83)	24.1	75.9
	기타	(17)	5.9	94.1
종사자 규모	5명 이하	(489)	15.5	84.5
	6~10명	(238)	16.0	84.0
	11~20명	(163)	5.5	94.5
	21명 이상	(110)	5.5	94.5
매출액	3억 원 미만	(357)	12.0	88.0
	3억 원~10억 원 미만	(304)	19.4	80.6
	10억 원 이상	(339)	8.0	92.0
권역	서울/인천/경기	(528)	16.1	83.9
	부산/대구/울산/경상	(211)	10.9	89.1
	광주/전라/제주	(133)	7.5	92.5
	대전/세종/충청/강원	(128)	8.6	91.4

- 피해 경험 횟수는 '1회'(48.8%)가 가장 많았으며, 평균 2.2회의 피해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23】 제안서 제출 후, 프로젝트 무산에 대한 일방적 통보 피해 경험 횟수
(base: 제안서 제출 후 프로젝트 무산에 대한 일방적 통보로 인한 피해 경험 사업체, n=129,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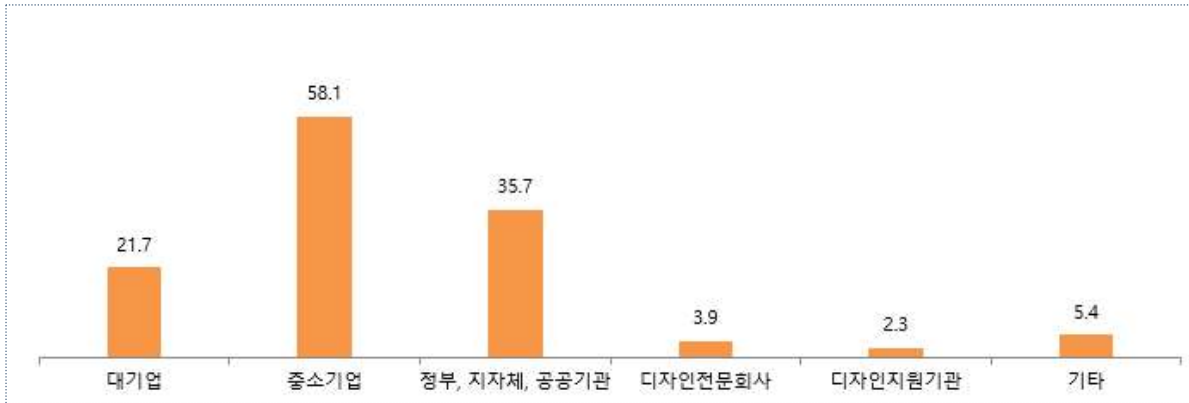
- 평균 피해 비용은 2,661만 원이며, '5백만 원 이상-1천만 원 이상'(24.0%)이 다른 피해 비용 구간 대비 높게 나타남

【그림 3-24】 제안서 제출 후, 프로젝트 무산에 대한 일방적 통보 피해 비용
(base: 제안서 제출 후 프로젝트 무산에 대한 일방적 통보로 인한 피해 경험 사업체, n=129,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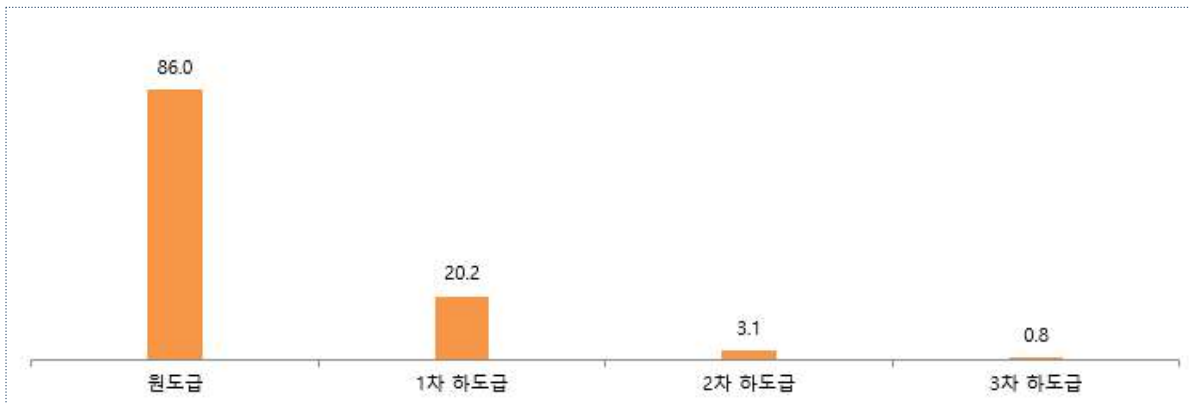
- 분쟁 대상으로 '중소기업'(58.1%)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35.7%), '대기업'(21.7%) 순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3-25】 제안서 제출 후, 프로젝트 무산에 대한 일방적 통보 피해 분쟁 대상
(base: 제안서 제출 후 프로젝트 무산에 대한 일방적 통보로 인한 피해 경험 사업체, n=129, 단위: %, 중복 응답)



- 하청 유형은 '원도급'(86.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1차 하도급'(20.2%)이 높게 나타남

【그림 3-26】 제안서 제출 후, 프로젝트 무산에 대한 일방적 통보 피해 하청 유형
(base: 제안서 제출 후 프로젝트 무산에 대한 일방적 통보로 인한 피해 경험 사업체, n=129, 단위: %, 중복 응답)



□ 시안 경쟁 PT 참가에 대한 리젝트 피 미지급

- 시안 경쟁 PT 참가에 대한 리젝트 피(reject fee)를 받지 못한 경험이 있는 사업체는 전체 사업체 중 11.6%로 나타남
- 특히, 매출액 규모가 '3억 원 ~10억 원 미만'(16.4%)인 사업체의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서울/인천/경기'(14.2%) 권역과 '대전/세종/충청/강원'(10.9%) 권역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체의 피해 경험률이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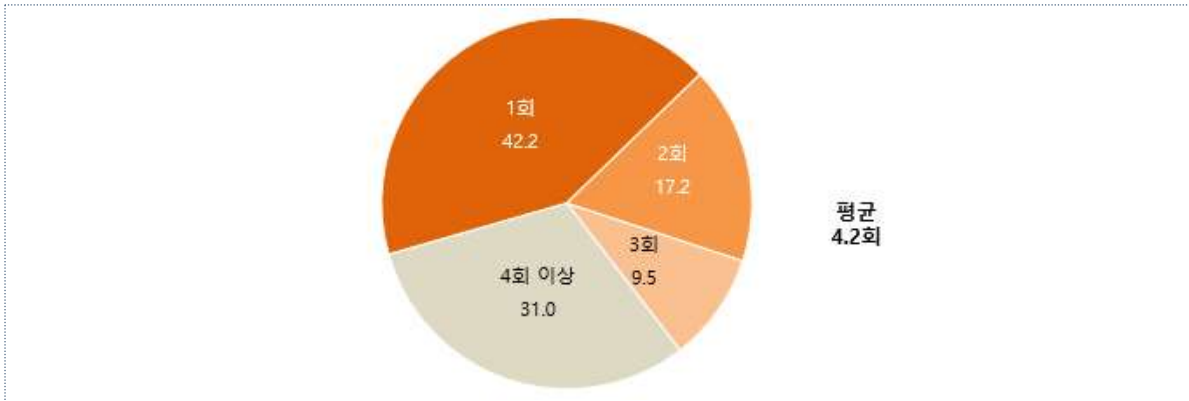
【표 3-8】 시안 경쟁 PT 참가에 대한 리젝트 피 미지급 피해 경험률

(base: 전체, n=1,000, 단위: %)

구분		사례 수	피해 경험 있다	피해 경험 없다
전체		(1,000)	11.6	88.4
주요 생산 및 서비스 품목	제품	(173)	7.5	92.5
	시각	(314)	13.7	86.3
	환경	(199)	10.6	89.4
	패키지	(39)	23.1	76.9
	멀티미디어	(122)	8.2	91.8
	서비스	(53)	3.8	96.2
	종합	(83)	20.5	79.5
	기타	(17)	5.9	94.1
종사자 규모	5명 이하	(489)	11.9	88.1
	6~10명	(238)	13.0	87.0
	11~20명	(163)	9.8	90.2
	21명 이상	(110)	10.0	90.0
매출액	3억 원 미만	(357)	9.2	90.8
	3억 원~10억 원 미만	(304)	16.4	83.6
	10억 원 이상	(339)	9.7	90.3
권역	서울/인천/경기	(528)	14.2	85.8
	부산/대구/울산/경상	(211)	8.1	91.9
	광주/전라/제주	(133)	7.5	92.5
	대전/세종/충청/강원	(128)	10.9	89.1

- 피해 경험 횟수는 '1회'(42.2%)가 가장 높았으며, '4회 이상'(31.0%)이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 평균 피해 경험 횟수는 4.2회로 피해 빈도가 높음

【그림 3-27】 시안 경쟁 PT 참가에 대한 리젝트 피 미지급 피해 경험 횟수
(base: 시안 경쟁 PT 참가에 대한 리젝트 피 받지 못한 피해 경험 사업체, n=116,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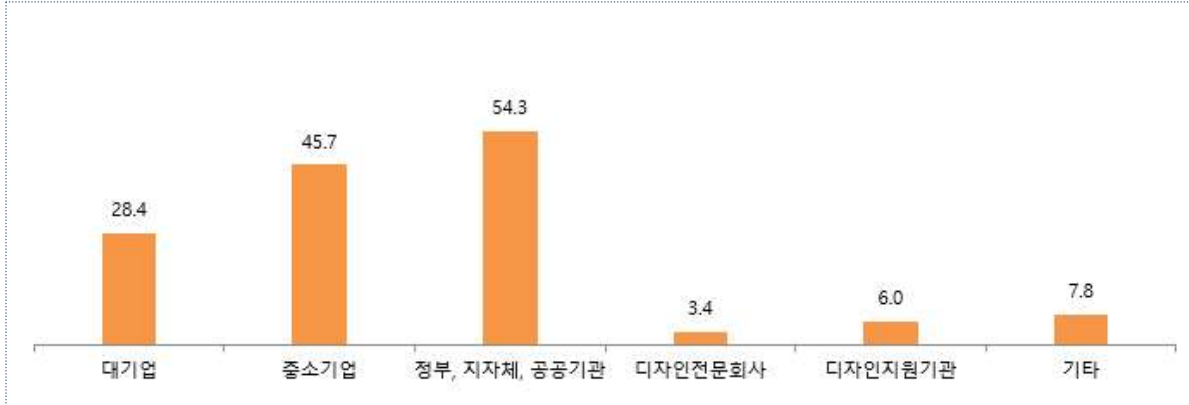
- 피해 비용은 '5백만 원 미만'(38.8%)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5백만 원 이상~1천만 원 미만'(20.7%)과 '1천만 원 이상~2천만 원 미만'(12.1%) 순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3-28】 시안 경쟁 PT 참가에 대한 리젝트 피 미지급 피해 비용
(base: 시안 경쟁 PT 참가에 대한 리젝트 피 받지 못한 피해 경험 사업체, n=116,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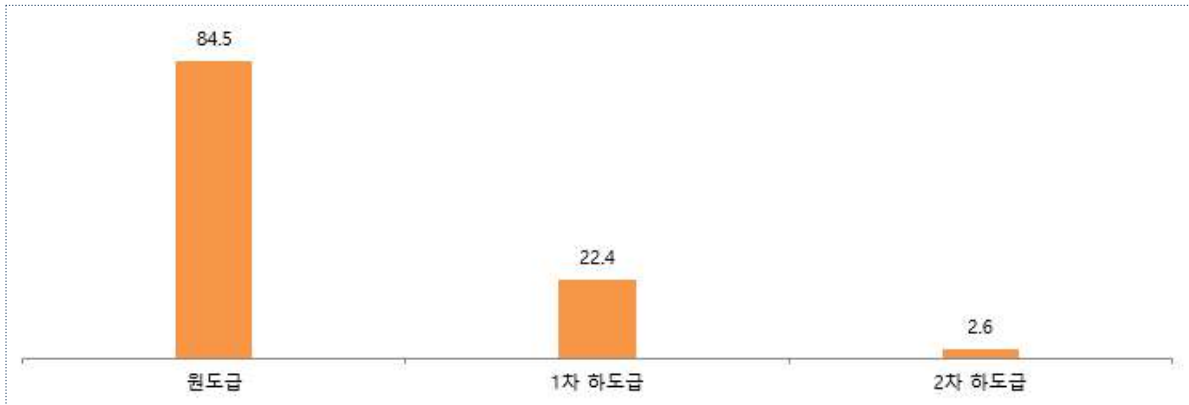
- 분쟁 대상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54.3%)의 비율이 절반 이상이며, '중소기업'(45.7%), '대기업'(28.4%)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3-29】 시안 경쟁 PT 참가에 대한 리젝트 피 미지급 피해 분쟁 대상
 (base: 시안 경쟁 PT 참가에 대한 리젝트 피 받지 못한 피해 경험 사업체, n=116, 단위: %, 중복 응답)



- 하청 유형은 대부분이 '원도급'(84.5%)으로 나타남

【그림 3-30】 시안 경쟁 PT 참가에 대한 리젝트 피 미지급 피해 하청 유형
 (base: 시안 경쟁 PT 참가에 대한 리젝트 피 받지 못한 피해 경험 사업체, n=116, 단위: %, 중복 응답)



□ 계약 후, 무리한 디자인 방향 변경 및 수정 요구

- 계약 후 무리한 디자인개발 방향 변경 및 수정 요구를 경험한 사업체는 전체 사업체 중 15.7%로 국내 피해사례 중 가장 비율이 높음
- 종사자 규모가 작은 업체일수록 피해 경험률이 높고, '서울/인천/경기'(18.8%) 소재 사업체의 피해 경험률이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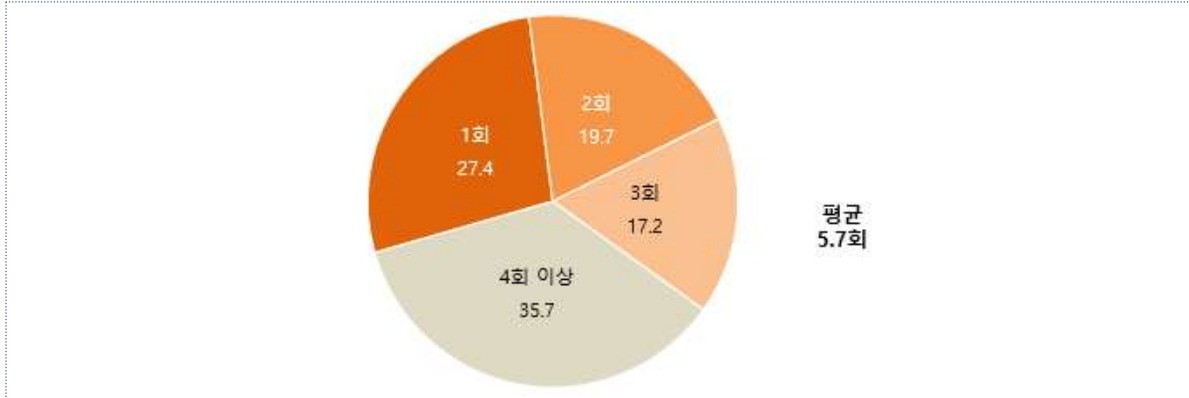
【표 3-9】 계약 후, 무리한 디자인 방향 변경 및 수정 요구 피해 경험률

(base: 전체, n=1,000, 단위: %)

구분		사례 수	피해 경험 있다	피해 경험 없다
전체		(1,000)	15.7	84.3
주요 생산 및 서비스 품목	제품	(173)	11.6	88.4
	시각	(314)	20.4	79.6
	환경	(199)	12.6	87.4
	패키지	(39)	28.2	71.8
	멀티미디어	(122)	13.1	86.9
	서비스	(53)	3.8	96.2
	종합	(83)	20.5	79.5
	기타	(17)	11.8	88.2
종사자 규모	5명 이하	(489)	17.6	82.4
	6~10명	(238)	18.5	81.5
	11~20명	(163)	10.4	89.6
	21명 이상	(110)	9.1	90.9
매출액	3억 원 미만	(357)	14.6	85.4
	3억 원~10억 원 미만	(304)	23.4	76.6
	10억 원 이상	(339)	10.0	90.0
권역	서울/인천/경기	(528)	18.8	81.3
	부산/대구/울산/경상	(211)	12.8	87.2
	광주/전라/제주	(133)	10.5	89.5
	대전/세종/충청/강원	(128)	13.3	8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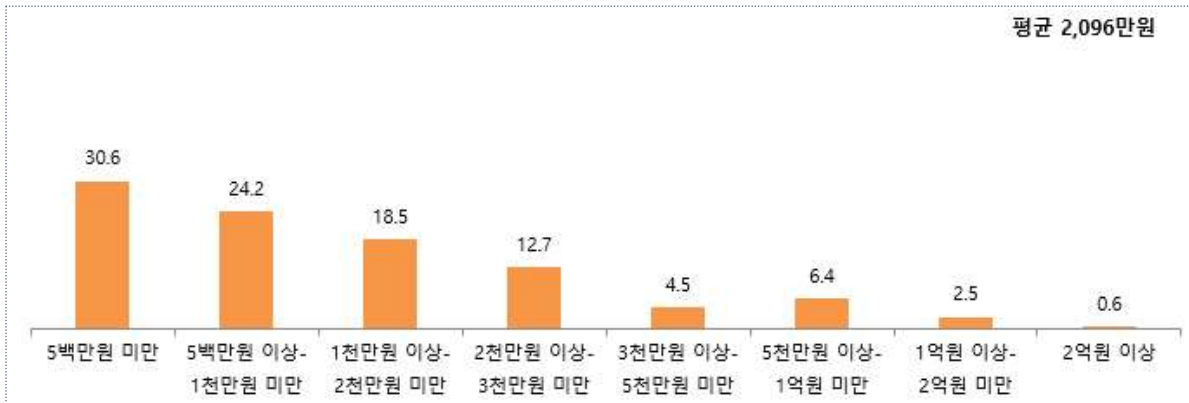
- '4회 이상'(35.7%) 피해를 경험한 사업체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평균 횟수는 5.7회로 다른 피해 유형과 비교하여 빈도가 높게 나타남

【그림 3-31】 계약 후, 무리한 디자인 방향변경 및 수정 요구 피해 경험 횟수
 (base: 계약 후 무리한 디자인개발 방향변경 및 수정작업 요구로 인한 피해 경험 사업체, n=157,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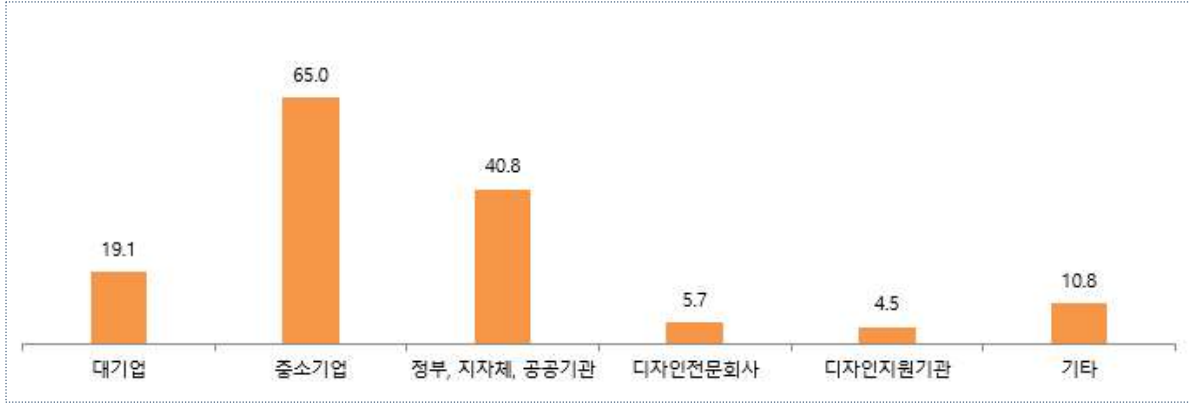
- 피해 비용은 '5백만 원 미만'(30.6%)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피해 비용이 커질수록 피해 경험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

【그림 3-32】 계약 후, 무리한 디자인 방향변경 및 수정 요구 피해 비용
 (base: 계약 후 무리한 디자인개발 방향변경 및 수정작업 요구로 인한 피해 경험 사업체, n=157,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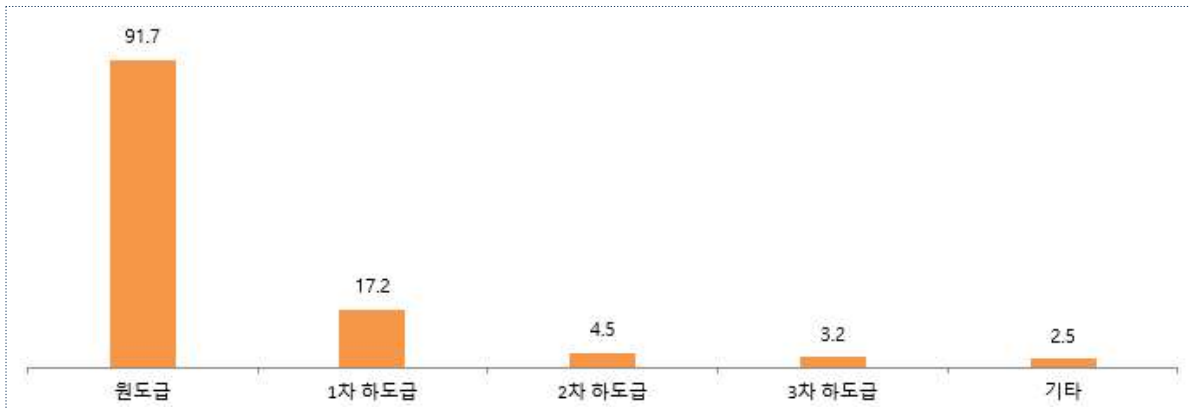
- 분쟁 대상은 '중소기업'(65.0%)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40.8%), '대기업'(19.1%)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3-33】 계약 후, 무리한 디자인 방향변경 및 수정 요구 피해 분쟁 대상
 (base: 계약 후 무리한 디자인개발 방향변경 및 수정작업 요구로 인한 피해 경험 사업체, n=157, 단위: % 중복 응답)



- 하청 유형은 대부분이 '원도급'(91.7%)임

【그림 3-34】 계약 후, 무리한 디자인 방향변경 및 수정 요구 피해 하청 유형
 (base: 계약 후 무리한 디자인개발 방향변경 및 수정작업 요구로 인한 피해 경험 사업체, n=157, 단위: % 중복 응답)



□ 계약과 관계없는 별도 개발 요구

- 계약 내용과 관계없는 별도의 개발을 요구당한 경험이 있는 사업체는 전체 사업체 중 14.3%로 나타남
- 종사자 규모가 10인 이하인 사업체, 매출액 규모가 '3억 원-10억 원 미만'인 사업체의 피해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3-10】 계약과 관계없는 별도 개발 요구 피해 경험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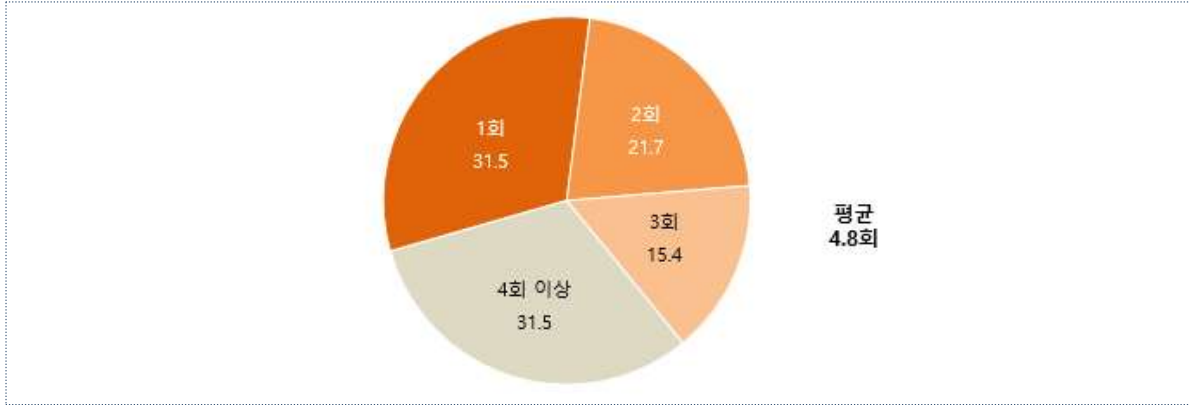
(base: 전체, n=1,000, 단위: %)

구분		사례 수	피해 경험 있다	피해 경험 없다
전체		(1,000)	14.3	85.7
주요 생산 및 서비스 품목	제품	(173)	9.8	90.2
	시각	(314)	19.1	80.9
	환경	(199)	11.1	88.9
	패키지	(39)	23.1	76.9
	멀티미디어	(122)	11.5	88.5
	서비스	(53)	3.8	96.2
	종합	(83)	22.9	77.1
	기타	(17)	0.0	100.0
종사자 규모	5명 이하	(489)	17.4	82.6
	6~10명	(238)	16.0	84.0
	11~20명	(163)	7.4	92.6
	21명 이상	(110)	7.3	92.7
매출액	3억 원 미만	(357)	14.8	85.2
	3억 원~10억 원 미만	(304)	21.1	78.9
	10억 원 이상	(339)	7.7	92.3
권역	서울/인천/경기	(528)	17.0	83.0
	부산/대구/울산/경상	(211)	11.4	88.6
	광주/전라/제주	(133)	8.3	91.7
	대전/세종/충청/강원	(128)	14.1	85.9

- 피해 경험 횟수는 '1회'와 '4회 이상'이 각각 31.5%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 피해 횟수는 4.8회로 나타남

【그림 3-35】 계약과 관계없는 별도 개발 요구 피해 경험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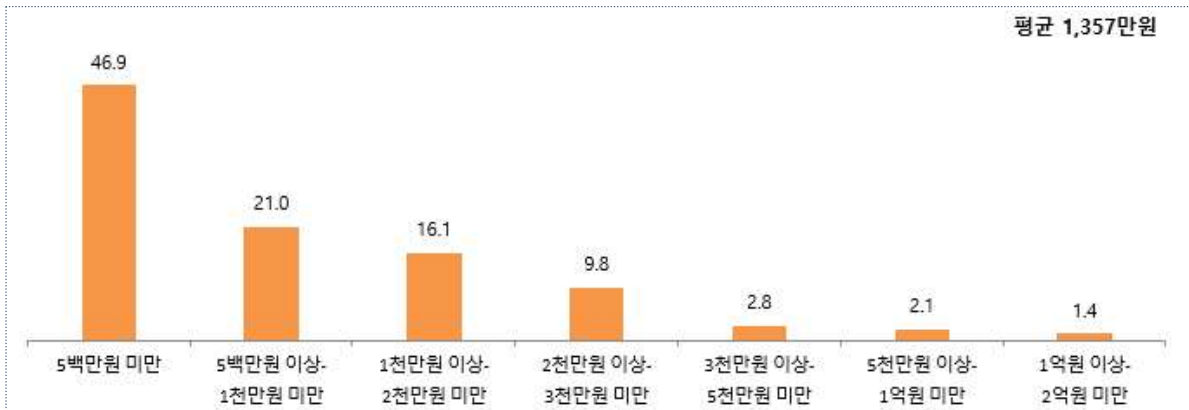
(base: 계약 내용과 상관없는 개발 요구로 인한 피해 경험 사업체, n=143, 단위: %)



- 피해 비용은 '5백만 원 미만'(46.9%), '5백만 원 이상~1천만 원 미만'(21.0%), '1천만 원 이상~2천만 원 미만'(16.1%) 구간이 83.9%로 대부분의 피해 비용이 해당 구간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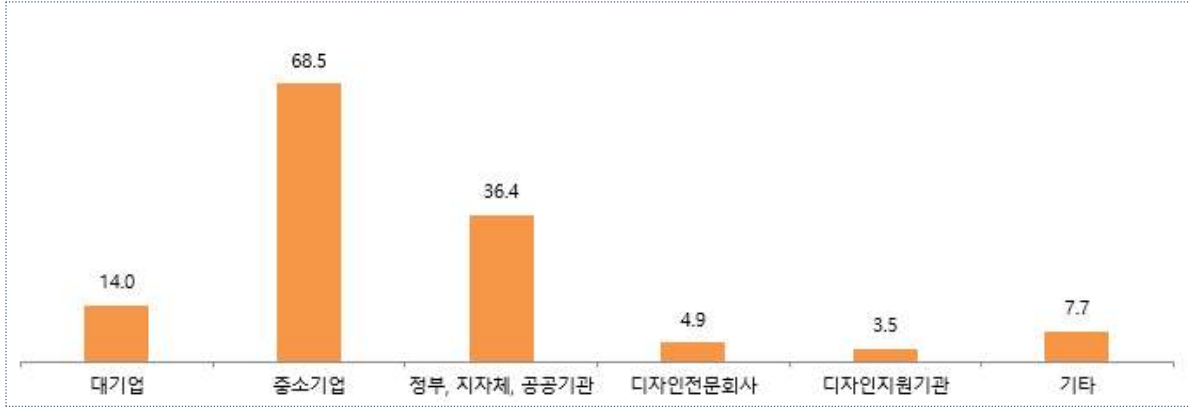
【그림 3-36】 계약과 관계없는 별도 개발 요구 피해 비용

(base: 계약 내용과 상관없는 개발 요구로 인한 피해 경험 사업체, n=143,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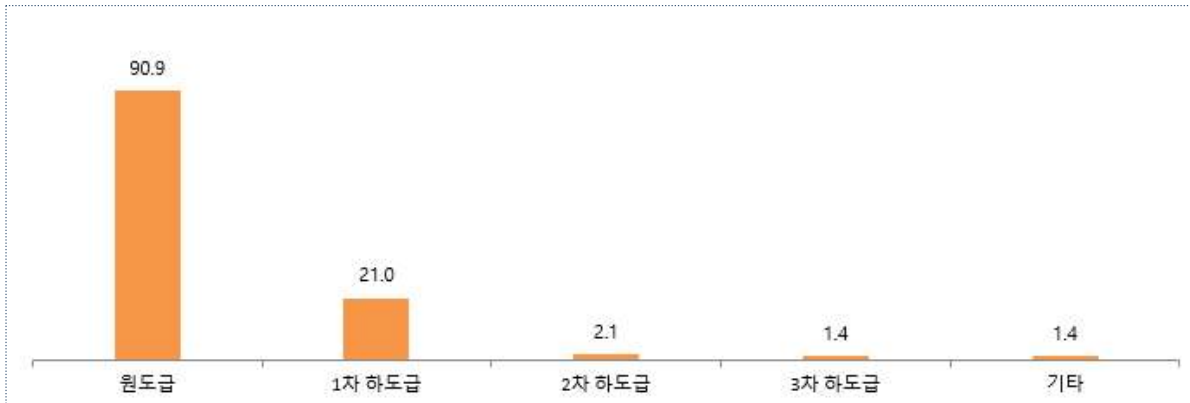
- 분쟁 대상은 '중소기업'(68.5%)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36.4%)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3-37】 계약과 관계없는 별도 개발 요구 피해 분쟁 대상
(base: 계약 내용과 상관없는 개발 요구로 인한 피해 경험 사업체, n=143, 단위: %, 중복 응답)



- 하청 유형은 대부분이 '원도급'(90.9%)으로 나타남

【그림 3-38】 계약과 관계없는 별도 개발 요구 피해 하청 유형
(base: 계약 내용과 상관없는 개발 요구로 인한 피해 경험 사업체, n=143, 단위: %, 중복 응답)



□ 결과물 납품 후, 합리적 근거 없는 추가 요구

- 결과물 납품 완료 후, 결과물에 대해 합리적 근거 없는 추가 요구를 경험한 사업체는 전체 사업체 중 10.1%임
- 종사자 규모가 '5명 이하'(11.5%)인 사업체와 '서울/인천/경기'(12.9%) 소재 사업체에서 피해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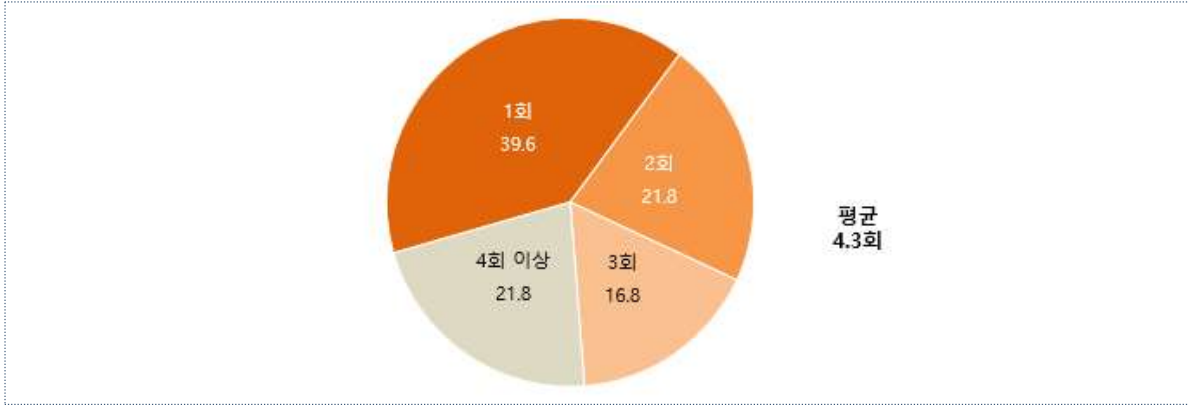
【표 3-11】 결과물 납품 후, 합리적 근거 없는 추가 요구 피해 경험률

(base: 전체, n=1,000, 단위: %)

구분		사례 수	피해 경험 있다	피해 경험 없다
전체		(1,000)	10.1	89.9
주요 생산 및 서비스 품목	제품	(173)	6.9	93.1
	시각	(314)	11.8	88.2
	환경	(199)	8.5	91.5
	패키지	(39)	15.4	84.6
	멀티미디어	(122)	9.0	91.0
	서비스	(53)	3.8	96.2
	종합	(83)	18.1	81.9
	기타	(17)	5.9	94.1
종사자 규모	5명 이하	(489)	11.5	88.5
	6~10명	(238)	9.7	90.3
	11~20명	(163)	7.4	92.6
	21명 이상	(110)	9.1	90.9
매출액	3억 원 미만	(357)	10.4	89.6
	3억 원~10억 원 미만	(304)	13.2	86.8
	10억 원 이상	(339)	7.1	92.9
권역	서울/인천/경기	(528)	12.9	87.1
	부산/대구/울산/경상	(211)	6.2	93.8
	광주/전라/제주	(133)	7.5	92.5
	대전/세종/충청/강원	(128)	7.8	92.2

- 피해 경험 횟수는 '1회'(39.6%)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2회'와 '4회 이상'이 각각 21.8% 순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3-39】 결과물 납품 후, 합리적 근거 없는 추가 요구 피해 경험 횟수
 (base: 결과물 납품 완료 후, 결과물에 대한 추가 요구로 인한 피해 경험 사업체, n=101, 단위: %)



- 피해 비용은 '5백만 원 미만'(41.6%)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피해 금액이 커질수록 피해 경험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

【그림 3-40】 결과물 납품 후, 합리적 근거 없는 추가 요구 피해 비용
 (base: 결과물 납품 완료 후, 결과물에 대한 추가 요구로 인한 피해 경험 사업체, n=101,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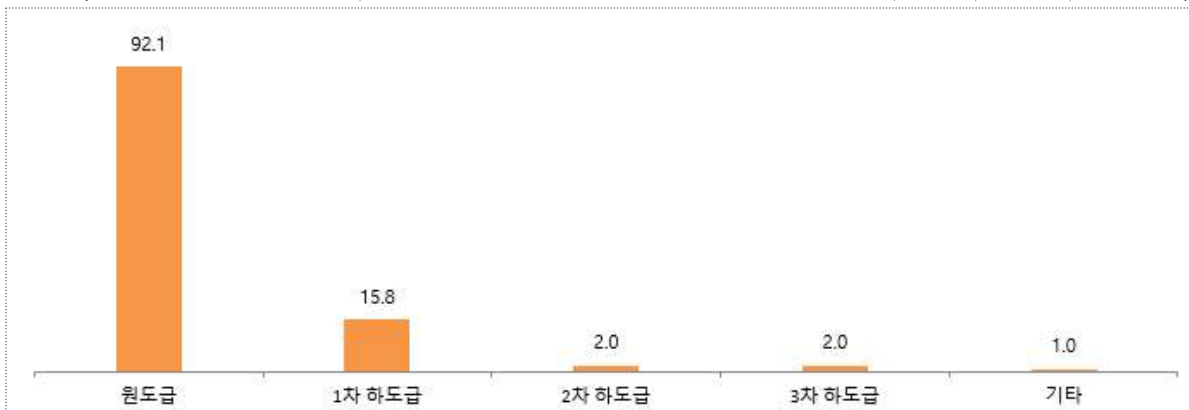
- 분쟁 대상은 '중소기업'(68.3%)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33.7%) 순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3-41】 결과물 납품 후, 합리적 근거 없는 추가 요구 피해 분쟁 대상
(base: 결과물 납품 완료 후, 결과물에 대한 추가 요구로 인한 피해 경험 사업체, n=101, 단위: %, 중복 응답)



- 하청 유형의 대부분은 '원도급'(92.1%)으로 나타남

【그림 3-42】 결과물 납품 후, 합리적 근거 없는 추가 요구 피해 하청 유형
(base: 결과물 납품 완료 후, 결과물에 대한 추가 요구로 인한 피해 경험 사업체, n=101, 단위: %, 중복 응답)



□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 불인정

-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이 불인정 된 경험이 있는 사업체는 전체 사업체 중 11.0%로 나타남
- 종사자 규모가 10인 이하 사업체의 피해 경험률이 높았으며, 매출액 규모는 '3억 원-10억 원 미만'(16.1%), 소재지는 '서울/인천/경기'(14.6%)인 사업체의 피해 경험률이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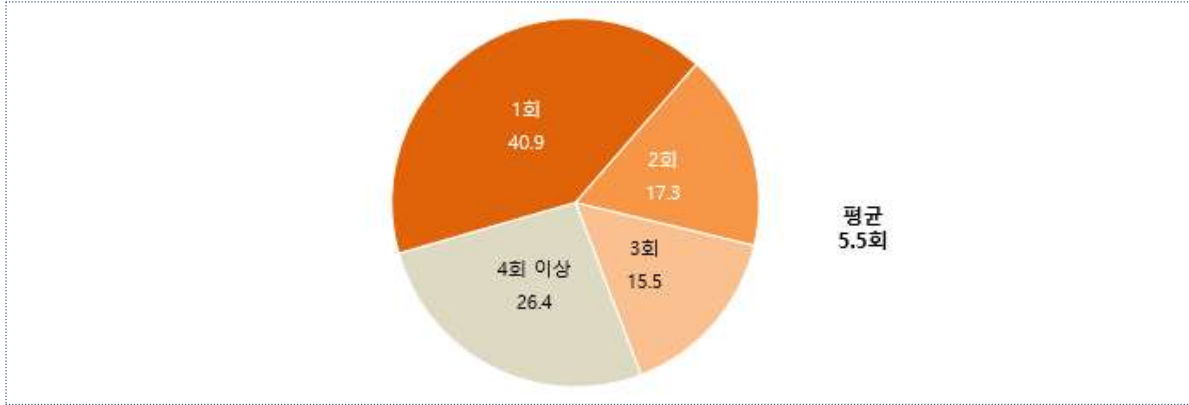
【표 3-12】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 불인정 피해 경험률

(base: 전체, n=1,000, 단위: %)

구분		사례 수	피해 경험 있다	피해 경험 없다
전체		(1,000)	11.0	89.0
주요 생산 및 서비스 품목	제품	(173)	7.5	92.5
	시각	(314)	14.3	85.7
	환경	(199)	8.5	91.5
	패키지	(39)	23.1	76.9
	멀티미디어	(122)	6.6	93.4
	서비스	(53)	1.9	98.1
	종합	(83)	18.1	81.9
	기타	(17)	11.8	88.2
종사자 규모	5명 이하	(489)	12.3	87.7
	6~10명	(238)	11.8	88.2
	11~20명	(163)	8.0	92.0
	21명 이상	(110)	8.2	91.8
매출액	3억 원 미만	(357)	9.8	90.2
	3억 원~10억 원 미만	(304)	16.1	83.9
	10억 원 이상	(339)	7.7	92.3
권역	서울/인천/경기	(528)	14.6	85.4
	부산/대구/울산/경상	(211)	8.1	91.9
	광주/전라/제주	(133)	6.0	94.0
	대전/세종/충청/강원	(128)	6.3	9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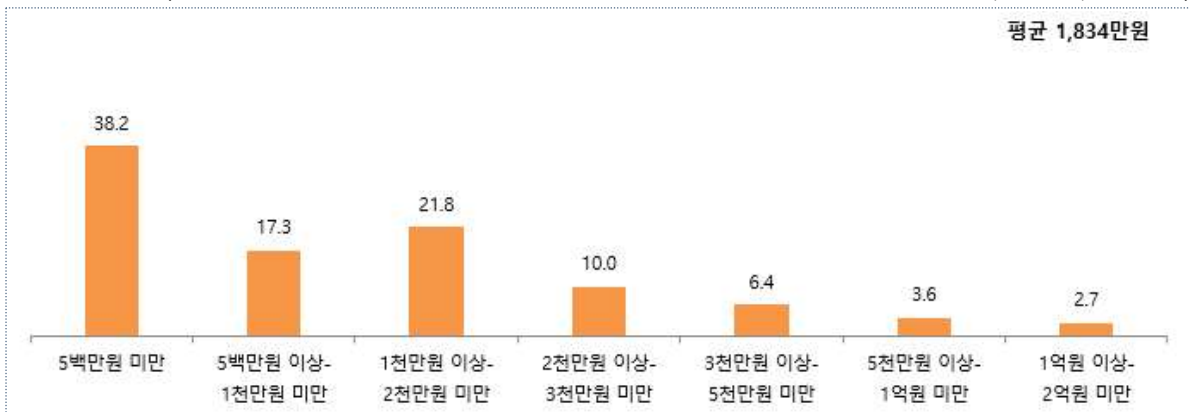
- 피해 경험 횟수는 '1회'(40.9%)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4회 이상'(26.4%)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3-43】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 불인정 피해 경험 횟수
(base: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 불인정으로 인한 피해 경험 사업체, n=11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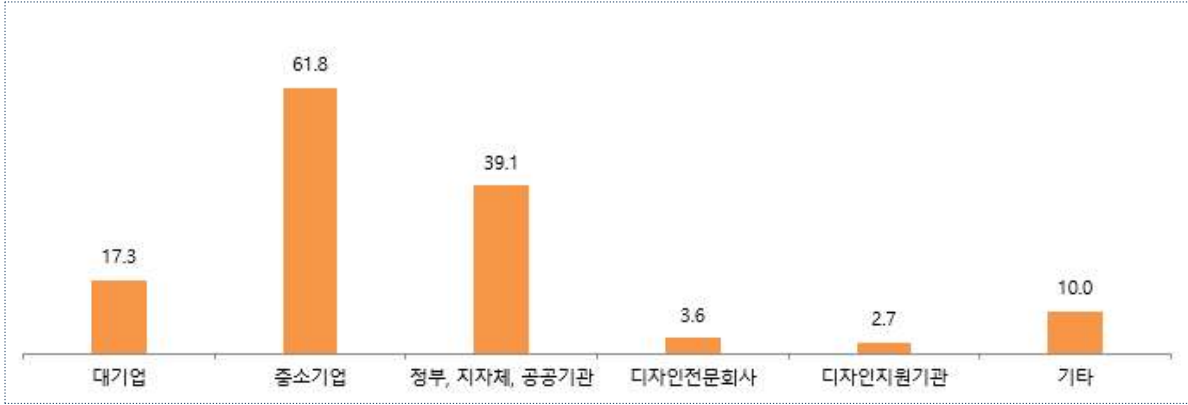
- 피해 비용은 '5백만 원 미만'(38.2%)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천만 원 미만 (55.5%)의 피해를 경험한 사업체가 절반 이상으로 나타남

【그림 3-44】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 불인정 피해 비용
(base: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 불인정으로 인한 피해 경험 사업체, n=11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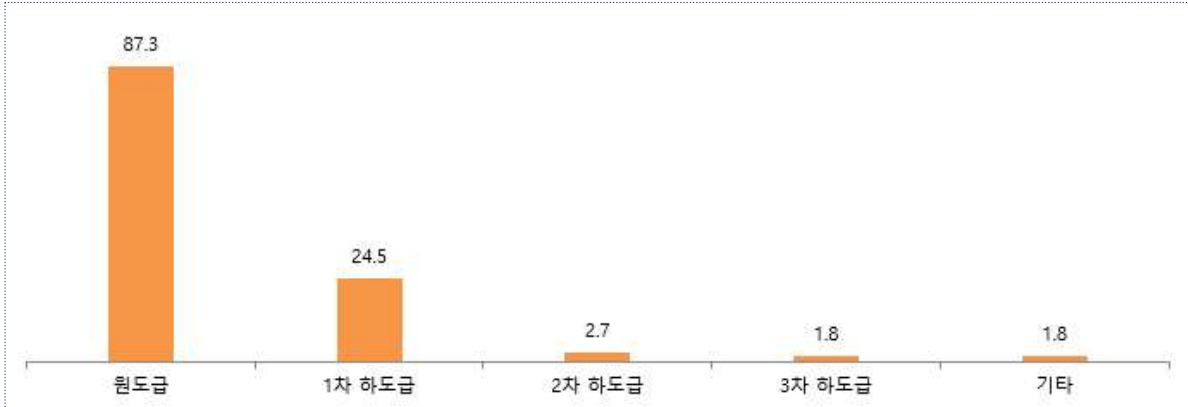
- 분쟁 대상으로 '중소기업'(61.8%)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39.1%), '대기업'(17.3%)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림 3-45】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 불인정 피해 분쟁 대상
(base: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 불인정으로 인한 피해 경험 사업체, n=110, 단위: %, 중복 응답)



- 하청 유형은 '원도급'(87.3%)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림 3-46】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 불인정 피해 하청 유형
(base: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 불인정으로 인한 피해 경험 사업체, n=110, 단위: %, 중복 응답)



3.2 지식재산권 관련 피해 유형

□ 총괄

- 2021년 지식재산권 관련 피해를 경험한 사업체는 10.9%로 나타남
- 세부 피해 사례별로는 '경쟁 PT 제출 시안 본인 사용 허락 없이 무단 도용'이 6.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계약 조항 외 모든 지식재산권 양도 강요' (6.0%)가 높게 나타남

【표 3-13】 지식재산권 관련 피해 사례 경험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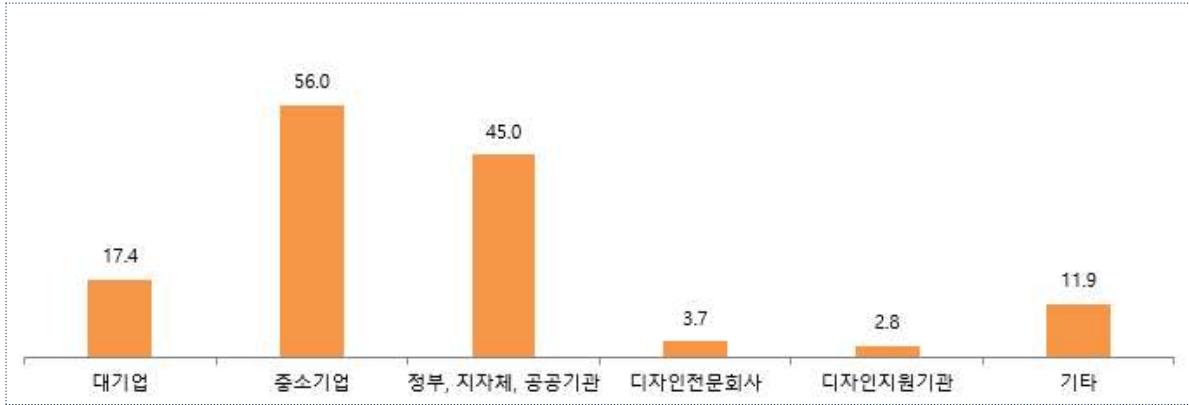
(base: 전체, n=1,000, 단위: %)

유형	세부 사례	경험률
	지식재산권 관련 피해 전체	10.9
지식 재산권 관련	책임한도 벗어난 지식재산권 저촉 문제로 배상 요구	2.2
	경쟁 PT 제출 시안 본인 사용 허락 없이 무단 도용	6.2
	계약 조항 외 모든 지식재산권 양도 강요	6.0
	디자인 시안 무단 도용 제작 또는 판매	5.2

- 지식재산권 관련 피해의 주요 분쟁 대상은 '중소기업'(56.0%)과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45.0%)임

【그림 3-47】 지식재산권 피해 분쟁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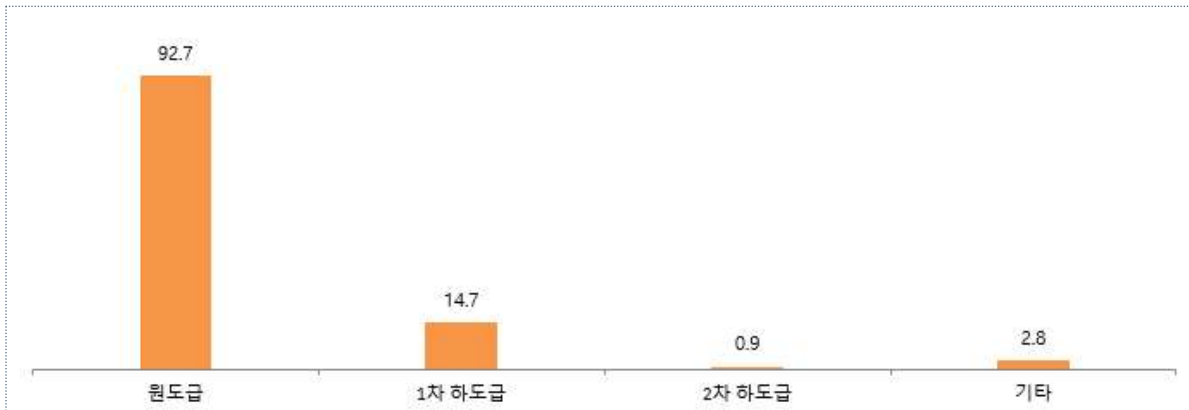
(base: 지식재산권 피해 경험 사업체, n=109, 단위: %, 중복 응답)



- 지식재산권 관련 피해를 경험한 사업체의 하청 유형은 대부분 '원도급'(92.7%)임

【그림 3-48】 지식재산권 피해 하청 유형

(base: 지식재산권 피해 경험 사업체, n=109, 단위: %, 중복 응답)



□ 책임한도 벗어난 지식재산권 저촉 문제로 배상 요구

- 계약에서 규정한 책임한도를 벗어난 지식재산권 저촉 문제를 이유로 배상을 요구당한 경험이 있는 사업체는 전체 사업체 중 2.2%로 나타남
- 주요 생산 및 서비스 품목 가운데 '패키지'의 피해 경험 비율이 5.1%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서울/경기/인천'(3.2%)에 소재한 사업체의 피해 경험률이 타 권역 대비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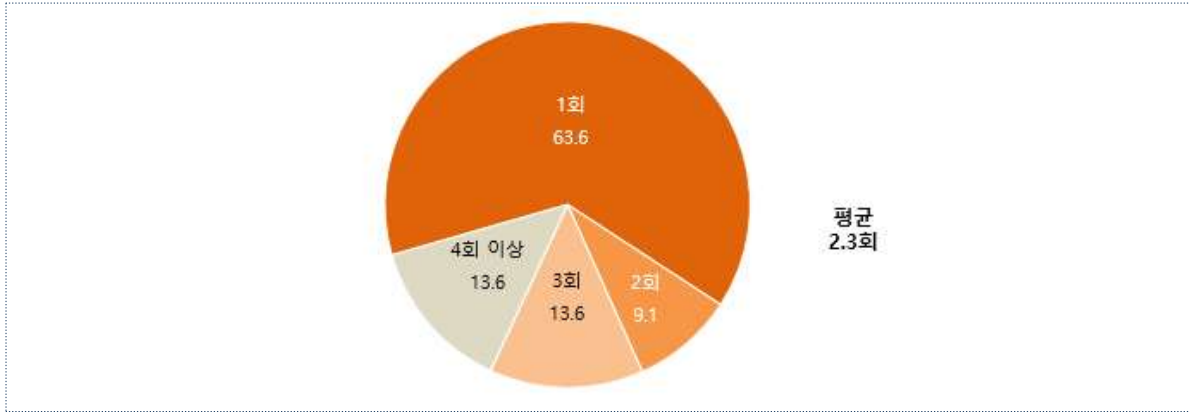
【표 3-14】 책임한도 벗어난 지식재산권 저촉 문제로 배상 요구 피해 경험률

(base: 전체, n=1,000, 단위: %)

구분		사례 수	피해 경험 있다	피해 경험 없다
전체		(1,000)	2.2	97.8
주요 생산 및 서비스 품목	제품	(173)	1.2	98.8
	시각	(314)	4.5	95.5
	환경	(199)	1.0	99.0
	패키지	(39)	5.1	94.9
	멀티미디어	(122)	0.8	99.2
	서비스	(53)	0.0	100.0
	종합	(83)	1.2	98.8
	기타	(17)	0.0	100.0
종사자 규모	5명 이하	(489)	2.5	97.5
	6~10명	(238)	2.5	97.5
	11~20명	(163)	0.0	100.0
	21명 이상	(110)	3.6	96.4
매출액	3억 원 미만	(357)	1.4	98.6
	3억 원~10억 원 미만	(304)	3.9	96.1
	10억 원 이상	(339)	1.5	98.5
권역	서울/인천/경기	(528)	3.2	96.8
	부산/대구/울산/경상	(211)	0.9	99.1
	광주/전라/제주	(133)	0.8	99.2
	대전/세종/충청/강원	(128)	1.6	9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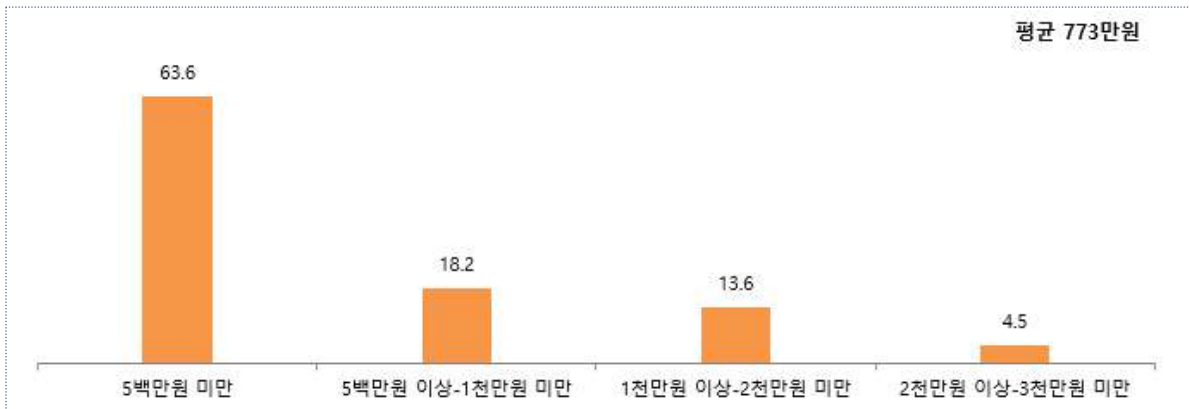
- 피해 경험 횟수는 '1회'(63.6%)가 가장 높고, 절반 이상의 비율을 차지함

【그림 3-49】 책임한도 벗어난 지식재산권 저촉 문제로 배상 요구 피해 경험 횟수
(base: 계약규정 외 지식재산권 저촉 문제로 배상 요구당한 경험 사업체, n=22,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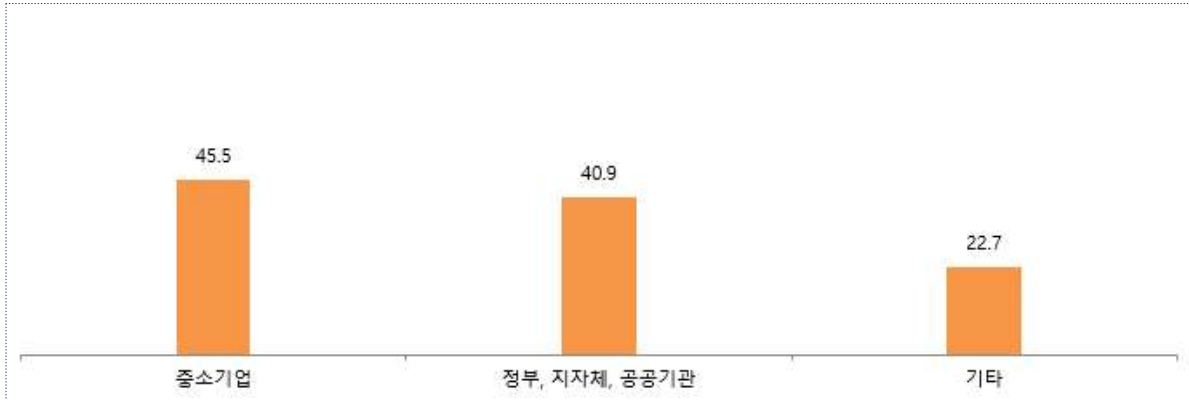
- 피해 비용은 '5백만 원 미만'(63.6%)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피해를 경험한 사업체의 절반 이상이 이 구간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50】 책임한도 벗어난 지식재산권 저촉 문제로 배상 요구 피해 비용
(base: 계약규정 외 지식재산권 저촉 문제로 배상 요구당한 경험 사업체, n=22,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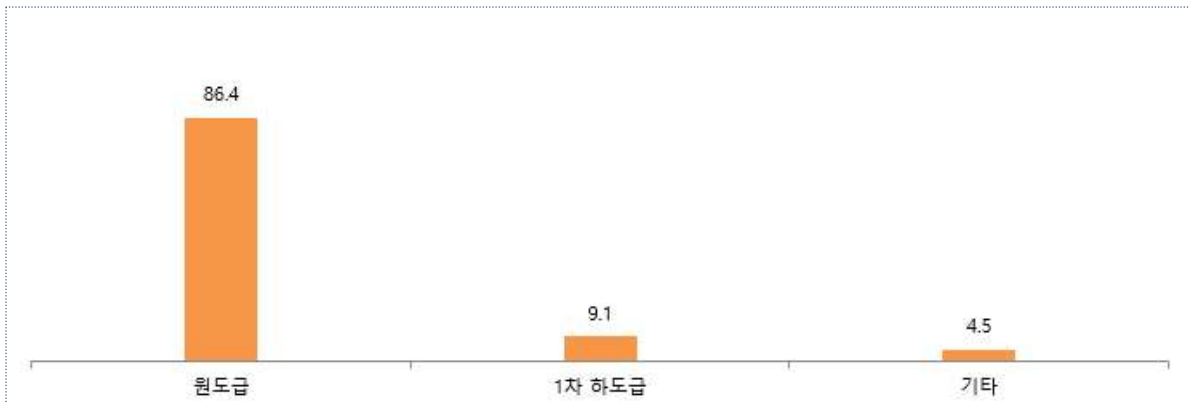
- 주요 분쟁 대상은 '중소기업'(45.5%),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40.9%) 등으로 나타남

【그림 3-51】 책임한도 벗어난 지식재산권 저촉 문제로 배상 요구 피해 분쟁 대상
(base: 계약규정 외 지식재산권 저촉 문제로 배상 요구당한 경험 사업체, n=22, 단위: %, 중복 응답)



- 하청 유형은 '원도급'(86.4%)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1차 하도급'(9.1%)이 높게 나타남

【그림 3-52】 책임한도 벗어난 지식재산권 저촉 문제로 배상 요구 피해 하청 유형
(base: 계약규정 외 지식재산권 저촉 문제로 배상 요구당한 경험 사업체, n=22, 단위: %, 중복 응답)



□ 경쟁 PT 제출 시안 본인 사용 허락 없이 무단 도용

- 경쟁 입찰에 참가하여 제출한 시안을 무단으로 도용당한 경험이 있는 사업체는 전체 사업체 중 6.2%로 나타남
- 종사자 규모가 '6-10명'(8.4%), 매출액이 '3억 원-10억 원 미만'(10.2%) 사업체의 피해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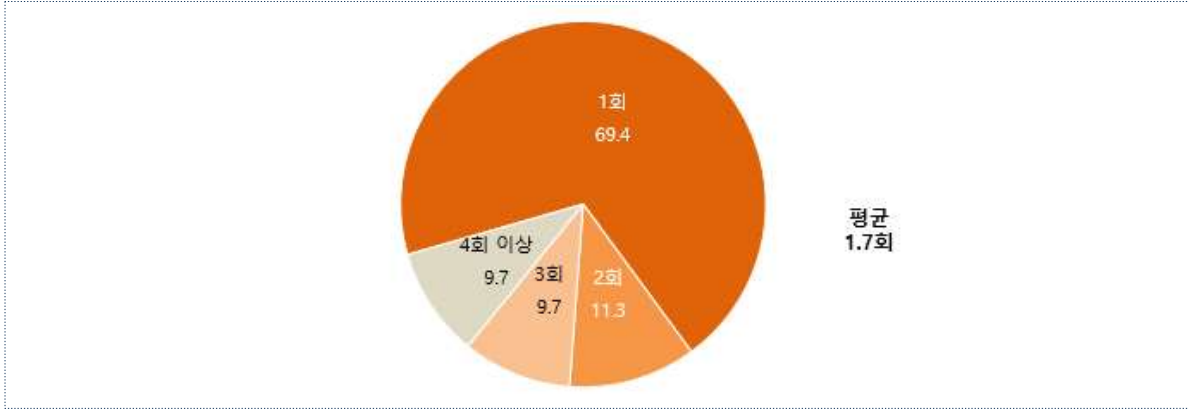
【표 3-15】 경쟁 PT 제출 시안 본인 사용 허락 없이 무단 도용 피해 경험률

(base: 전체, n=1,000, 단위: %)

구분		사례 수	피해 경험 있다	피해 경험 없다
전체		(1,000)	6.2	93.8
주요 생산 및 서비스 품목	제품	(173)	2.3	97.7
	시각	(314)	8.0	92.0
	환경	(199)	6.5	93.5
	패키지	(39)	15.4	84.6
	멀티미디어	(122)	3.3	96.7
	서비스	(53)	0.0	100.0
	종합	(83)	10.8	89.2
	기타	(17)	5.9	94.1
종사자 규모	5명 이하	(489)	6.7	93.3
	6~10명	(238)	8.4	91.6
	11~20명	(163)	3.1	96.9
	21명 이상	(110)	3.6	96.4
매출액	3억 원 미만	(357)	3.9	96.1
	3억 원~10억 원 미만	(304)	10.2	89.8
	10억 원 이상	(339)	5.0	95.0
권역	서울/인천/경기	(528)	8.1	91.9
	부산/대구/울산/경상	(211)	4.3	95.7
	광주/전라/제주	(133)	3.8	96.2
	대전/세종/충청/강원	(128)	3.9	96.1

- 피해 경험 횟수는 '1회'(69.4%)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피해 업체가 2회 이하(80.6%)의 피해를 경험함

【그림 3-53】 경쟁 PT 제출 시안 본인 사용 허락 없이 무단 도용 피해 경험 횟수
(base: 경쟁 입찰 참여에 제출한 시안 무단 도용당한 경험 사업체, n=62,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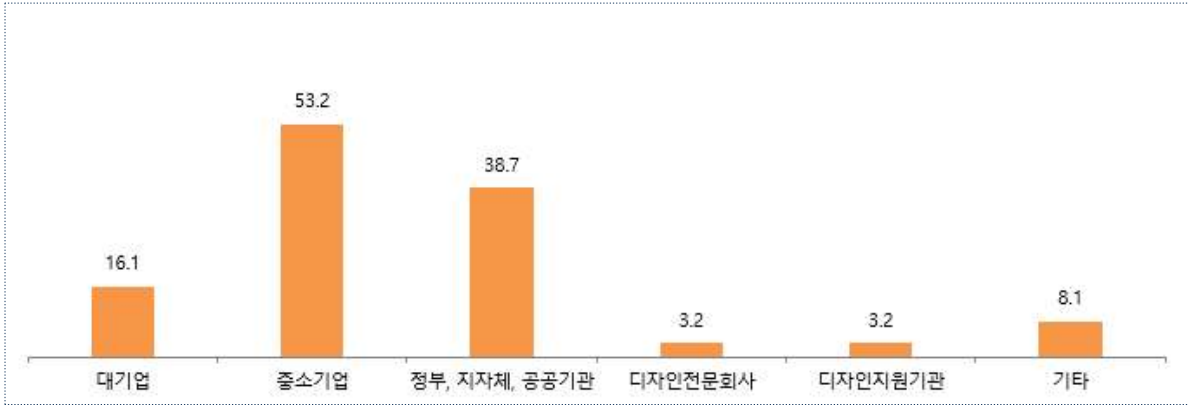
- 피해 비용은 '5백만 원 미만'(24.2%)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피해 사업체의 대부분이 5천만 원 미만(95.2%)의 피해 비용 구간에 속함

【그림 3-54】 경쟁 PT 제출 시안 본인 사용 허락 없이 무단 도용 피해 비용
(base: 경쟁 입찰 참여에 제출한 시안 무단 도용당한 경험 사업체, n=62,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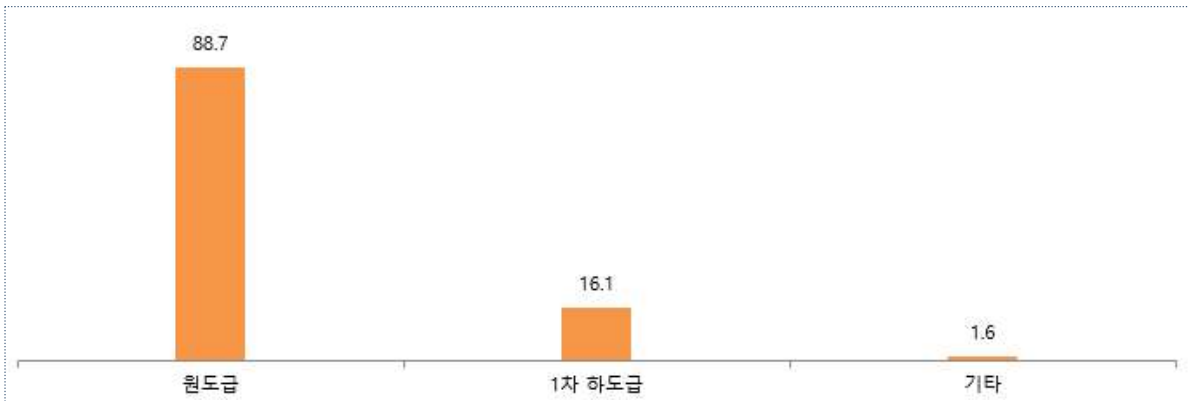
- 분쟁 대상으로는 '중소기업'(53.2%)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38.7%), '대기업'(16.1%)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3-55】 경쟁 PT 제출 시안 본인 사용 허락 없이 무단 도용 피해 분쟁 대상
(base: 경쟁 입찰 참여에 제출한 시안 무단 도용당한 경험 사업체, n=62, 단위: %, 중복 응답)



- 하청 유형은 주로 '원도급'(88.7%)임

【그림 3-56】 경쟁 PT 제출 시안 본인 사용 허락 없이 무단 도용 피해 하청 유형
(base: 경쟁 입찰 참여에 제출한 시안 무단 도용당한 경험 사업체, n=62, 단위: %, 중복 응답)



□ 계약 조항 외 모든 지식재산권 양도 강요

- 계약 조항 외 디자인 개발에 따른 모든 지식재산권 양도를 강요당한 경험이 있는 사업체는 전체 사업체 중 6.0%로 나타남
- 매출액이 '3억 원-10억 원 미만'(9.9%) 사업체의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서울/경기/인천'(7.2%), '대전/세종/충청/강원'(6.3%)에 소재한 사업체의 피해 경험률이 타 권역 대비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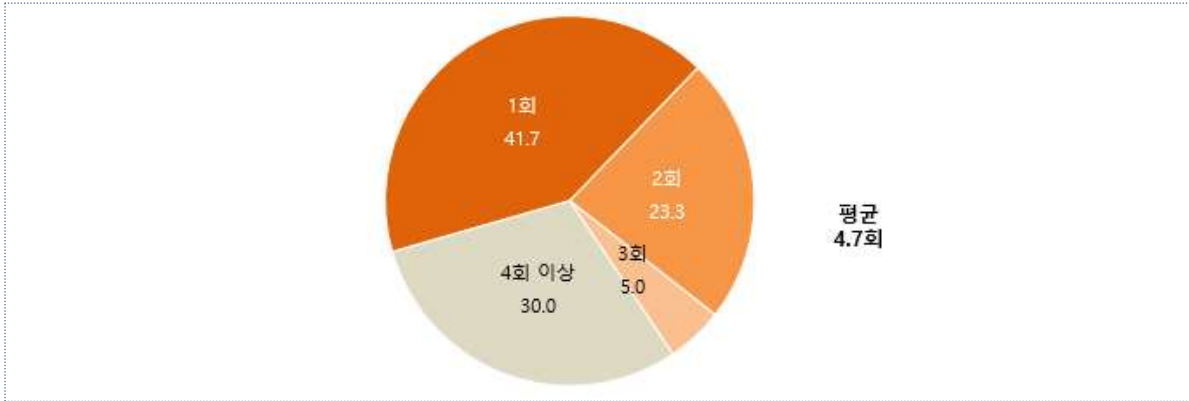
【표 3-16】 계약 조항 외 모든 지식재산권 양도 강요 피해 경험률

(base: 전체, n=1,000, 단위: %)

구분		사례 수	피해 경험 있다	피해 경험 없다
전체		(1,000)	6.0	94.0
주요 생산 및 서비스 품목	제품	(173)	3.5	96.5
	시각	(314)	7.0	93.0
	환경	(199)	4.0	96.0
	패키지	(39)	15.4	84.6
	멀티미디어	(122)	1.6	98.4
	서비스	(53)	1.9	98.1
	종합	(83)	18.1	81.9
	기타	(17)	0.0	100.0
종사자 규모	5명 이하	(489)	6.1	93.9
	6~10명	(238)	8.8	91.2
	11~20명	(163)	2.5	97.5
	21명 이상	(110)	4.5	95.5
매출액	3억 원 미만	(357)	4.2	95.8
	3억 원~10억 원 미만	(304)	9.9	90.1
	10억 원 이상	(339)	4.4	95.6
권역	서울/인천/경기	(528)	7.2	92.8
	부산/대구/울산/경상	(211)	4.3	95.7
	광주/전라/제주	(133)	3.8	96.2
	대전/세종/충청/강원	(128)	6.3	9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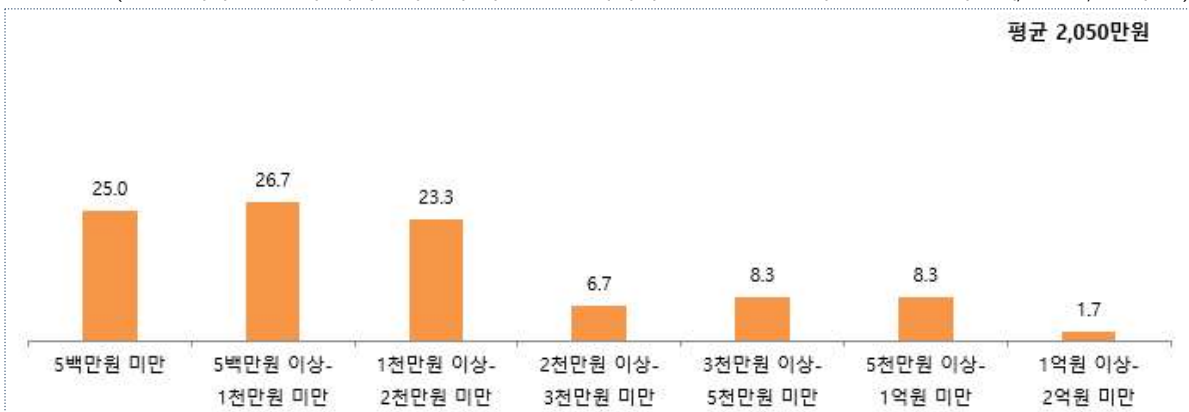
- 피해 경험 횟수는 '1회'(41.7%)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4회 이상'(30.0%)이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 피해 경험은 4.7회임

【그림 3-57】 계약 조항 외 모든 지식재산권 양도 강요 피해 경험 횟수
(base: 계약 조항 외 디자인개발에 따른 모든 지식재산권 양도를 요구당한 경험 사업체, n=6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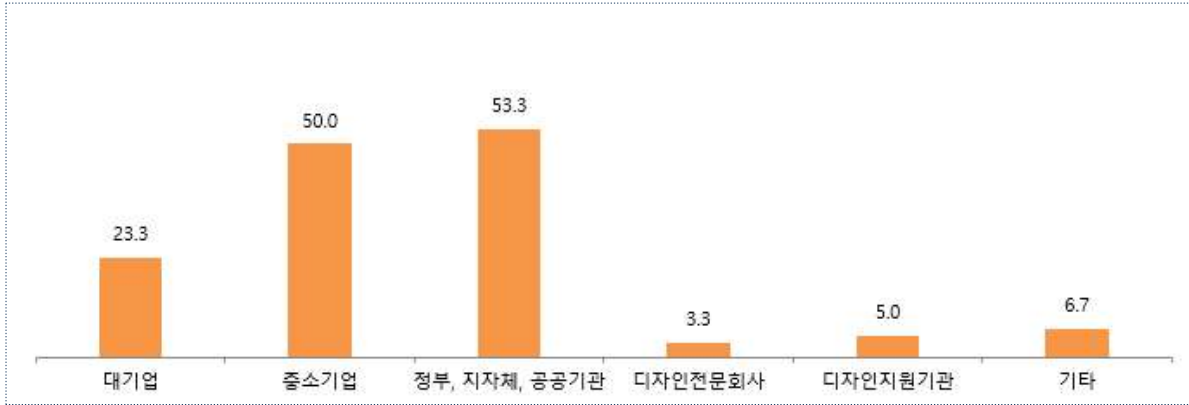
- 피해 비용은 '5백만 원 이상-1천만 원 미만'(26.7%)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천만 원 미만의 피해 비용을 가진 사업체가 절반 이상으로 나타남

【그림 3-58】 계약 조항 외 모든 지식재산권 양도 강요 피해 비용
(base: 계약 조항 외 디자인개발에 따른 모든 지식재산권 양도를 요구당한 경험 사업체, n=6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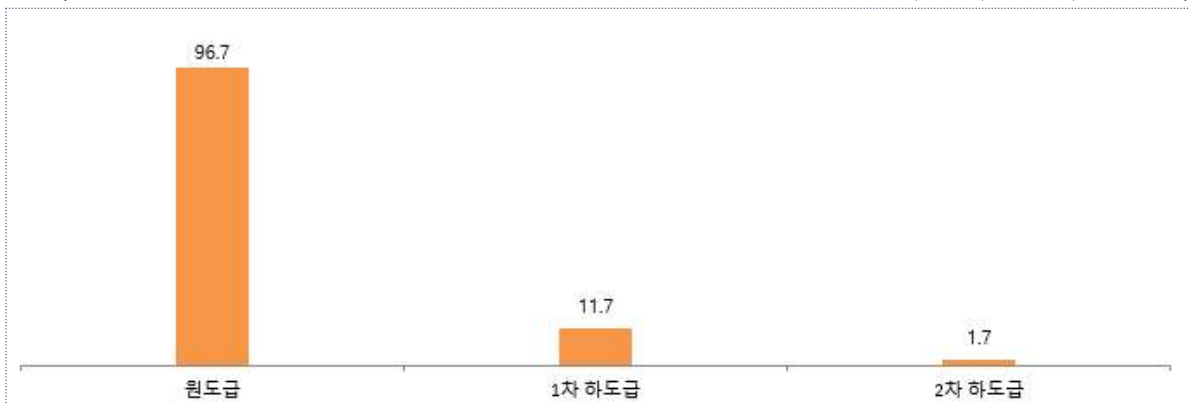
- 주요 분쟁 대상으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53.3%)과 '중소기업'(50.0%)으로 나타남

【그림 3-59】 계약 조항 외 모든 지식재산권 양도 강요 피해 분쟁 대상
 (base: 계약 조항 외 디자인개발에 따른 모든 지식재산권 양도를 요구당한 경험 사업체, n=60, 단위: % 중복 응답)



- 하청 유형은 '원도급'(96.7%) 대부분이며, '1차 하도급'은 11.7%임

【그림 3-60】 계약 조항 외 모든 지식재산권 양도 강요 피해 하청 유형
 (base: 계약 조항 외 디자인개발에 따른 모든 지식재산권 양도를 요구당한 경험 사업체, n=60, 단위: % 중복 응답)



□ 디자인 시안 무단 도용 제작 또는 판매

- 디자인 시안을 무단으로 도용 제작 또는 판매된 경험이 있는 사업체는 전체 사업체 중 5.2%임
- 종사자 규모가 작은 업체일수록 피해 경험률이 높고, '서울/경기/인천'(6.3%) 소재 사업체의 피해 경험률이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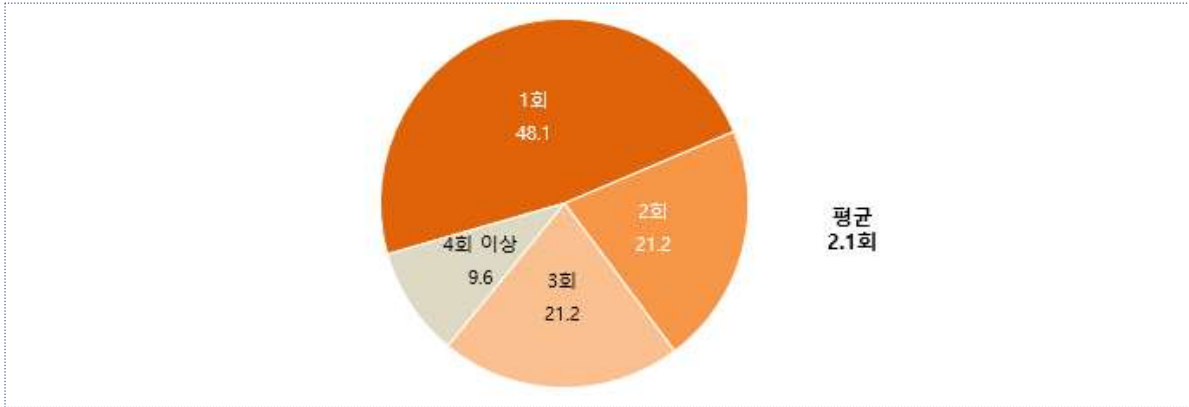
【표 3-17】 디자인 시안 무단 도용 제작 또는 판매 피해 경험률

(base: 전체, n=1,000, 단위: %)

구분		사례 수	피해 경험 있다	피해 경험 없다
전체		(1,000)	5.2	94.8
주요 생산 및 서비스 품목	제품	(173)	2.3	97.7
	시각	(314)	7.6	92.4
	환경	(199)	4.0	96.0
	패키지	(39)	15.4	84.6
	멀티미디어	(122)	0.8	99.2
	서비스	(53)	0.0	100.0
	종합	(83)	10.8	89.2
	기타	(17)	0.0	100.0
종사자 규모	5명 이하	(489)	6.5	93.5
	6~10명	(238)	6.7	93.3
	11~20명	(163)	1.2	98.8
	21명 이상	(110)	1.8	98.2
매출액	3억 원 미만	(357)	4.8	95.2
	3억 원~10억 원 미만	(304)	8.2	91.8
	10억 원 이상	(339)	2.9	97.1
권역	서울/인천/경기	(528)	6.3	93.8
	부산/대구/울산/경상	(211)	4.7	95.3
	광주/전라/제주	(133)	3.0	97.0
	대전/세종/충청/강원	(128)	3.9	96.1

- 피해 경험 횟수는 '1회'(48.1%)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2회'와 '3회'가 각각 21.2% 높게 나타남. 피해 경험 사업체 90% 이상은 3회 이하의 피해를 경험함

【그림 3-61】 디자인 시안 무단 도용 제작 또는 판매 피해 경험 횟수
 (base: 계약없이 디자인 시안 무단 도용 제작 또는 판매 피해 경험 사업체, n=52,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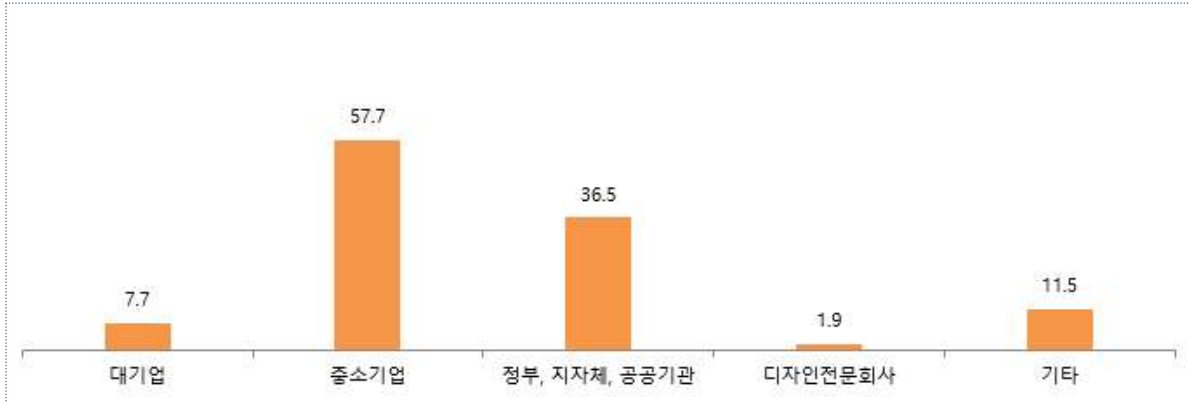
- 피해 비용은 '5백만 원 미만'(38.5%)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피해 금액이 커질수록 경험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

【그림 3-62】 디자인 시안 무단 도용 제작 또는 판매 피해 비용
 (base: 계약 없이 디자인 시안 무단 도용 제작 또는 판매 피해 경험 사업체, n=52,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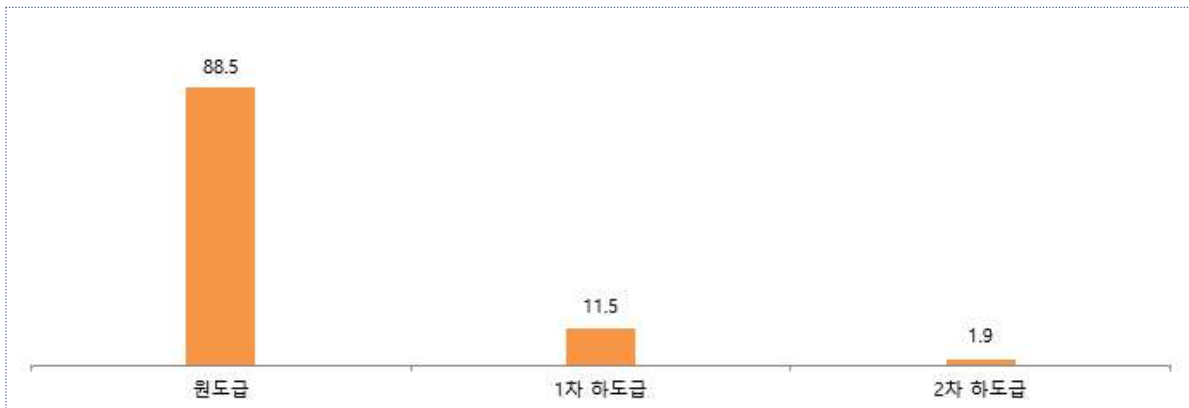
- 분쟁 대상으로 '중소기업'(57.7%)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36.5%)이 높음

【그림 3-63】 디자인 시안 무단 도용 제작 또는 판매 피해 분쟁 대상
 (base: 계약 없이 디자인 시안 무단 도용 제작 또는 판매 피해 경험 사업체, n=52, 단위: %, 중복 응답)



- 하청 유형은 '원도급'(88.5%)이 대부분으로 나타남

【그림 3-64】 디자인 시안 무단 도용 제작 또는 판매 피해 하청 유형
 (base: 계약 없이 디자인 시안 무단 도용 제작 또는 판매 피해 경험 사업체, n=48, 단위: %, 중복 응답)



3.3 기타 피해 유형

- 기타 피해를 경험한 사업체는 전체 사업체의 1.3%임
- 기타 사례로 '협의한 기준을 넘어선 요구에 몇 번의 대응 후 일방 취소 요청'(0.2%)한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으나, 응답자 특성별 차이는 드러나지 않음

【표 3-18】 기타 피해 사례 경험률

(base: 전체, n=1,000, 단위: %)

유형	세부 사례	피해 경험률
	기타 피해 전체	1.3
기타 피해	협의한 기준을 넘어선 요구에 몇 번의 대응 후 일방 취소 요청	0.2
	다른 업체로 일을 전부 일임하면서, 대금 미지급함	0.1
	제안 PT진행 후 불합리한 조건으로 경쟁에서 누락	0.1
	충분치 않은 프로젝트 비용에 모든 지식재산권의 양도를 계약 강제조항으로 요구	0.1
	자부담 백페이 요청	0.1
	계약 및 기성금지급 지연	0.1
	계약진행시 무리한 단가 경쟁 요구	0.1
	디자인 비용은 서비스로 생각함	0.1
	제안단계에서 무리한 시안 요구	0.1

【표 3-19】 기타 피해 경험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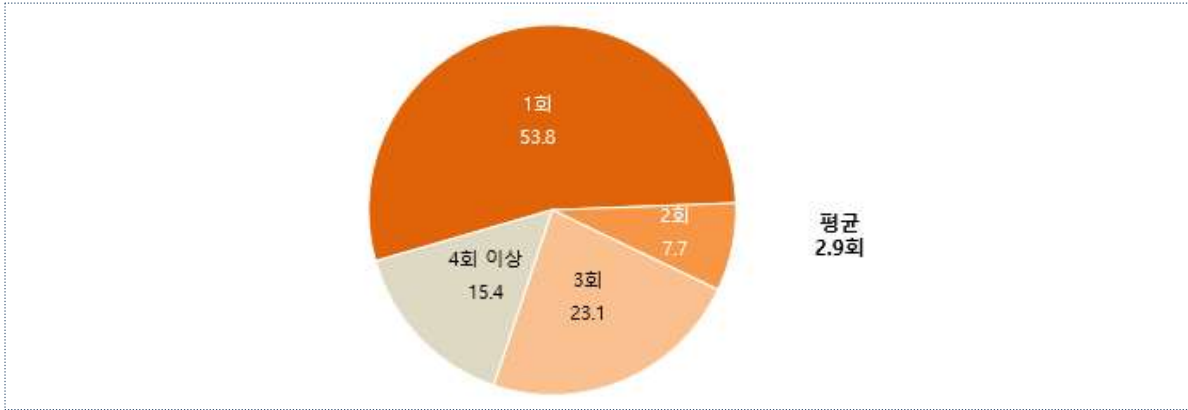
(base: 전체, n=1,000, 단위: %)

구분		사례 수	피해 경험 있다	피해 경험 없다
전체		(1,000)	1.3	98.7
주요 생산 및 서비스 품목	제품	(173)	0.0	100.0
	시각	(314)	1.6	98.4
	환경	(199)	0.5	99.5
	패키지	(39)	0.0	100.0
	멀티미디어	(122)	2.5	97.5
	서비스	(53)	1.9	98.1
	종합	(83)	2.4	97.6
	기타	(17)	5.9	94.1
종사자 규모	5명 이하	(489)	1.0	99.0
	6~10명	(238)	0.8	99.2
	11~20명	(163)	2.5	97.5
	21명 이상	(110)	1.8	98.2
매출액	3억 원 미만	(357)	0.8	99.2
	3억 원~10억 원 미만	(304)	1.6	98.4
	10억 원 이상	(339)	1.5	98.5
권역	서울/인천/경기	(528)	1.3	98.7
	부산/대구/울산/경상	(211)	0.5	99.5
	광주/전라/제주	(133)	0.8	99.2
	대전/세종/충청/강원	(128)	3.1	96.9

- 피해 경험 횟수는 '1회'(53.8%)가 가장 높고, 피해 경험 사업체의 절반 이상이 1회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65】 기타 피해 경험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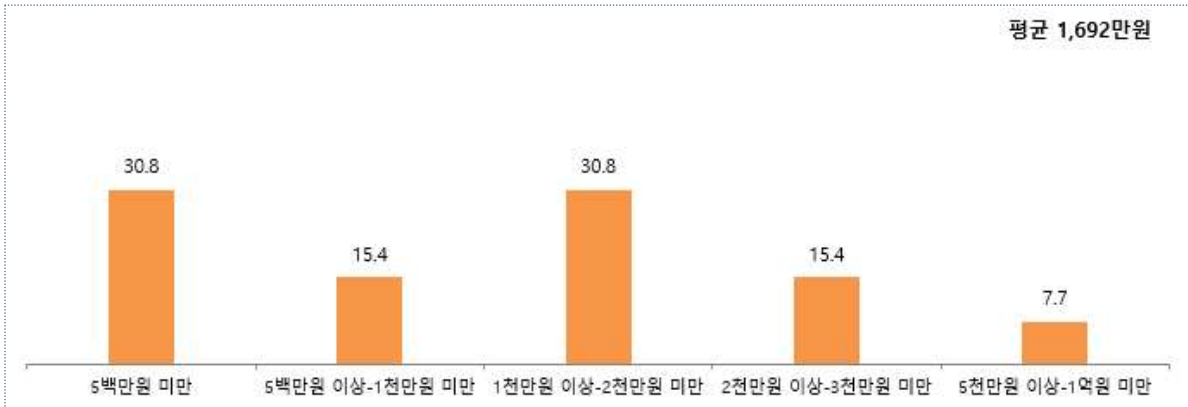
(base: 기타 피해 경험 사업체, n=13, 단위: %)



- 피해 비용은 '5백만 원 미만'과 '1천만 원 이상-2천만 원 미만'이 각각 30.8%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3-66】 기타 피해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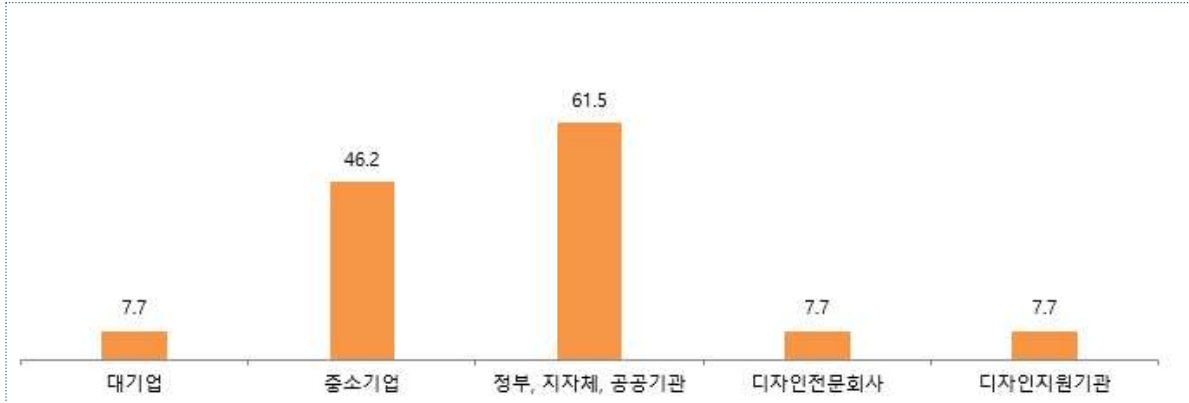
(base: 기타 피해 경험 사업체, n=13, 단위: %)



- 분쟁 대상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61.5%)과 '중소기업'(46.2%)이 높게 나타남

【그림 3-67】 기타 피해 분쟁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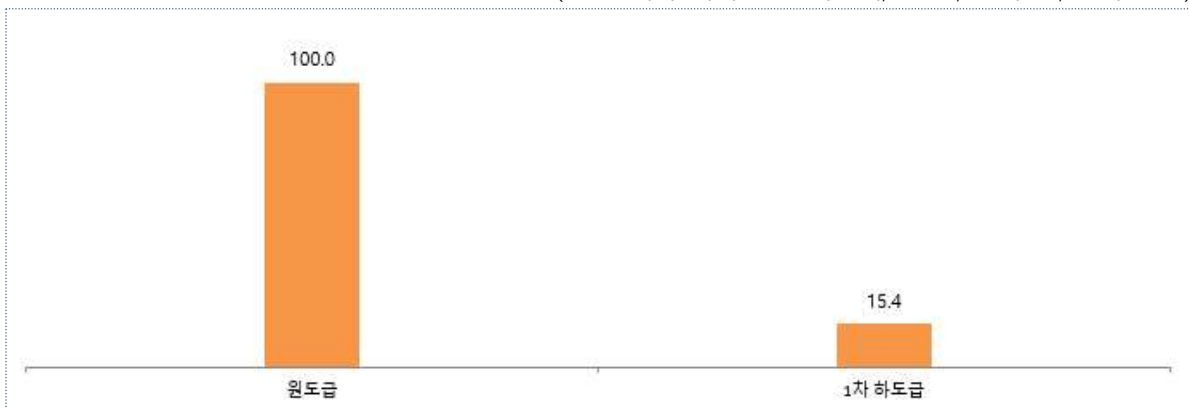
(base: 기타 피해 경험 사업체, n=13, 단위: %, 중복 응답)



- 하청 유형은 '원도급'이 100%이고, '1차 하도급'이 15.4%임

【그림 3-68】 기타 피해 하청 유형

(base: 기타 피해 경험 사업체, n=13, 단위: %, 중복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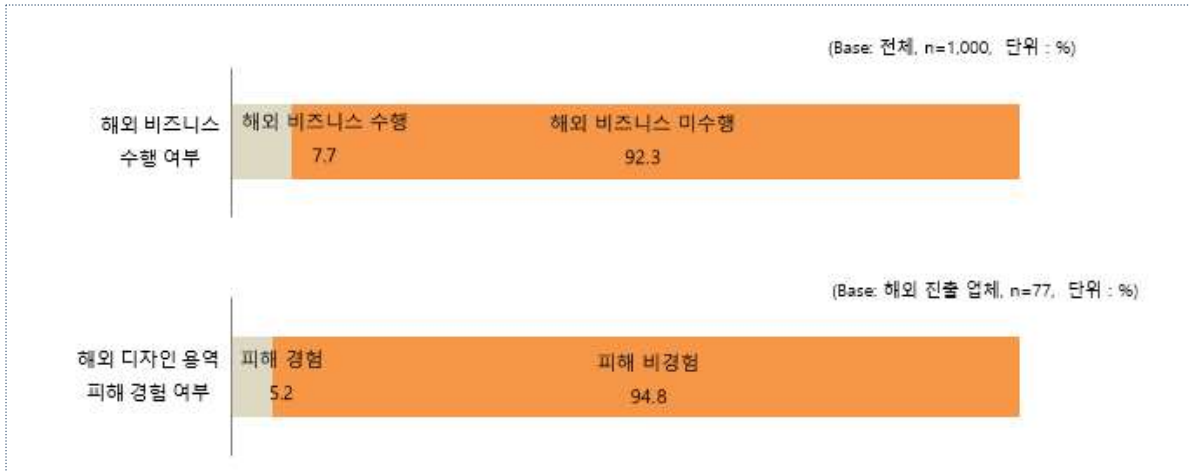
제IV장

해외 피해 현황

4.1 해외 피해 현황

- 2021년 해외 비즈니스 수행 업체(7.7%) 가운데 5.2%의 사업체가 해외 디자인 용역 피해를 경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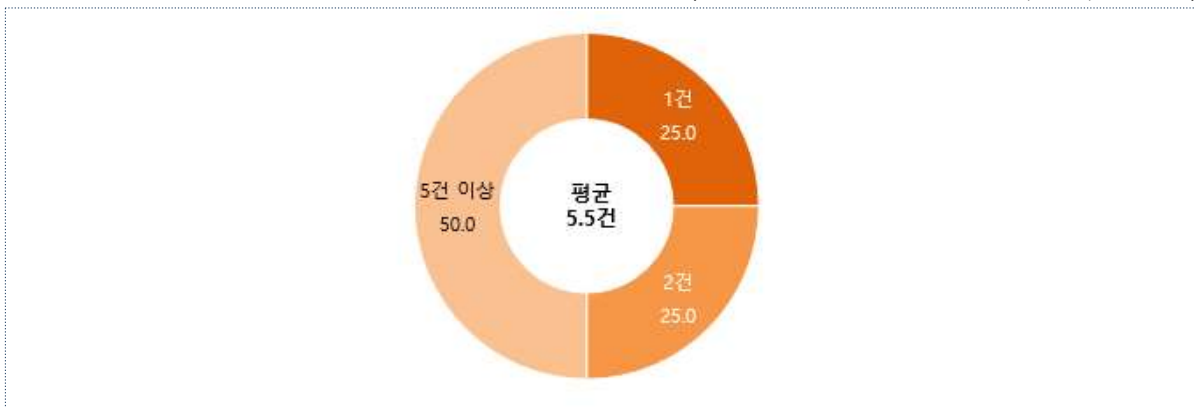
【그림 4-1】 해외 비즈니스 수행 및 피해 경험 여부



- 피해 용역 건수는 평균 5.5건이며 이 중 50.0%가 '5건 이상'의 피해를 경험함

【그림 4-2】 해외 디자인 용역 수행 피해 용역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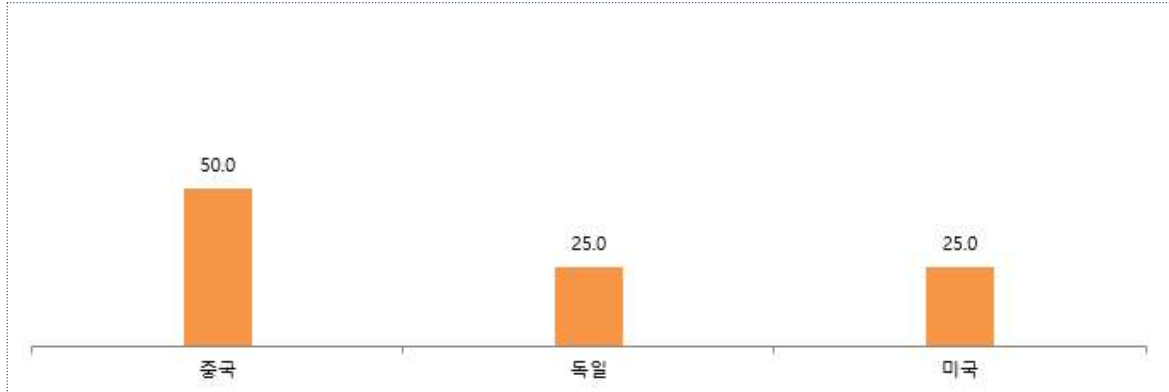
(base: 해외 비즈니스 피해업체, n=4, 단위: %)



- 피해 경험 국가는 '중국'(50.0%), '독일'(25.0%), '미국'(25.0%)임

【그림 4-3】 해외 용역 피해 경험 국가

(base: 해외 비즈니스 피해업체, n=4, 단위: %)



4.2 세부 사례별 피해 경험률

- 유형별 피해 경험률은 '불공정거래 피해'가 0.3%이고, '지식재산권 관련 피해'가 0.2%임
- 피해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세부 사례는 '계약 후 무리한 디자인 방향 변경 및 수정 작업 요구'(0.3%)로 나타남

【표 4-1】 해외 용역 사례별 피해 경험률

(base: 전체 업체, n=1,000, 단위: %)

유형	세부 사례	피해 경험률	
전체		0.4	
1. 불공정 거래 관련	1.1 계약 관련	1) 구두계약 진행, 완료 후 계약서 미비로 인한 피해	0.1
		2) 계약서 작성 시, 발주처에게 과도하게 유리한 조항 요구	0.1
		3)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받지 못함	0.2
		4)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일방적 해지	0.0
		5) 계약 중도 해지 시 소요된 비용(개발비, 인건비 등) 불인정	0.1
	계약 관련 소계		0.2
	1.2 제안 및 시안 PT	6) 제안서 제출 후 프로젝트 무산에 대한 일방적 통보	0.2
		7) 시안 경쟁 PT 참가에 대한 리젝트 피 미지급	0.2
	제안 및 시안 PT 관련 소계		0.2
	1.3 디자인 개발 과정	8) 계약 후 무리한 디자인 방향 변경 및 수정 작업 요구	0.3
		9) 계약 내용과 상관없는 개발 요구	0.2
10) 결과물 납품 후, 합리적 근거 없는 추가 요구		0.1	
11)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 불인정		0.2	
디자인 개발 과정 관련 소계		0.3	
불공정거래 관련 소계		0.3	
2. 지식재산권 관련 피해	12) 계약 내용을 벗어난 지식재산권 저촉 문제로 배상 요구	0.0	
	13) 경쟁 입찰에 참여하여 제출 시안을 허락 없이 무단 도용	0.1	
	14) 계약 조항 외에 모든 지식재산권 양도를 요구	0.0	
	15) 허락 없이 디자인 시안 무단으로 도용 제작 또는 판매된 경험	0.2	
	지식재산권 관련 피해 소계		0.2
3. 기타	16) 기타	0.0	

4.3 총 피해 건수와 금액

- 해외 용역 피해 업체의 평균 피해 건수는 5.5건이며, 평균 금액은 8,650만 원으로 나타남

【표 4-2】 해외 피해용역 건수와 피해 금액

(base: 해외 비즈니스 피해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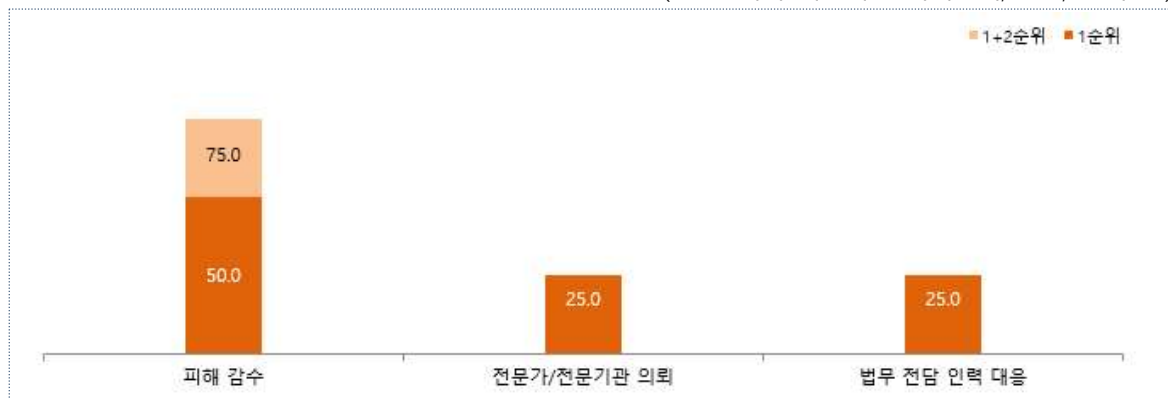
구분		2020년도	2021년도
사례 수		(6)	(4)
피해용역 건수	평균	2.2건	5.5건
	합계	580,000,000원	346,000,000원
피해용역 금액	평균	96,670,000원	86,500,000원
	합계	580,000,000원	346,000,000원

4.4 대응 방안

- 피해 발생 시 대응 방안은 1+2순위 기준으로 '피해 감수'(75.0%)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해외라는 특수 환경으로 인해 문제 발생에 대한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보임

【그림 4-4】 해외 용역 피해 발생 시 대응 방안

(base: 해외 비즈니스 피해업체, n=4, 단위: %)



제 V 장

기 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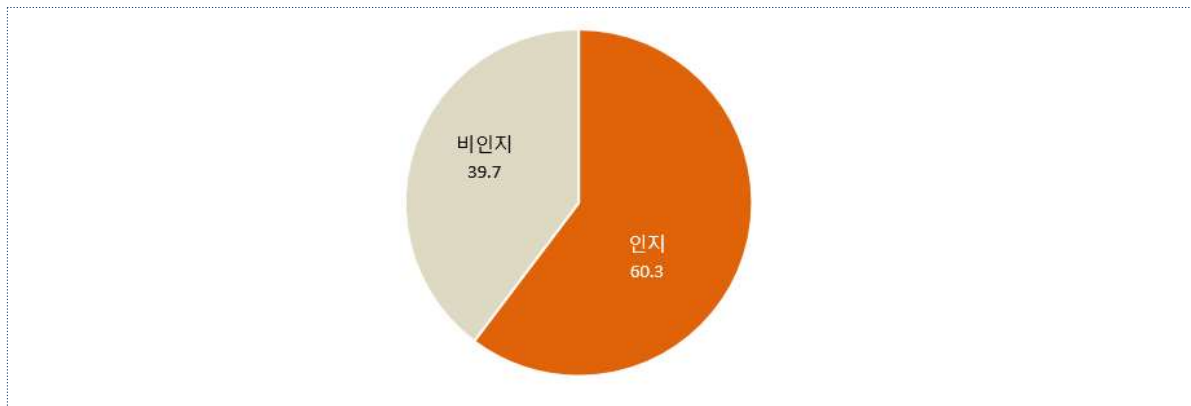
5.1 디자인용역표준계약서

□ 인지도

- 2021년 디자인용역표준계약서 인지율은 60.3%로 2020년(56.7%) 대비 증가함
- 종사자 규모가 작은 사업체일수록 표준계약서 인지율이 높고, 피해 경험이 있는 사업체가 피해 경험이 없는 사업체 대비 인지율이 높게 나타남

【그림 5-1】 디자인용역표준계약서 인지 여부

(base: 전체, n=1,000, 단위: %)



【표 5-1】 사업체 특성별 디자인용역표준계약서 인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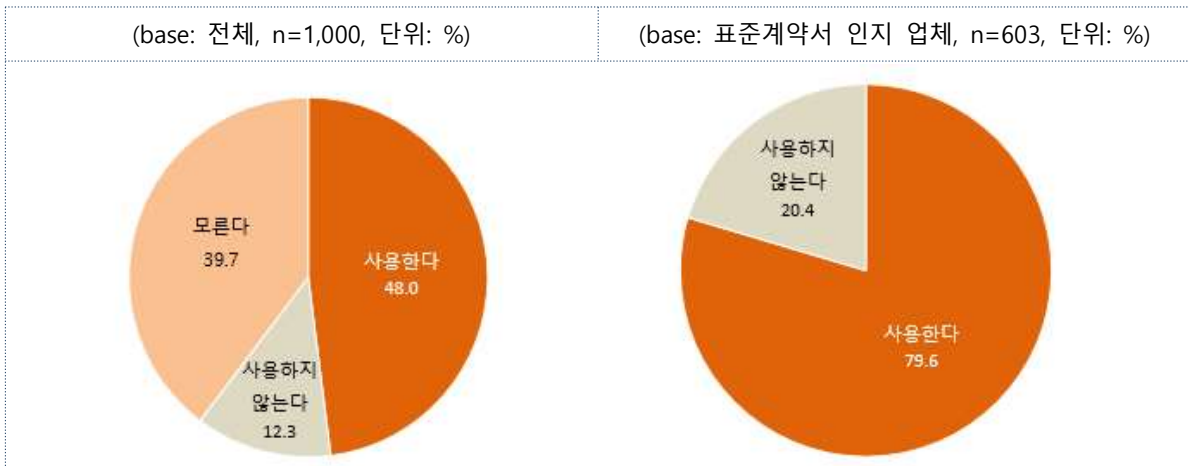
(base: 전체, n=1,000, 단위: %)

구분		사례 수	인지	비인지
전체		(1,000)	60.3	39.7
주요 생산 및 서비스 품목	제품	(173)	65.3	34.7
	시각	(314)	60.8	39.2
	환경	(199)	50.8	49.2
	패키지	(39)	76.9	23.1
	멀티미디어	(122)	59.8	40.2
	서비스	(53)	49.1	50.9
	종합	(83)	74.7	25.3
	기타	(17)	41.2	58.8
종사자 규모	5명 이하	(489)	63.6	36.4
	6~10명	(238)	63.0	37.0
	11~20명	(163)	52.1	47.9
	21명 이상	(110)	51.8	48.2
국내 피해 경험	피해 경험 있음	(227)	75.3	24.7
	피해 경험 없음	(773)	55.9	44.1

□ 사용 여부

- 디자인용역표준계약을 인지하고 있는 사업체 가운데 79.6%(전체 사업체의 48.0%)가 계약을 사용함
- 종사자 규모가 작은 사업체의 사용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피해 경험이 있는 사업체의 사용 비율이 높게 나타남

【그림 5-2】 디자인용역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표 5-2】 사업체 특성별 디자인용역표준계약서 사용 정도(전체 기준)

(base: 전체, n=1,000, 단위: %)

구분	사례 수	사용한다				사용하지 않는다	모른다	
		소계	그대로 사용	일부 수정	계약서에 일부 반영			
전체	(1,000)	48.0	10.1	21.0	16.9	12.3	39.7	
주요 생산 및 서비스 품목	제품	(173)	57.2	17.9	24.3	15.0	8.1	34.7
	시각	(314)	48.1	11.8	20.7	15.6	12.7	39.2
	환경	(199)	38.2	5.5	15.1	17.6	12.6	49.2
	패키지	(39)	43.6	2.6	28.2	12.8	33.3	23.1
	멀티미디어	(122)	46.7	6.6	23.0	17.2	13.1	40.2
	서비스	(53)	35.8	3.8	17.0	15.1	13.2	50.9
	종합	(83)	69.9	13.3	30.1	26.5	4.8	25.3
기타	(17)	17.6	0.0	0.0	17.6	23.5	58.8	
종사자 규모	5명 이하	(489)	50.1	9.6	23.3	17.2	13.5	36.4
	6~10명	(238)	51.7	9.2	21.0	21.4	11.3	37.0
	11~20명	(163)	41.7	12.3	18.4	11.0	10.4	47.9
	21명 이상	(110)	40.0	10.9	14.5	14.5	11.8	48.2
국내 피해경험	서울/인천/경기	(528)	49.6	9.8	23.1	16.7	12.7	37.7
	피해 경험 있음	(227)	54.2	9.7	26.0	18.5	21.1	24.7
	피해 경험 없음	(773)	46.2	10.2	19.5	16.4	9.7	44.1

【표 5-3】 사업체 특성별 디자인용역표준계약서 사용 정도(인지 업체 기준)

(base: 표준계약서 인지 업체, n=603, 단위: %)

구분	사례 수	사용한다				사용하지 않는다	
		소계	그대로 사용	일부 수정	계약서에 일부 반영		
전체	(603)	79.6	16.7	34.8	28.0	20.4	
주요 생산 및 서비스 품목	제품	(113)	87.6	27.4	37.2	23.0	12.4
	시각	(191)	79.1	19.4	34.0	25.7	20.9
	환경	(101)	75.2	10.9	29.7	34.7	24.8
	패키지	(30)	56.7	3.3	36.7	16.7	43.3
	멀티미디어	(73)	78.1	11.0	38.4	28.8	21.9
	서비스	(26)	73.1	7.7	34.6	30.8	26.9
	종합	(62)	93.5	17.7	40.3	35.5	6.5
	기타	(7)	42.9	0.0	0.0	42.9	57.1
종사자 규모	5명 이하	(311)	78.8	15.1	36.7	27.0	21.2
	6~10명	(150)	82.0	14.7	33.3	34.0	18.0
	11~20명	(85)	80.0	23.5	35.3	21.2	20.0
	21명 이상	(57)	77.2	21.1	28.1	28.1	22.8
국내 피해 경험	피해 경험 있음	(171)	71.9	12.9	34.5	24.6	28.1
	피해 경험 없음	(432)	82.6	18.3	35.0	29.4	17.4

□ 사용 종류와 대상

- 디자인용역표준계약을 사용하는 분야는 '시각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59.6%)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용 대상은 '중소기업'(77.9%)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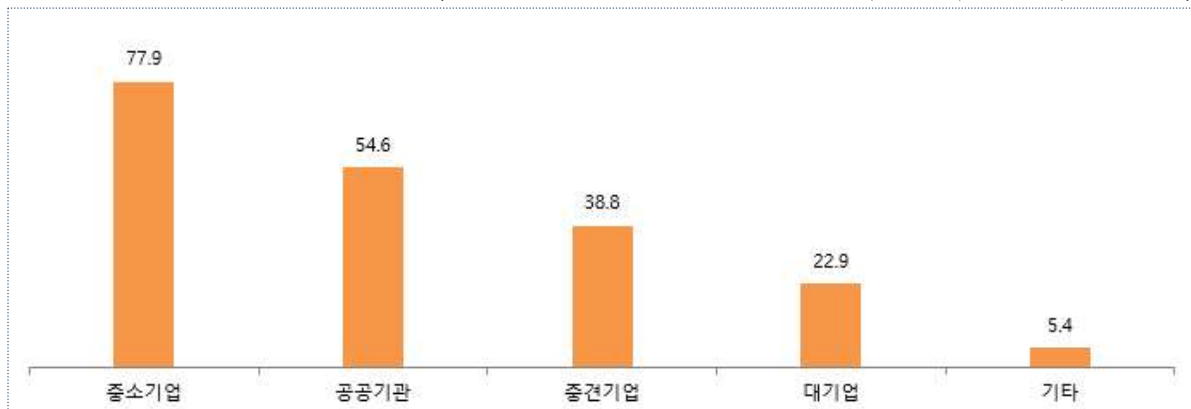
【표 5-4】 디자인용역표준계약서 사용 종류

(base: 디자인용역표준계약서 사용 업체, n=480, 단위: %, 중복 응답)

구분		사례 수	시각디자인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제품용역 표준계약서	멀티미디어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성과배분형 (제품)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전체		(480)	59.6	49.6	28.3	7.7
주요 생산 및 서비스 품목	제품	(99)	18.2	97.0	9.1	8.1
	시각	(151)	93.4	29.1	25.2	3.3
	환경	(76)	51.3	52.6	11.8	14.5
	패키지	(17)	94.1	47.1	11.8	5.9
	멀티미디어	(57)	31.6	15.8	91.2	5.3
	서비스	(19)	57.9	42.1	47.4	10.5
	종합	(58)	74.1	51.7	29.3	10.3
기타	(3)	0.0	100.0	0.0	33.3	

【그림 5-3】 디자인용역표준계약서 사용 대상

(base: 디자인용역표준계약서 사용 업체, n=480, 단위: %, 중복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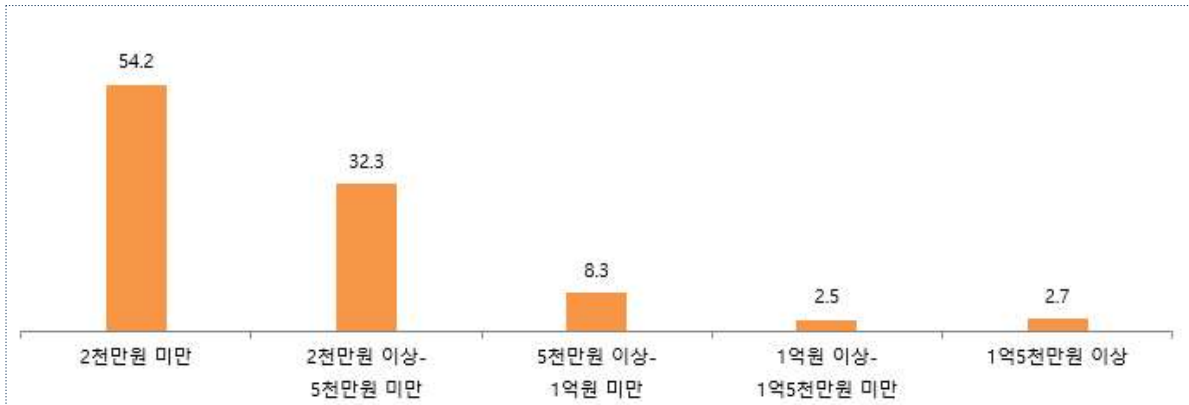


□ 계약 금액

- 디자인용역표준계약을 사용한 계약의 평균 계약 금액은 대부분 '2천만 원 미만'(54.2%), '2천만 원~5천만 원 미만'(32.3%)으로 2021년 평균 용역비보다 낮은 수준임

【그림 5-4】 디자인용역표준계약서 사용 평균 계약 금액

(base: 디자인용역표준계약서 사용 업체, n=480, 단위: %, 중복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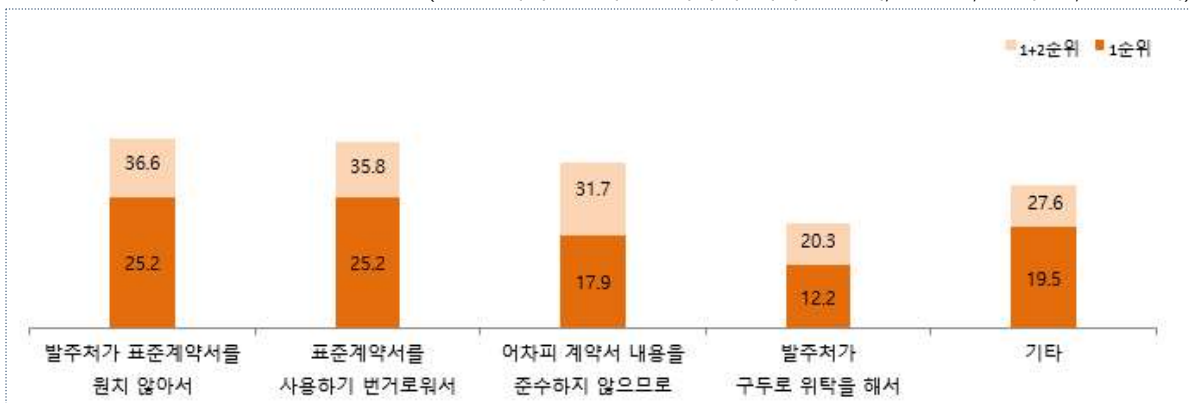


□ 미사용 이유

- 디자인용역표준계약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1+2순위 기준)는 '발주처가 표준계약을 원치 않아서'(36.6%), '표준계약을 사용하기 번거로워서'(35.8%)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표준계약서의 양식 및 작성 방법에 대한 홍보를 통해 용역을 발주하는 중소기업, 공공기관에서 표준계약을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함

【그림 5-5】 디자인용역표준계약서 미사용 이유

(base: 디자인용역표준계약서 미사용 업체, n=123, 단위: %, 1+2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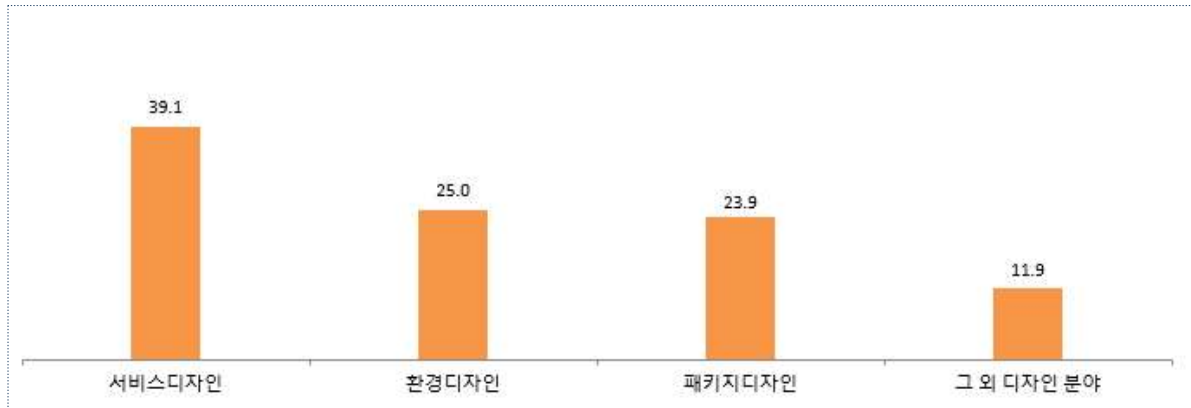


□ 추가 디자인 분야

- 디자인용역표준계약서가 추가되어야 할 디자인 분야로 '서비스디자인'(39.1%)이 가장 높고, '환경디자인'(25.0%), '패키지디자인'(23.9%) 순으로 2020년과 유사하게 나타남

【그림 5-6】 디자인용역표준계약서 추가되어야 할 디자인 분야

(base: 디자인용역표준계약서 인지 업체, n=603,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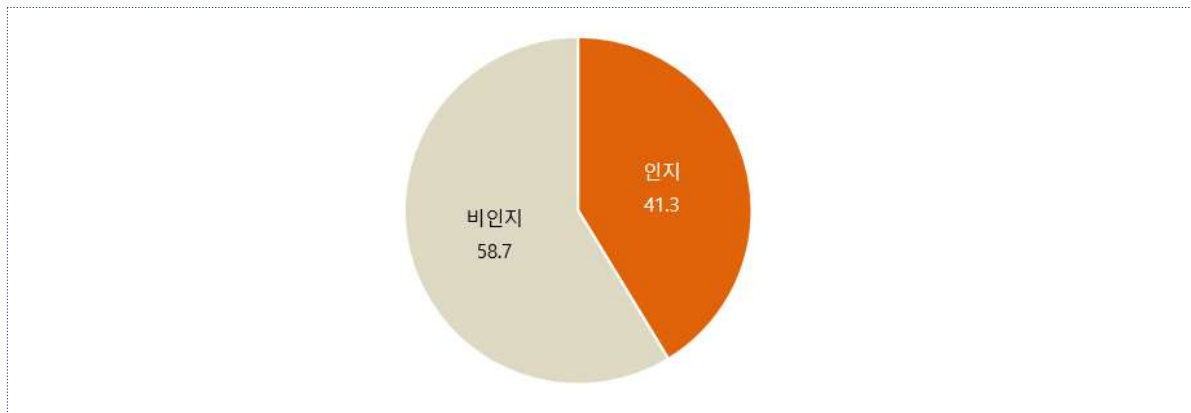
5.2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

□ 인지도5)

-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 인지 사업체는 41.3%로 전년(37.6%) 대비 상승함
- 사업체별 특성을 보면 국내 피해를 경험한 사업체(52.4%)가 피해 경험이 없는 사업체(38.0%)보다 인지율이 높음

【그림 5-7】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 인지 여부

(base: 전체, n=1,000, 단위: %)



【표 5-5】 사업체 특성별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 인지 여부

(base: 전체, n=1,000, 단위: %)

구분		사례 수	인지	비인지
전체		(1,000)	41.3	58.7
주요 생산 및 서비스 품목	제품	(173)	45.7	54.3
	시각	(314)	40.1	59.9
	환경	(199)	34.7	65.3
	패키지	(39)	56.4	43.6
	멀티미디어	(122)	40.2	59.8
	서비스	(53)	30.2	69.8
	종합	(83)	57.8	42.2
	기타	(17)	23.5	76.5
종사자 규모	5명 이하	(489)	39.7	60.3
	6~10명	(238)	46.6	53.4
	11~20명	(163)	40.5	59.5
	21명 이상	(110)	38.2	61.8
국내 피해 경험	피해 경험 있음	(227)	52.4	47.6
	피해 경험 없음	(773)	38.0	6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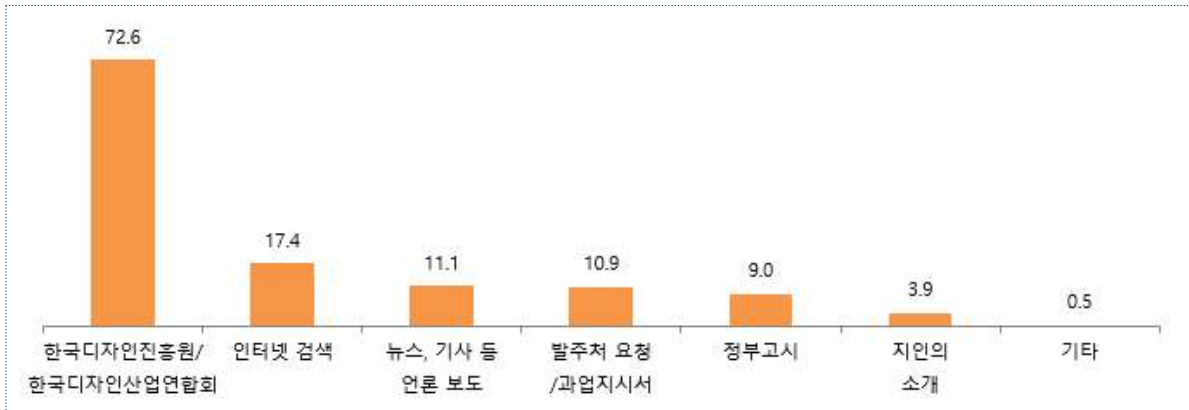
5) 공기업/사기업 발주처를 제외한 디자인 민간 기업의 인지도임

□ 인지 경로

-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 인지 경로는 주로 '한국디자인진흥원/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를 통해서'(72.6%)이므로 진흥원/연합회 차원의 홍보/소개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그림 5-8】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 인지 경로

(base: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 인지 업체, n=413, 단위: %, 중복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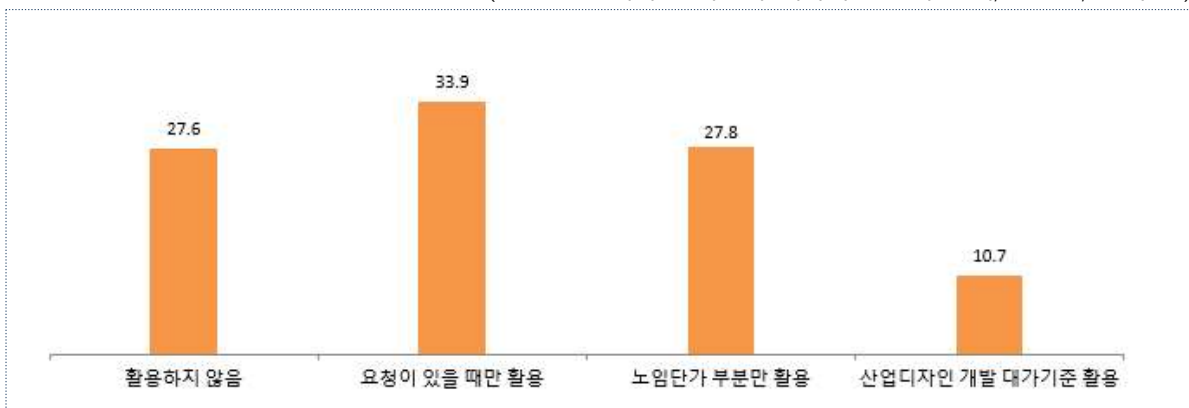


□ 활용 정도

-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 인지 사업체의 72.4%는 (일부)활용하고 있으며, 대가기준을 계속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업체는 38.5%로 나타남

【그림 5-9】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 활용 정도

(base: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 인지 업체, n=413, 단위: %)



□ 미사용 이유

-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1+2순위 기준)는 '대가를 산정하기에 현실적이지 않아서'(53.1%)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내용상/시스템상 사용에 어려워서'(35.8%)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종사자 규모가 10인 이상인 사업체는 10인 이하 사업체 대비 '내용/시스템상 사용 어려움'에 대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대가기준 활용 방법에 대한 안내가 필요함

【그림 5-10】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 미사용 이유

(base: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 미사용 업체, n=254, 단위: %, 1+2순위)



【표 5-6】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 미사용 이유

(base: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 미사용 업체, n=254, 단위: %, 1+2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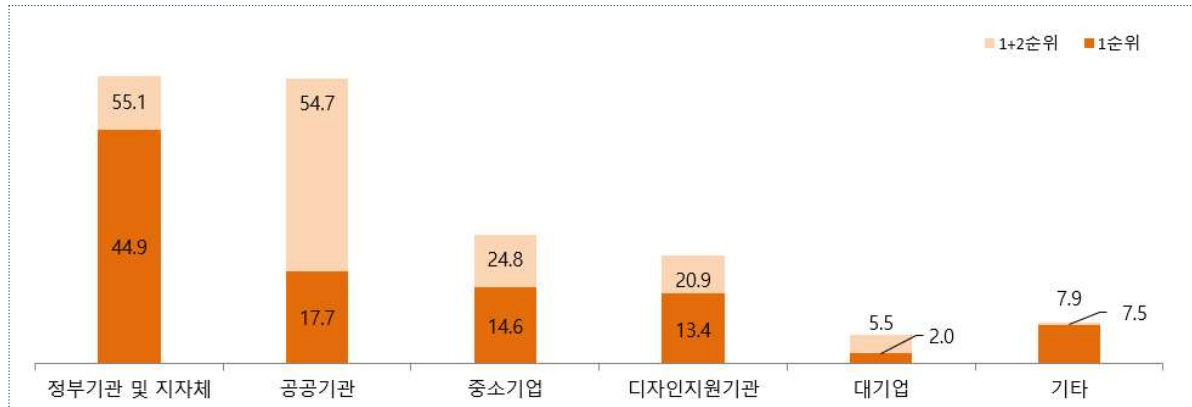
구분	사례 수	대가 산정에 현실적이지 않아서	내용/시스템상 사용 어려워서	대가기준 적용이 필수사항 아니므로	발주처가 원하지 않아서	산출된 금액이 낮아서	기타	
전체	(254)	53.1	35.8	31.5	28.3	12.2	4.3	
종사자 규모	5명 이하	(124)	61.3	30.6	31.5	27.4	15.3	4.8
	6~10명	(65)	47.7	41.5	33.8	27.7	9.2	6.2
	11~20명	(37)	37.8	37.8	29.7	24.3	10.8	2.7
	21명 이상	(28)	50.0	42.9	28.6	39.3	7.1	0.0
권역	서울/인천/경기	(134)	56.7	32.8	31.3	27.6	14.2	5.2
	부산/대구/울산/경상	(50)	48.0	34.0	36.0	32.0	4.0	2.0
	광주/전라/제주	(36)	50.0	44.4	19.4	36.1	11.1	5.6
	대전/세종/충청/강원	(34)	50.0	41.2	38.2	17.6	17.6	2.9
국내 피해경험	피해 경험 있음	(76)	65.8	34.2	25.0	28.9	15.8	5.3
	피해 경험 없음	(178)	47.8	36.5	34.3	28.1	10.7	3.9

□ 사용 대상

-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 사용 대상(1+2순위 기준)으로 '정부기관 및 지자체'(55.1%)와 '공공기관'(54.7%)이 높게 나타남

【그림 5-11】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 사용 대상

(base: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 미사용 업체, n=254, 단위: %, 1+2순위)



부록

설문지

디자인 공정거래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디자인진흥원과 (사)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는 디자인 전문회사의 정확한 공정거래 실태 파악을 통한 효과적인 정책 수립 건의와 디자인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디자인 공정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본 조사는 디자인 전문회사의 일반현황 및 디자인 전문회사의 프로젝트 수행 관련, 불공정거래, 지식재산권 분쟁사례 등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디자인 전문회사의 피해를 예방하고 발전적인 디자인 정책을 만들기 위한 초석이 되는 중요한 조사입니다.

조사의 설문내용 및 개인 신상은 통계법[2014. 11. 19 시행] 제33조에 의해 비밀이 보장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어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불공정거래란?

1. 일방적으로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2. 터무니없이 싸게 팔거나 혹은 비싸게 구입하여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
3. 지위의 우월함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변경하는 행위

□ 지식재산권이란?

지식재산권은 특허·상표·디자인 등의 산업재산권과 문학·음악·미술 작품 등에 관한 저작권의 총칭으로 저작권법,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등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SECTION 1. 디자인전문회사 소재 파악

문1. 귀사가 소재하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ex[경기도/성남시] [도/ 시]

문2. 귀사가 주로 생산하거나 서비스하는 품목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3위까지 선택해주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 ① 제품 디자인 ② 시각 디자인 ③ 환경 디자인 ④ 패키지 디자인
⑤ 멀티미디어 디자인 ⑥ 서비스 디자인 ⑦ ①~⑥ 중 3개 분야 이상 ⑧ 기타 [직접기입:]

※ 다음은 통계처리를 위한 질문입니다.

문3. 지난 1년간[2021.01.01.~2021.12.31] 귀사의 총 매출액은 얼마입니까? [억 만 원]

문4. 현재 귀사의 직원은 모두 몇 명입니까? []명

※ 대표자와 상용근로자, 임시 및 일용근로자를 포함

문5. 현재 귀사의 디자인 전문 인력은 모두 몇 명입니까? []명

SECTION 2. 디자인전문회사 국내 피해 사례 현황

※ 디자인전문회사 '피해'란 ?

디자인전문회사가 디자인 관련 용역을 수행함에 고객사 혹은 협력 디자인전문회사, 디자인지원기관과의 계약, 디자인 개발 과정, 지식재산권 등의 용역의 전반적 과정에서 경험하는 피해를 총칭

※ 디자인전문회사 경험하는 대표적 피해사례 유형입니다.
자세히 읽고 이어지는 질문에 응답해 주세요.

피해 유형		세부 유형
불공정 거래	계약관련	1. 구두계약으로 프로젝트를 진행, 완료하였으나 계약서 미비로 인해 비용결제 시 손해를 본 경험 [구두계약 미[未]이행] 2. 계약서 작성 시 용역발주처[갑]에 과도하게 유리한 계약조항을 요구당한 경험 3. 계약금 선금, 잔금 또는 중도금 지급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받지 못한 경험 4. 디자인 개발 프로젝트 진행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당한 경험 5. 중도 계약 해지 시에 소요된 비용[개발비, 인건비 등]이 일방적으로 불인정 된 경험
	제안 및 시안 PT 관련	6.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내부 사정으로 프로젝트가 무산되었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받은 경험 7. 시안 경쟁 PT에 참여하였으나 리젝트 피[제안서 보상비]를 받지 못한 경험
	디자인 개발 과정	8. 계약 후 무리한 디자인 개발 방향변경 및 수정작업을 요구당한 경험 9. 계약 내용과는 상관없는 별도의 개발을 무상 혹은 낮은 가격으로 요구당한 경험 10. 결과물 납품 완료 후 결과물에 대하여 추가 요구를 당한 경험 [합리적 근거 없는 검수 기준 및 불합격 처리] 11. 계약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이 불인정 된 경험
지식재산권 관련 피해		12. 계약에서 규정한 책임한도를 벗어난 지식재산권 저촉 문제를 이유로 배상을 요구당한 경험 13. 경쟁 입찰에 참여하여 제출한 시안을 사용허락 없이 무단으로 도용당한 경험 14. 계약 조항 외에 디자인 개발에 따른 모든 지식재산권의 양도를 요구당한 경험 15. 계약 또는 허락 없이 디자인 시안 무단으로 도용 제작 또는 판매된 경험
기타 피해		16. 1번~15번 이외 피해 경험

문6. 귀사는 작년[2021.01~2021.12] 국내 디자인개발 용역 수행 시 앞서 나온 피해를 입으신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문14로]

구분1. 계약 관련 피해사례[국내]

문7. 다음 문항은 디자인전문회사에서 경험하는 피해 유형입니다.

작성년[2021. 01 ~ 2021. 12.]에 귀사가 경험한 피해 유형을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피해 유형		세부 유형	문7.	
			있다	없다
불공정 거래	계약 관련	1. 구두계약으로 프로젝트를 진행, 완료하였으나 계약서 미비로 인해 비용결재 시 손해를 본 경험 [구두계약 미[未]이행]	1	2
		2. 계약서 작성 시 용역발주처[갑]에 과도하게 유리한 계약조항을 요구당한 경험	1	2
		3. 계약금 선금, 잔금 또는 중도금 지급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받지 못한 경험	1	2
		4. 디자인 개발 프로젝트 진행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당한 경험	1	2
		5. 중도 계약 해지 시에 소요된 비용[개발비, 인건비 등]이 일방적으로 불인정 된 경험	1	2
	제안, 시안PT 관련	6.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내부사정으로 프로젝트가 무산되었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받은 경험	1	2
		7. 시안 경쟁 PT에 참여하였으나 리젝트피 [제안서 보상비]를 받지 못한 경험	1	2
	디자인 개발 과정	8. 계약 후 무리한 디자인 개발 방향변경 및 수정작업을 요구당한 경험	1	2
		9. 계약 내용과는 상관없는 별도의 개발을 무상 혹은 낮은 가격으로 요구당한 경험	1	2
		10. 결과물 납품 완료 후 결과물에 대하여 추가 요구를 당한 경험 [합리적 근거 없는 검수 기준 및 불합격 처리]	1	2
		11. 계약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이 불인정 된 경험	1	2
지재권 관련 피해	12. 계약에서 규정한 책임한도를 벗어난 지식재산권 저촉 문제를 이유로 배상을 요구당한 경험	1	2	
	13. 경쟁 입찰에 참여하여 제출한 시안을 사용허락 없이 무단으로 도용당한 경험	1	2	
	14. 계약 조항 외에 디자인 개발에 따른 모든 지식재산권의 양도를 요구당한 경험	1	2	
	15. 계약 또는 허락 없이 디자인 시안 무단으로 도용 제작 또는 판매된 경험	1	2	
기타 피해	16. 1번~15번 외의 피해 경험 [적어 주세요 _____]	1	2	

구분1-1. 계약관련

귀하가 경험한 피해 유형에 대해 경험 횟수, 분쟁 대상, 하청 여부, 2019년 연간 피해금액을 선택해 주십시오.

→ **문7 경험한 적 있는 유형에 대해 질문**

정부, 지자체 : 정부기관 = ex) 산업통상자원부, 지자체 = ○○시청 등

공공기관 : 한국지역난방공사, 대한적십자사 등

디자인지원기관 : 디자인진흥원, 지역RDC 등 디자인 지원기관 또는

테크노파크, 디자인재단 등과 같이 디자인이 필요한 기업을 위해 지원사업을 하는 기관

문 7. 피해유형	문 8. 경험횟수	문 9. 분쟁 대상 [모두선택]	문 10. 하청 유형 [모두선택]	문 11. 총 피해비용
1. 구두계약으로 프로젝트를 진행, 완료하였으나 계약서 미비로 인해 비용 결제 시 손해를 본 경험[구두계약 미이행]이 있다.	[]회	① 대기업 ② 중소기업 ③ 정부, 지자체, 공공 기관 ④ 디자인전문회사 ⑤ 디자인지원기관 ⑥ 기타[적어주세요:]	① 원도급 ② 1차 하도급 ③ 2차 하도급 ④ 3차 하도급 ⑤ 기타[차]	① 5백만 원 미만 ② 5백만 원 이상~1천만 원 미만 ③ 1천만 원 이상~2천만 원 미만 ④ 2천만 원 이상~3천만 원 미만 ⑤ 3천만 원 이상~5천만 원 미만 ⑥ 5천만 원 이상~1억 원 미만 ⑦ 1억 원 이상~2억 원 미만 ⑧ 2억 원 이상
2. 계약서 작성 시, "용역발주처[갑]"에게 과도하게 유리한 계약조항을 요구당한 경험이 있다.	[]회	① 대기업 ② 중소기업 ③ 정부, 지자체, 공공 기관 ④ 디자인전문회사 ⑤ 디자인지원기관 ⑥ 기타[적어주세요:]	① 원도급 ② 1차 하도급 ③ 2차 하도급 ④ 3차 하도급 ⑤ 기타[차]	① 5백만 원 미만 ② 5백만 원 이상~1천만 원 미만 ③ 1천만 원 이상~2천만 원 미만 ④ 2천만 원 이상~3천만 원 미만 ⑤ 3천만 원 이상~5천만 원 미만 ⑥ 5천만 원 이상~1억 원 미만 ⑦ 1억 원 이상~2억 원 미만 ⑧ 2억 원 이상
3. 계약된 선금, 잔금 또는 중도금 지급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받지 못한 경험	[]회	① 대기업 ② 중소기업 ③ 정부, 지자체, 공공 기관 ④ 디자인전문회사 ⑤ 디자인지원기관 ⑥ 기타[적어주세요:]	① 원도급 ② 1차 하도급 ③ 2차 하도급 ④ 3차 하도급 ⑤ 기타[차]	① 5백만 원 미만 ② 5백만 원 이상~1천만 원 미만 ③ 1천만 원 이상~2천만 원 미만 ④ 2천만 원 이상~3천만 원 미만 ⑤ 3천만 원 이상~5천만 원 미만 ⑥ 5천만 원 이상~1억 원 미만 ⑦ 1억 원 이상~2억 원 미만 ⑧ 2억 원 이상
4. 디자인개발 프로젝트 진행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당한 경험이 있다.	[]회	① 대기업 ② 중소기업 ③ 정부, 지자체, 공공 기관 ④ 디자인전문회사 ⑤ 디자인지원기관 ⑥ 기타[적어주세요:]	① 원도급 ② 1차 하도급 ③ 2차 하도급 ④ 3차 하도급 ⑤ 기타[차]	① 5백만 원 미만 ② 5백만 원 이상~1천만 원 미만 ③ 1천만 원 이상~2천만 원 미만 ④ 2천만 원 이상~3천만 원 미만 ⑤ 3천만 원 이상~5천만 원 미만 ⑥ 5천만 원 이상~1억 원 미만 ⑦ 1억 원 이상~2억 원 미만 ⑧ 2억 원 이상
5. 중도 해지 시에 소요된 비용 [개발비, 인건비 등]이 일방적으로 불인정된 경험이 있다.	[]회	① 대기업 ② 중소기업 ③ 정부, 지자체, 공공 기관 ④ 디자인전문회사 ⑤ 디자인지원기관 ⑥ 기타[적어주세요:]	① 원도급 ② 1차 하도급 ③ 2차 하도급 ④ 3차 하도급 ⑤ 기타[차]	① 5백만 원 미만 ② 5백만 원 이상~1천만 원 미만 ③ 1천만 원 이상~2천만 원 미만 ④ 2천만 원 이상~3천만 원 미만 ⑤ 3천만 원 이상~5천만 원 미만 ⑥ 5천만 원 이상~1억 원 미만 ⑦ 1억 원 이상~2억 원 미만 ⑧ 2억 원 이상

구분1-2. 제안 및 시안PT 관련 피해사례

문 7. 피해유형	문 8. 경험횟수	문 9. 분쟁대상 [모두선택]	문 10. 하청 여부 [모두선택]	문 11. 총 피해비용
6.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내부사정으로 <u>프로젝트가 무산되었다고 일방적으로 통보</u> 를 받은 경험이 있다.	[]회	① 대기업 ② 중소기업 ③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④ 디자인전문회사 ⑤ 디자인지원기관 ⑥ 기타 [적어주세요:]	① 원도급 ② 1차 하도급 ③ 2차 하도급 ④ 3차 하도급 ⑤ 기타 [차]	① 5백만 원 미만 ② 5백만 원 이상~1천만 원 미만 ③ 1천만 원 이상~2천만 원 미만 ④ 2천만 원 이상~3천만 원 미만 ⑤ 3천만 원 이상~5천만 원 미만 ⑥ 5천만 원 이상~1억 원 미만 ⑦ 1억 원 이상~2억 원 미만 ⑧ 2억 원 이상 [피해비용의 기준: 제안준비기간에 투입된실비]
7. 시안 경쟁PT에 참가하여 <u>리젝트 피[제안서보상비]를 받지 못한</u> 경험이 있다. [시안 경쟁 PT시 아이디어만 받고 비용을 주지 않은 경우를 포함]	[]회	① 대기업 ② 중소기업 ③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④ 디자인전문회사 ⑤ 디자인지원기관 ⑥ 기타 [적어주세요:]	① 원도급 ② 1차 하도급 ③ 2차 하도급 ④ 3차 하도급 ⑤ 기타 [차]	① 5백만 원 미만 ② 5백만 원 이상~1천만 원 미만 ③ 1천만 원 이상~2천만 원 미만 ④ 2천만 원 이상~3천만 원 미만 ⑤ 3천만 원 이상~5천만 원 미만 ⑥ 5천만 원 이상~1억 원 미만 ⑦ 1억 원 이상~2억 원 미만 ⑧ 2억 원 이상

구분1-3. 디자인 개발 과정상의 피해사례

문 7. 피해유형	문 8. 경험횟수	문 9. 분쟁대상 [모두선택]	문 10. 하청 여부 [모두선택]	문 11. 총 피해비용
8. 계약 후 <u>무리한 디자인 개발 방향변경 및 수정 작업을 요구</u> 당한 경험이 있다.	[]회	① 대기업 ② 중소기업 ③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④ 디자인전문회사 ⑤ 디자인지원기관 ⑥ 기타 [적어주세요:]	① 원도급 ② 1차 하도급 ③ 2차 하도급 ④ 3차 하도급 ⑤ 기타 [차]	① 5백만 원 미만 ② 5백만 원 이상~1천만 원 미만 ③ 1천만 원 이상~2천만 원 미만 ④ 2천만 원 이상~3천만 원 미만 ⑤ 3천만 원 이상~5천만 원 미만 ⑥ 5천만 원 이상~1억 원 미만 ⑦ 1억 원 이상~2억 원 미만 ⑧ 2억 원 이상
9. 계약내용과는 상관없는 <u>별도의 개발을 [무상 혹은 낮은 가격으로] 요구</u> 당한 경험이 있다.	[]회	① 대기업 ② 중소기업 ③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④ 디자인전문회사 ⑤ 디자인지원기관 ⑥ 기타 [적어주세요:]	① 원도급 ② 1차 하도급 ③ 2차 하도급 ④ 3차 하도급 ⑤ 기타 [차]	① 5백만 원 미만 ② 5백만 원 이상~1천만 원 미만 ③ 1천만 원 이상~2천만 원 미만 ④ 2천만 원 이상~3천만 원 미만 ⑤ 3천만 원 이상~5천만 원 미만 ⑥ 5천만 원 이상~1억 원 미만 ⑦ 1억 원 이상~2억 원 미만 ⑧ 2억 원 이상
10. 결과물 납품 완료 후, <u>결과물에 대하여 추가 요구</u> 를 당한 경험이 있다. [합리적 근거 없는 검수 기준 및 불합격 처리]	[]회	① 대기업 ② 중소기업 ③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④ 디자인전문회사 ⑤ 디자인지원기관 ⑥ 기타 [적어주세요:]	① 원도급 ② 1차 하도급 ③ 2차 하도급 ④ 3차 하도급 ⑤ 기타 [차]	① 5백만 원 미만 ② 5백만 원 이상~1천만 원 미만 ③ 1천만 원 이상~2천만 원 미만 ④ 2천만 원 이상~3천만 원 미만 ⑤ 3천만 원 이상~5천만 원 미만 ⑥ 5천만 원 이상~1억 원 미만 ⑦ 1억 원 이상~2억 원 미만 ⑧ 2억 원 이상
11. <u>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이 불인정된</u> 경험이 있다.	[]회	① 대기업 ② 중소기업 ③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④ 디자인전문회사 ⑤ 디자인지원기관 ⑥ 기타 [적어주세요:]	① 원도급 ② 1차 하도급 ③ 2차 하도급 ④ 3차 하도급 ⑤ 기타 [차]	① 5백만 원 미만 ② 5백만 원 이상~1천만 원 미만 ③ 1천만 원 이상~2천만 원 미만 ④ 2천만 원 이상~3천만 원 미만 ⑤ 3천만 원 이상~5천만 원 미만 ⑥ 5천만 원 이상~1억 원 미만 ⑦ 1억 원 이상~2억 원 미만 ⑧ 2억 원 이상

구분1-4. 지재권관련 피해사례

문 7. 피해유형	문 8. 경험횟수	문 9. 분쟁대상 [모두선택]	문 10. 하청 여부[모두선택]	문 11. 총 피해비용
12. 계약에서 규정한 <u>책임한도를 벗어난 지식재산권 저촉 문제를 이유로 배상을 요구</u> 당한 경험이 있다.	[]회	① 대기업 ② 중소기업 ③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④ 디자인전문회사 ⑤ 디자인지원기관 ⑥ 기타[적어주세요:]	① 원도급 ② 1차 하도급 ③ 2차 하도급 ④ 3차 하도급 ⑤ 기타[차]	① 5백만 원 미만 ② 5백만 원 이상~1천만 원 미만 ③ 1천만 원 이상~2천만 원 미만 ④ 2천만 원 이상~3천만 원 미만 ⑤ 3천만 원 이상~5천만 원 미만 ⑥ 5천만 원 이상~1억 원 미만 ⑦ 1억 원 이상~2억 원 미만 ⑧ 2억 원 이상
13. 경쟁 입찰에 참여하여 <u>제출한 시안을 본인의 사용 허락 없이 무단으로</u> <u>도용</u> 당한 경험이 있다.	[]회	① 대기업 ② 중소기업 ③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④ 디자인전문회사 ⑤ 디자인지원기관 ⑥ 기타[적어주세요:]	① 원도급 ② 1차 하도급 ③ 2차 하도급 ④ 3차 하도급 ⑤ 기타[차]	① 5백만 원 미만 ② 5백만 원 이상~1천만 원 미만 ③ 1천만 원 이상~2천만 원 미만 ④ 2천만 원 이상~3천만 원 미만 ⑤ 3천만 원 이상~5천만 원 미만 ⑥ 5천만 원 이상~1억 원 미만 ⑦ 1억 원 이상~2억 원 미만 ⑧ 2억 원 이상
14. 계약 조항 외에 <u>디자인 개발에 따른 모든 지식재산권의 양도를</u> <u>요구</u> 당한 경험이 있다.	[]회	① 대기업 ② 중소기업 ③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④ 디자인전문회사 ⑤ 디자인지원기관 ⑥ 기타[적어주세요:]	① 원도급 ② 1차 하도급 ③ 2차 하도급 ④ 3차 하도급 ⑤ 기타[차]	① 5백만 원 미만 ② 5백만 원 이상~1천만 원 미만 ③ 1천만 원 이상~2천만 원 미만 ④ 2천만 원 이상~3천만 원 미만 ⑤ 3천만 원 이상~5천만 원 미만 ⑥ 5천만 원 이상~1억 원 미만 ⑦ 1억 원 이상~2억 원 미만 ⑧ 2억 원 이상
15. 계약 또는 허락 없이 <u>디자인 시안을 무단으로</u> <u>도용</u> 제작 또는 판매된 경험	[]회	① 대기업 ② 중소기업 ③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④ 디자인전문회사 ⑤ 디자인지원기관 ⑥ 기타[적어주세요:]	① 원도급 ② 1차 하도급 ③ 2차 하도급 ④ 3차 하도급 ⑤ 기타[차]	① 5백만 원 미만 ② 5백만 원 이상~1천만 원 미만 ③ 1천만 원 이상~2천만 원 미만 ④ 2천만 원 이상~3천만 원 미만 ⑤ 3천만 원 이상~5천만 원 미만 ⑥ 5천만 원 이상~1억 원 미만 ⑦ 1억 원 이상~2억 원 미만 ⑧ 2억 원 이상

구분1-5. 기타 피해

문 7. 피해유형	문 8. 경험횟수	문 9. 분쟁대상 [모두선택]	문 10. 하청 여부[모두선택]	문 11. 총 피해비용
16. [문 7. 16번 기술 내용 제시]	[]회	① 대기업 ② 중소기업 ③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④ 디자인전문회사 ⑤ 디자인지원기관 ⑥ 기타[적어주세요:]	① 원도급 ② 1차 하도급 ③ 2차 하도급 ④ 3차 하도급 ⑤ 기타[차]	① 5백만 원 미만 ② 5백만 원 이상~1천만 원 미만 ③ 1천만 원 이상~2천만 원 미만 ④ 2천만 원 이상~3천만 원 미만 ⑤ 3천만 원 이상~5천만 원 미만 ⑥ 5천만 원 이상~1억 원 미만 ⑦ 1억 원 이상~2억 원 미만 ⑧ 2억 원 이상

SECTION 3. [국내] 디자인전문회사 피해 대응 현황

문14. 귀사는 국내에서 불공정거래 또는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주로 어떻게 하십니까?

1~2순위로 선택해 주세요. 1순위 2순위

- ① 기업 내 법무전담인력을 통해 대응
- ②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피해지원센터 등]에 의뢰하여 해결 방안 모색
- ③ 피해 감수
- ④ 기타 [적어 주세요 : _____]

문14-1. [문14의 ③ 응답자] 귀사가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가장 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재거래 불이익 등,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성 고려
- ② 소송비용 등 해결을 위한 비용부담
- ③ 대응절차의 복잡성
- ④ 대응방법 미 숙지
- ⑤ 기타 [적어 주세요: _____]

문14-2. [문14의 ③ 응답자] 피해를 받았을 때 귀사에 가장 필요한 지원이 무엇입니까?

- ① 비용 지원 [소송비용 등]
- ② 대응 절차, 방법 등에 대한 법률서비스 지원
- ③ 문제해결을 대행하여 주는 기관
- ④ 기타 [적어 주세요 : _____]

문15. 국가기관 등이 디자인전문회사 피해예방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2순위로 선택해 주세요. 1순위 2순위

- ① 피해 사례 유형 분석을 통한 교육 및 홍보활동
- ② 대응 절차, 방법 등에 대한 법률서비스 지원
- ③ 디자인 표준계약서 및 디자인 사업 대가기준안 마련
- ④ 디자인 가치 및 기준에 대한 인식 확산 캠페인
- ⑤ 기타 [적어 주세요 : _____]

문16. 귀사는 디자인용역표준계약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디자인용역표준계약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이 보급하고 있습니다.

- ① 알고 있다
- ② 모른다 [→ 문17로 이동]

문16-1. [문16. ④ 응답자] 귀사는 현재 디자인용역표준계약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 ① 사용한다 [→ 문항 16-1-1로]
- ② 일부 수정하여 사용한다. [→ 문항 16-1-1로]
- ③ 자체계약서에 일부 반영하여 사용한다.[→ 문항 16-1-1로]
- ④ 사용하지 않는다 [→ 문항 16-2로]

문16-1-1. [문16-1의 ①~③응답자만] 사용 대상은 어디 입니까? 모두 선택해주세요.

- ① 공공기관
- ② 중소기업
- ③ 중견기업
- ④ 대기업
- ⑤ 기타[적어주세요:]

문16-1-2. [문16-1의 ①~③응답자만] 사용하고 있는 계약서의 종류를 모두 선택해 주세요.

- ① 시각디자인 표준계약서
- ② 인터랙티브[멀티미디어]디자인 표준계약서
- ③ 제품디자인 표준계약서
- ④ 제품디자인 표준계약서[성과보수]

문16-1-3. [문16-1의 ①~③응답자만] 평균 계약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2천만 원 미만
- ② 2천만 원 이상 ~ 5천만 원 미만
- ③ 5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 ④ 1억 원 이상~ 1억5천만 원 미만
- ⑤ 1억5천만 원 이상

문16-2. [문16-1의 ④ 응답자] 귀사가 디자인용역표준계약을 사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2순위로 선택해 주세요.

1순위		2순위	
-----	--	-----	--

- ① 발주처가 구두로 위탁을 해서
- ② 발주처가 표준계약을 원치 않아서
- ③ 표준계약을 사용하기 번거로워서
- ④ 어차피 계약서 내용을 준수하지 않으므로
- ⑤ 기타 [적어주세요 :]

문16-3. 귀사는 디자인용역표준계약서가 추가되어야 할 디자인 분야는 무엇입니까?

- ① 패키지디자인
- ② 환경디자인
- ③ 서비스디자인
- ④ 그 외 디자인 분야 [적어주세요 :]

문21. 귀사가 지난 1년간[2021.01~2021.12] 피해를 경험한 국가는 어디입니까?

피해 경험 국가 :

문22. 귀사는 해외에 진출하여 불공정거래 또는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주로 어떻게 해결** 하십니까? **1순위** **2순위**

- ① 기업 내 법무전담인력을 통해 대응
- ②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피해지원센터 등]에 의뢰하여 해결 방안 모색
- ③ 피해 감수
- ④ 기타 [적어 주세요 : _____]

SECTION 5.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 관련

문23.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을 알고 있습니까?

▪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이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2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12호(19.12.20)에 따라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산업디자인의 개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 기준에 따라 대가를 산출해야함.

▪ 디자인대가기준 종합정보시스템 www.dsninfo.or.kr

① 알고 있다. [→ 문항 23-1로]

② 모른다. [→ 문항 24로]

문23-1] [문23. ①응답자]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을 어떤 경로로 알게 되었습니까?

모두 선택해 주세요.

- ① 정부고시를 통해
- ② 한국디자인진흥원 및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를 통해
- ③ 뉴스, 기사 등 언론 보도를 통해
- ④ 지인의 소개를 통해
- ⑤ 발주처의 요청 또는 과업지시서에 기재
- ⑥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 ⑦ 기타 [직접 기입 : _____]

문23-2] [문23. ①응답자]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 활용 정도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활용하지 않고 있다.
- ② 요청이 있을 때만 활용하고 있다.
- ③ 노임단가 부분만 활용하고 있다. [→ 문항 24로]
- ④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을 활용하고 있다. [→ 문항 24로]

문23-3] [문23-2의 ①, ② 응답자] 귀사는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를 사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2순위로 선택해 주세요.

1순위

2순위

- ① 직접 활용하는데 내용상, 시스템상 사용에 어려운 점이 있다.
- ② 대가를 산정하기가 현실적이지 않다.
- ③ 대가기준 적용이 필수 사항이 아니기에 기존 방식을 따른다.
- ④ 산출된 금액이 낮아서 활용에 무리가 따른다.
- ⑤ 발주처가 원치 않아서 기존 방식을 따른다.
- ⑥ 기타 [직접 기입 : _____]

문23-4]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을 활용하여 디자인 사업을 진행하는 곳은 주로 어디입니까?
모두 선택해 주세요.

1~2순위로 선택해 주세요.

1순위

2순위

- ① 정부기관 및 지자체
- ② 공공기관
- ③ 디자인지원기관
- ④ 중소기업
- ⑤ 대기업
- ⑥ 기타 [직접 기입 : _____]

※ 정부, 지자체 : 정부기관 = ex) 산업통상자원부, 지자체 = ○○시청 등

※ 공공기관 : 한국지역난방공사, 대한적십자사 등

※ 디자인지원기관 : 디자인진흥원, 지역RDC 등 디자인 지원기관 또는
테크노파크, 디자인재단 등과 같이 디자인이 필요한 기업을 위해 지원사업을 하는 기관

문24. 디자인산업 발전과 불공정행위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필요한 지원정책 / 무료법률상담 및 피해 예방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디자인통합민원센터>에 바라는 사항 / 설문 문항 이외에 디자인개발을 진행하며 발생한 피해사례]

[긴 시간 설문에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